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2023. 12

EU

EU 편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EU 편 -

2023. 12.

연구총괄: 홍용기

연구자: 이재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연구총괄　홍용기 부연구위원

연 구 자　이재선 특수전문직2급

목 차

제1편 개 관 ····· 1

Ⅰ. 일반 개황 ····· 2

Ⅱ. 경제 개황 ····· 9
1. 주요 경제지표 ····· 9
2. 수출입 동향 및 교역규모 ····· 11
3. 외국인 투자 동향 ····· 14

Ⅲ.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협정 현황 ····· 18
1. 관세동맹 및 통합 협정 ····· 18
가. 관세동맹 ····· 18
나. EEA 협정 ····· 20
다. 안정 및 제휴협정 ····· 21
라. 제휴협정 ····· 22
마. 유로지중해 제휴협정 ····· 24
2. 기타 FTA 협정 ····· 26

Ⅳ.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 33
1. 한-EU 수출입 동향 ····· 33
2. 한-EU FTA ····· 35

제2편 통관제도 ····· 42

Ⅰ. 통관 관련 조직 및 법 ····· 42
1. 관세행정조직 ····· 42
가. 조세 및 관세 동맹 총국(Taxation and Customs Union) ····· 42
나. 전문기구 ····· 47
2. 통관 관련 법령 ····· 52

Ⅱ. 관세채무의 성립·확정·소멸 ····· 56
1. 관세채무의 성립 ····· 56
가. 관세채무의 성립 시기 및 장소 ····· 56
나. 관세의 과세요건 ····· 59
2. 관세채무의 확정 ····· 64
가. 관세채무의 통지 ····· 64
나. 관세채무의 납부 ····· 65
다. 관세채무의 환급 및 경감 ····· 66
3. 관세채무의 소멸 ····· 70

Ⅲ. 관세평가제도 ····· 72
1. 관세평가 ····· 72
2.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 73
가. 거래가격 ····· 73
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77
다. 역산가격(공제가격) ····· 78
라. 산정가격 ····· 79
마. 대체가격(Fallback) ····· 80

Ⅳ.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 82
1. 품목분류 ····· 82
가. 품목분류 체계 ····· 82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BTI) ····· 84
2. 관세율 ····· 89
가. 관세율 수준 ····· 89
나. 관세율표의 구성 ····· 95

Ⅴ. 관세감면제도 및 특별절차 ····· 97
1. 관세감면제도 ····· 97
가. EU 물품에 대한 감면 ····· 97
나. 개인물품에 대한 감면 ····· 99
다. 사업용 물품에 대한 감면 ····· 107
라. 특정용도의 물품에 대한 감면 ····· 109
마. 기타물품에 대한 감면 ····· 127
바. 무역진흥을 위한 물품에 대한 감면 ····· 132
사. 운송관련 물품에 대한 감면 ····· 134
2. 특별절차 ····· 136
가. 특수 사용 ····· 137
나. 가공 ····· 139

Ⅵ. 원산지제도 ····· 143
1. 비특혜원산지 ····· 143
가. 적용범위 ····· 143
나. 원산지결정 ····· 144
다. 원산지증명 ····· 148
2. 특혜원산지 ····· 150

가. 적용범위 ····· 150
나. 협정 등에 따른 특혜원산지 ····· 152
다. 일반특혜관세(GSP) ····· 160

Ⅶ. 보세제도 ····· 169
1. 보세구역 ····· 169
가. 보세창고 ····· 170
나. 자유구역 ····· 170
2. 보세운송 ····· 173
가. 역외 통과 ····· 173
나. 역내 통과 ····· 174

Ⅷ. 수출입요건 ····· 175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 ····· 175
가. 소비자 제품 안전 ····· 177
나. 식품 안전 및 위생 ····· 180
다. 환경보호 ····· 184
2. 수출입규제 ····· 190
가. 덤핑방지조치 ····· 190
나. 상계조치 ····· 200

Ⅸ. 권리구제 및 벌칙제도 ····· 207
1. 권리구제제도 ····· 207
2. 벌칙제도 ····· 208

Ⅹ. AEO 제도 ····· 210
1. AEO의 의의 및 유형 ····· 210

2. AEO 공인기준 ····· 211
3. AEO 혜택 ····· 216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 218

Ⅰ. 수입 통관절차 ····· 218
1. 수입의 개념 ····· 218
2. 수입 통관절차 ····· 219
가. 반입약식신고 ····· 219
나. 물품의 도착 ····· 225
다. 세관신고 ····· 227
라. 검증 및 물품의 반출(release) ····· 230

Ⅱ. 수출 통관절차 ····· 234
1. 수출의 개념 ····· 234
2. 수출 통관절차 ····· 235
가. 출발 전 신고 ····· 235
나. 물품의 반출 ····· 242

참고문헌 ····· 243

표 목 차

제1편

〈표 1-Ⅰ-1〉 EU 주요 연혁 ····· 4

〈표 1-Ⅱ-1〉 주요 경제지표 ····· 10
〈표 1-Ⅱ-2〉 주요 경제지표 전망 ····· 10
〈표 1-Ⅱ-3〉 최근 5년간 EU 전체 수출입 현황1) ····· 11
〈표 1-Ⅱ-4〉 2022년 EU 수출입 상위 10개국1) ····· 12
〈표 1-Ⅱ-5〉 2022년 EU 수출입 상위 10품목1) ····· 13
〈표 1-Ⅱ-6〉 EU 외국인투자(FDI inward) 현황 ····· 14
〈표 1-Ⅱ-7〉 EU 산업별 외국인 투자(FDI inward) 현황 ····· 16
〈표 1-Ⅱ-8〉 최근 3년간 EU 외국인 투자(FDI inward) 상위 10 국가 및 지역 ····· 17

〈표 1-Ⅲ-1〉 EU FTA 현황 ····· 31

〈표 1-Ⅳ-1〉 최근 5년간 EU 對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 33
〈표 1-Ⅳ-2〉 2022년 EU 對우리나라 수출입 상위 10품목1) ····· 34
〈표 1-Ⅳ-3〉 한-EU FTA 협상 및 이행 일지 ····· 36
〈표 1-Ⅳ-4〉 한-EU FTA 상품 양허수준 ····· 38
〈표 1-Ⅳ-5〉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한-EU FTA 수출 활용 현황 ····· 39
〈표 1-Ⅳ-6〉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한-EU FTA 수입 활용 현황 ····· 40
〈표 1-Ⅳ-7〉 2022년 우리나라의 한-EU FTA 산업별 활용 현황 ····· 41

제2편

〈표 2-Ⅰ-1〉 현행 UCC 및 UCC 개정안 비교 ····· 55

〈표 2-Ⅳ-1〉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1) ····· 90
〈표 2-Ⅳ-2〉 EU 관세율 수준 ····· 91
〈표 2-Ⅳ-3〉 EU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 93
〈표 2-Ⅳ-4〉 EU 산업별 관세율 수준 ····· 94

〈표 2-Ⅴ-1〉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자료 ····· 109
〈표 2-Ⅴ-2〉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시설·조직에서 수입하는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자료 ·· 112
〈표 2-Ⅴ-3〉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시작장애인용 물품 ····· 121
〈표 2-Ⅴ-4〉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자가 수입하는 시각장애인용 물품 ····· 121

〈표 2-Ⅵ-1〉 특혜 협정 및 원산지규정 ····· 153
〈표 2-Ⅵ-2〉 GSP 수혜국(2023년 기준) ····· 160

〈표 2-Ⅷ-1〉 제품별 표준 참조 규정 ····· 179
〈표 2-Ⅷ-2〉 IUU 경고·비협력국가 목록 ····· 187
〈표 2-Ⅷ-3〉 EU가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 ····· 192
〈표 2-Ⅷ-4〉 EU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 ····· 195
〈표 2-Ⅷ-5〉 EU가 시행 중인 상계조치 ····· 202
〈표 2-Ⅷ-6〉 EU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계조치 ····· 203

〈표 2-Ⅹ-1〉 AEO 유형에 따른 공인기준 ····· 212
〈표 2-Ⅹ-2〉 AEO 유형에 따른 혜택 ····· 217

제3편

〈표 3-Ⅰ-1〉 운송수단별 반입약식신고 기한 ····· 221
〈표 3-Ⅰ-2〉 수입통제시스템(ICS2) 도입 일정 ····· 223

〈표 3-Ⅱ-1〉 운송수단별 출발 전 신고 기한 ····· 237

그림 목차

제1편

[그림 1-Ⅰ-1] EU 주요 기구의 구조 및 상호관계 ····· 8

[그림 1-Ⅱ-1] EU 외국인투자(FDI inward) 추이 ····· 15

[그림 1-Ⅳ-1] 우리나라의 한-EU FTA 수출 활용 추이 ····· 39
[그림 1-Ⅳ-2] 우리나라의 한-EU FTA 수입 활용 추이 ····· 40

제2편

[그림 2-Ⅰ-1] EU 집행위원회의 구성 ····· 44
[그림 2-Ⅰ-2] TAXUD 조직도 ····· 45

[그림 2-Ⅳ-1] EU Combined Nomenclature 예시 ····· 96

[그림 2-Ⅵ-1]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잔여규정 예시 ····· 147
[그림 2-Ⅵ-2] 특별 비특혜 수입협정 적용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양식 ····· 149
[그림 2-Ⅵ-3] 특혜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의 공급자신고서 양식 ····· 156
[그림 2-Ⅵ-4] 특혜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의 장기공급자신고서 양식 ····· 157
[그림 2-Ⅵ-5] 특혜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않은 물품의 공급자신고서 양식 ····· 158
[그림 2-Ⅵ-6] 특혜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않은 물품의 장기공급자신고서 양식 ·· 159
[그림 2-Ⅵ-7] GSP 원산지증명서 양식 A ····· 164
[그림 2-Ⅵ-8] GSP 송장신고서 원산지신고문구 ····· 165
[그림 2-Ⅵ-9] 등록수출자 발급 원산지진술서 세부사항 ····· 167

[그림 2-Ⅷ-1] 금지 및 제한 목록 예시 ····· 177

[그림 2-Ⅹ-1] EU AEO 공인 추세 ····· 211

제1편 개 관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EU의 통관 및 관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괄서임

○ EU 관세법 UCC를 바탕으로 물품을 EU 관세영역으로 수입하거나 EU 관세영역에서 수출하기 위해 적용되는 일련의 제도를 소개하고 있음

□ 따라서 어떤 분야의 어떤 대상에 대하여도 관련 제도를 참조할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대상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음

○ 제2편의 통관제도는 EU 관세행정조직인 TAXUD와 경제운영주체의 관세 채권채무관계를 중심으로 과세요건, 지원·완화·보호, 감시·통제·제재, 협력제도를 차례로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 소개를 통하여 현재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연구를 구성하였으나 실제 사례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 특히 EU는 UCC의 개정을 예고하고 있고, 그에 따른 규정 변화가 예상되므로 주석 및 참고문헌을 통하여 최신 규정을 검토해야 함

Ⅰ. 일반 개황

□ EU(European Union)는 1993년 11월 1일 출범하여 현재 27개국이 가입한 유럽의 지역공동체로 유럽의 외교, 사법, 입법, 경제를 통합한 기구임[1)]

○ EU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12개국으로 출범하였음

○ 이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가 가입하고, 영국이 2020년 탈퇴하면서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함

□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창설된 EU는 2009년 9월 리스본조약으로 EC(European Community)를 공식적으로 대체하고 계승함[2)]

○ 1950년 석탄 및 철강산업을 초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공동 관리하자는 취지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탄생하면서 유럽 지역공동체가 시작됨

○ 공동체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원자력의 공동개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를 1957년에 창설함

○ 1967년 기존 3개 공동체를 EC로 통합하여 단일 각료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유럽의회를 만들고 단일경제권 달성을 위한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을 발족함

---

1)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3. 7. 3.

2)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3. 7. 3.; 외교부, 『EU 개황』, 2020, pp. 10~13

○ 이후 EC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공동외교안보정책, 내무사법 협력을 포함하는 공동체인 EU가 1993년 출범함

○ 2007년 EU는 정치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혁조약인 리스본조약을 체결하고, 2009년 발효시켜 EU의 운영, 정책, 역할 등을 명확히 함

□ 이와 같이 EU는 별도 공동체의 신규 창설이 아니라 기존 EC조약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를 수정·보완하고, 신기능을 추가한 것임[3)]

○ EU는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EC에서 EU로 명칭이 변경되고, 정치 및 통화 연맹을 위한 계기가 됨

○ 또한 EC 창설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이 리스본조약을 통해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명칭이 변경됨

3) 외교부(2020), p. 16

〈표 1-ㅣ-1〉 EU 주요 연혁

연도	주요 연혁
1950년 5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E) 창설을 위한 슈망 선언 발표
1952년 8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E) 발족
1957년 3월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1967년 7월	유럽공동체(EC) 기관 단일화
1973~1986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
1993년 1월	유럽단일시장 출범
1993년 11월	유럽연합(EU) 출범(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1999년 1월	유럽통화연맹(EMU) 출범
1999년 5월	암스테르담조약 발효
2003년 2월	니스조약 발효
2004년 5월	EU 25개국 확대(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몰타 가입)
2004년 10월	EU 헌법조약 초안 서명(회원국 반대로 부결)
2007년 1월	EU 27개국 확대(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
2007년 12월	개혁조약(리스본조약) 서명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 발효
2013년 7월	EU 28개국 확대(크로아티아 가입)
2020년 1월	영국 탈퇴

자료: 외교부(2020), p. 6

□ EU는 서쪽의 북대서양과 동쪽의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사이의 유럽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423만 6,351㎢의 면적을 가짐[4)]

○ 프랑스(64만㎢), 스페인(50만㎢), 스웨덴(45만㎢), 독일(35만㎢), 핀란드(33만㎢), 폴란드(31만㎢) 순으로 면적이 넓으며, 몰타(316㎢)가 가장 작음

□ EU는 추운 온대성기후로 겨울은 온화하고 습한 반면 여름은 덥고 건조하며, 발트해

4)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3. 7. 3.(강동익·이재선,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p. 2에서 재인용)

와 대서양 연안을 따라 평탄한 지대가 펼쳐지고, 중부 및 남부는 산악지역임[5]

○ 따라서 해안을 따른 범람, 산악지역의 눈사태, 남쪽의 지진, 이탈리아의 화산 폭발, 스페인의 가뭄, 발트해 지역의 빙원 등의 재해를 주의해야 함

□ 인구는 약 4억 5,085만명으로 국가마다 분포는 다르지만 주로 대도시와 해안가 및 강변에 거주하며,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주변지역이 인구밀도가 높음[6]

○ 독일(8,431만명), 프랑스(6,830만명), 이탈리아(6,109만명), 스페인(4,716만명), 폴란드(3,809만명) 순으로 인구가 많으며 몰타(46만명)가 EU에서 인구가 가장 적음

□ EU에는 공식 언어가 24개 등록되어 있으며, EU 인구의 약 16%가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약 29%가 영어에 능통함[7]

○ 독일어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주요 언어이며, 영어는 아일랜드와 몰타의 공식 언어이므로 영국이 탈퇴한 후에도 공식 언어로 남아있음

□ EU는 혼합정부 및 초국가적 조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연방국가는 아니지만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을 넘어 독립된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8]

○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이행하고, 사법내무에서 협력하며, 단일시장 및 단일통화를 실현함

□ EU는 정상회의,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EU 대외관계청,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중앙은행에서 행정, 외교, 사법, 입법의 기능 및 통화정책을 담당함[9]

---

5)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3. 7. 3.
6)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3. 7. 3.
7)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3. 7. 3.(강동익·이재선(2022), p. 2에서 재인용)
8)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3. 7. 3.(강동익·이재선(2022), p. 2에서 재인용)
9) 외교부(2020), p. 17

○ 정상회의와 각료이사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이며, 유럽의회는 브뤼셀과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 소집되고, 룩셈부르크에 행정사무소를 두고 있음[10)]

○ 유럽사법재판소는 룩셈부르크에 위치하고, 유럽중앙은행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음

□ EU에서 행정기능은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수행함[11)]

○ 정상회의는 통상 연 4회 개최되는 EU 각국 정상들의 모임으로 EU의 제도적·정치적 발전과 관련된 주요한 정치·외교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함

○ 각료이사회는 EU 회원국의 분야별 각료가 참석하는 회의로서 10개 분야에서 정책의 결정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함

- 외교, 일반, 경제·재무, 내무·사법, 고용·사회정책, 경쟁, 교통·통신·에너지, 농업·수산, 환경, 교육, 청소년·문화 이사회가 있음

○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지명되어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회원국의 EU 공동정책 이행을 감독함

□ EU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은 국제무대에서 EU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안보분야에서 EU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본조약에 의해 설립됨[12)]

○ EU 대외관계청의 수장인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과 공동방위정책을 총괄하고, 대외관계청은 고위대표의 활동을 보좌함

○ 기존 EU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에서 대외관계업무를 하던 관료와 회원국에서 파견된 외교관을 주축으로 구성되었으며, 전 세계 134개 공관을 가지고 있음

---

10)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3. 7. 3.

11)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3. 7. 3.; 외교부(2020), pp. 17~23(강동익·이재선(2022), p. 3에서 재인용)

12) 외교부(2020), p. 29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각료이사회로 구성된 입법부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안 채택에 대한 공동책임을 짐[13)]

○ 유럽의회는 회원국에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의 총 70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각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회원국별로 의원 수를 할당함

○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는 입법안을 수정·거부할 수 있는 공동결정권을 보유한 의사결정기관이며, 예산안을 심의·확정함

- 다만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일부 내무·사법분야는 각료이사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며, 유럽의회는 협의 및 권고 역할만 담당함

□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EU 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해 EU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함[14)]

○ 상급심 기관인 사법재판소와 하급심 기관인 일반법원으로 구성되며, 일반법원은 EU의 경쟁, 덤핑방지 및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담당함

○ 사법재판소는 각 회원국이 지명하는 27명의 법관과 개별 사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법관에게 제출하는 11명의 법무관으로 구성됨

□ EU는 유로화를 법정화폐로 채택한 회원국[15)]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에서 단일 통화정책을 수행하지만 재정통합까지는 이르지 못함[16)]

○ 유럽중앙은행은 회원국의 중앙은행으로부터 통화정책 주권을 위임받아 유로지역에서의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함

○ 반면 외환정책은 EU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되며, 재정정책은 회원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함

---

13)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3. 7. 3.; 외교부(2020), pp. 18~28(강동익·이재선(2022), p. 3에서 재인용)
14) 외교부(2020), pp. 29~30(강동익·이재선(2022), p. 4에서 재인용)
15) 유로지역(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6) 외교부(2020), pp. 30~32; 『의료기기뉴스라인』, 「지역경제통합, 관세철폐서 정치적 동맹 단계까지 무역자유화」, 2015. 9. 10.(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7, 검색일자: 2023. 7. 5.)(강동익·이재선(2022), p. 4에서 재인용)

[그림 1-Ⅰ-1] EU 주요 기구의 구조 및 상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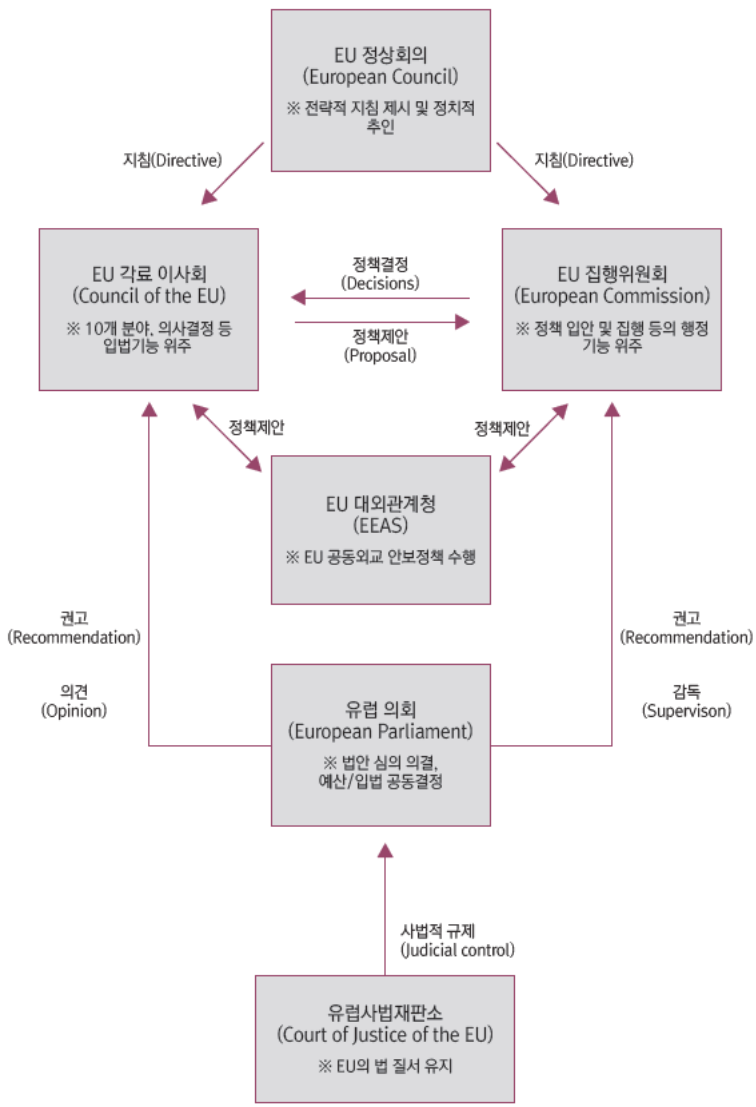

자료: 외교부(2021), p. 34

Ⅱ. 경제 개황

1. 주요 경제지표

□ 2018년 이후 성장 하락세를 보인 EU의 경제는 2020년 COVID-19의 여파로 부의 성장을 경험한 후 2021년 회복하였으나 2023년에는 정체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17)]

○ 고물가, 통화긴축의 누적효과, 불확실성 등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겠으나 경기심리지수 개선,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침체는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EU 소비자물가는 2023년 5.6%(IMF 전망 6.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18)]

○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지만 소비자 물가로 뒤늦게 전가되면서 소매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이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핵심물가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17)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EU 집행위, 2023~24년 경제전망['23. 2월 전망]」, 보도자료 2023. 2. 15.

18)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2023. 2. 15.)

〈표 1-II-1〉 주요 경제지표

(단위: 10억달러,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1)]
명목GDP	15,986.4	15,693.9	15,359.1	17,193.8	16,642.6	17,818.8
1인당 명목GDP	36,020.6	35,290.9	34,489.8	38,659.2	37,356.7	39,938.5
경제성장률	2.3	2	-5.6	5.6	3.7	0.7
실업률[2)]	8.2	7.6	8	7.8	6.8	6.8
소비자물가증감률[3)]	1.9	1.4	0.7	2.9	9.3	6.3

주: 1) 전망치
2) IMF에서 EU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아 유로지역의 데이터로 대체함
3) Inflation rate, average consumer price

자료: IM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EU;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EU;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EU;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LUR@WEO/EURO;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PCPIPCH@WEO/EU, 검색일자: 2023. 7. 5.

〈표 1-II-2〉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10억달러, 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명목GDP	18,512.9	19,283.0	19,990.0	20,612.9	21,111.3
1인당 명목GDP	41,458.5	43,155.6	44,713.1	46,084.6	47,179.2
경제성장률	1.6	2.2	2	1.8	1.7
실업률[1)]	6.8	6.6	6.6	6.5	6.5
소비자물가증감률[2)]	3.3	2.4	2.1	2	2

주: 1) IMF에서 EU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아 유로지역의 데이터로 대체함
2) Inflation rate, average consumer price

자료: IM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EU;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EU;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EU;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LUR@WEO/EURO;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PCPIPCH@WEO/EU, 검색일자: 2023. 7. 5.

2. 수출입 동향 및 교역규모

□ EU의 2022년 총 교역액은 약 13조 9천억유로로 총 수출액은 6조 7,996억유로, 총 수입액은 7조 1,019억유로, 무역수지는 3,023억유로 적자를 보임

○ 2020년 무역규모가 16.2%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18.4%의 증가률을 보이면서 2019년 수준을 회복하고 2022년 25.5%의 증가를 보임

○ 무역수지는 2018년 이후 증가하다가 2020년 2,460억유로로 크게 상승한 후 2021년 감소되다가 2022년 적자로 돌아섬

〈표 1-Ⅱ-3〉 최근 5년간 EU 전체 수출입 현황[1)]

(단위: 10억유로,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5,474.0	4.7	5,611.8	2.5	4,808.2	-14.3	5,608.2	16.6	6,799.6	21.2
수입	5,426.3	5.7	5,552.5	2.3	4,544.2	-18.2	5,468.9	20.3	7,101.9	29.9
교역규모	10,900.3	5.2	11,164.3	2.4	9,352.4	-16.2	11,077.1	18.4	13,901.5	25.5
무역수지	47.8	-	59.2	-	264.0	-	139.2	-	-302.3	-

주: 1) EU 간 수출입 포함
2)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WholeList.screen, 검색일자: 2023. 4. 3.

□ 2022년 EU의 최대 수출국은 독일로 9,432억유로를 수출하였으며, EU 외의 국가로는 미국에 5,013억유로로 가장 많은 수출을 함

○ 상위 수출 10개 국 중 7개 국이 EU 역내 국가이며, 미국, 영국, 중국이 EU 외의 국가로서 순위에 포함됨

□ 2022년 EU의 최대 수입국 또한 독일로 8,773억유로를 수입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중국에서 6,245억유로를 수입함

○ 상위 수입 10개국 역시 EU 역내 국가가 7개였으며, 역외 국가인 중국, 미국, 영국

이 각 2위, 4위, 10위에 해당하였음

- EU 역내 국가의 수입증감률이 20% 안팎인 것과는 다르게 중국, 미국, 영국의 수입은 전년 대비 각 32.5%, 53.4%, 42.1%씩 크게 증가함

〈표 1-Ⅱ-4〉 2022년 EU 수출입 상위 10개국[1)]

(단위: 10억유로, %)

수출				수입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1)]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1	독일	943.2	22.7	1	독일	877.3	16.9
2	미국	501.3	27.7	2	중국	624.5	32.5
3	프랑스	489.1	17.6	3	네덜란드	571.2	25.8
4	네덜란드	337.0	28.1	4	미국	354.2	53.4
5	이탈리아	335.0	21.1	5	벨기에	352.7	26.2
6	영국	326.8	16.2	6	프랑스	327.6	19.7
7	벨기에	315.6	27.5	7	이탈리아	310.8	17.5
8	폴란드	240.8	17.7	8	폴란드	244.0	20.3
9	스페인	234.2	20.6	9	스페인	238.6	29.0
10	중국	227.6	3.2	10	영국	203.3	42.1

주: 1) EU 간 수출입 포함
2)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Ctr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3. 4. 3.

□ EU가 2022년 금액 기준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소매의약품으로 2,187억유로를 수출하였으며, 그 외에 면역용품(4위), 백신(5위) 등 의약품의 수출규모가 컸음

○ 또한 승용자동차(7위, 9위)나 항공기(10위) 등 수송기기나 전기에너지(6위), 석유와 역청유의 조제품(2위, 3위), 천연가스(8위) 등 에너지 자원의 수출이 많았음

□ 2022년 EU가 가장 많이 수입한 물품은 원유(3,682억유로)이며, 천연가스(2위, 5위), 기타 석유와 역청유의 조제품(3위), 전기에너지(6위), 제27류 물품(8위) 등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많음

○ 그 외에 의약품(4위)이나 스마트폰(7위),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9위) 등 전자기기의 수입이 많음

〈표 1-Ⅱ-5〉 2022년 EU 수출입 상위 10품목[1)]

(단위: 10억유로, %)

수출				수입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2)]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기타 소매의약품	218.7	25.8	1	석유와 역청유(원유)	368.2	67.7
2	기타 석유와 역청유, 그 조제품	165.0	80.1	2	천연가스(가스상태)	180.1	241.1
3	경질유와 조제품	97.5	65.8	3	기타 석유와 역청유, 그 조제품	167.3	81.5
4	소매용 면역용품	91.5	15.0	4	기타 소매의약품	152.0	22.5
5	인체의약용 백신	85.9	0.3[3)]	5	천연가스(액화한 것)	112.7	366.9
6	전기에너지	78.7	124.5	6	전기에너지	94.2	163.9
7	실린더용량이 1,500㏄ 초과 3,000㏄ 이하인 기타 승용자동차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73.6	8.4	7	스마트폰	77.6	0.0[4)]
8	천연가스(가스상태)	70.5	390.3	8	제27류에 해당하는 기밀 교역물품[5)]	71.0	15.2
9	기타 승용자동차(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53.7	61.1	9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67.1	2.0
10	자체 중량이 15,000㎏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7.9	14.7	10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	63.2	21.0

주: 1) HS 6단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감률
3) HS 2022에 의해 인체용 백신의 HS 6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HS 2017이 적용되는 2021년은 제3002.20호의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증감률 산출
4) HS 2022에 의해 스마트폰이 특게됨에 따라 HS 2017이 적용되는 2021년은 스마트폰만 분류되는 HS 6단위가 없어 증감률을 산출할 수 없음
5) 통계 단위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기밀로 간주함. 예를 들어 특정 물품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수가 제한적이거나 지배적인 경우 기밀로 취급함(eurostat, *User guide on European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2020, pp. 38~39)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3. 4. 3.

3. 외국인 투자 동향

□ EU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2년 -2,192억유로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33% 감소한 금액임

○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5년 약 190%에 달하는 큰 폭의 증가를 보인 후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8년(-4,849억유로), 2021년(-2,192억유로)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회수되었음

〈표 1-Ⅱ-6〉 EU 외국인투자(FDI inward) 현황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FDI	1,190,478	654,118	401,846	-484,904	268,586	15,304	-219,244
증감률	189.9	-45.1	-38.6	-220.7	155.4	-94.3	-1,532.6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BOP_FDI6_FLOW__custom_6799184/default/table?lang=en, 검색일자: 2023. 7. 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Ⅱ-1] EU 외국인투자(FDI inward) 추이

(단위: 백만 유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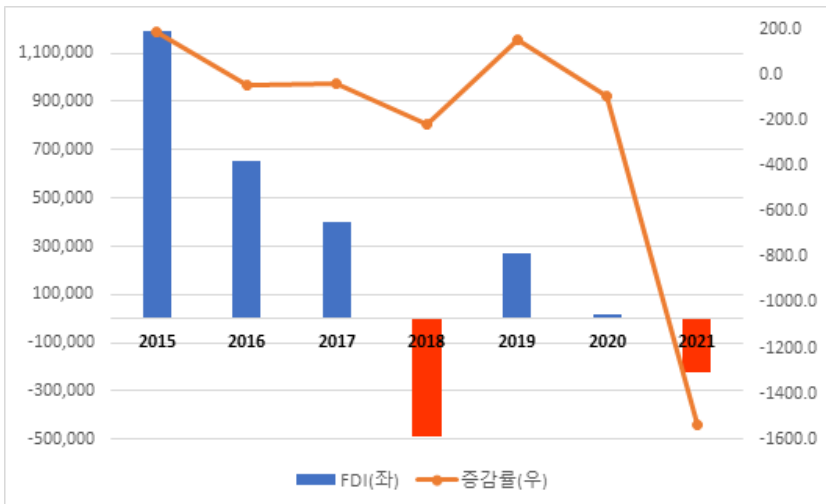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BOP_FDI6_FLOW__custom_6799184/default/table?lang=en, 검색일자: 2023. 7. 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9년 EU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많았던 산업군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약 860억유로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투자액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도·소매 무역의 2019년 투자액은 507억유로,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454억유로로 높은 투자액을 기록하였음

○ 반면 금융·보험 2018년 -6,980억유로, 2019년 -1,590억유로를 기록하는 등 3차 사업의 경우 2018년부터 외국인 투자액이 회수되고 있음

○ 또한 2019년 식품, 음료, 담배조제품 제조에서 약 276억유로,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에서 약 326억유로 등 2차 산업에서도 외국인 투자액이 회수되었음

〈표 1-II-7〉 EU 산업별 외국인 투자(FDI inward) 현황

(단위: 백만유로)

분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차 산업	6,538	1,026	-963	-725
농업, 임업, 어업, 수렵	-	1,026	1,055	514
광업, 석유 및 가스 채굴	6,538	-	-2,017	-1,239
2차 산업(제조업)	-14,500	26,600	130,605	124,788
식품, 음료, 담배조제품	-	26,535	27,775	-27,650
방직, 섬유제품, 의류	414	35	-762	1,203
목재, 종이, 인쇄	346	1,043	-648	30,474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47,856	-8,398	25,502	45,408
1차 및 가공 금속제품	-1,450	5,540	1,979	41,209
컴퓨터 및 전자제품	-2,158	-33,519	20,648	-32,619
기계 및 장비	38,627	14,726	4,687	41,788
운송장비	-2,422	6,241	13,088	-4,012
기타 제조	-	14,399	38,335	28,990
3차 산업	624,931	360,511	-692,901	-9,322
전기 및 가스 공급	-23,245	-14,127	-2,880	-878
수도 공급	686	-524	-254	-1,662
건설	2,563	612	1,830	4,536
도매 및 소매 무역	49,050	55,136	-17,676	50,720
운송, 보관	11,748	5,584	7,190	15,488
주거 및 식음료 서비스	2,169	6,533	-1,616	2,825
정보, 통신	14,778	75,840	-44,160	10,170
금융, 보험	502,876	200,524	-697,904	-158,808
부동산	5,135	18,036	17,775	21,36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66,523	1,569	39,256	85,982
행정 및 지원 서비스	-11,157	1,362	5,524	-40,933
교육	427	228	-78	285
건강 및 사회활동 서비스	539	723	1,367	884
예술, 엔터테인먼트	671	2,481	343	-2,118
기타 서비스	2,169	6,533	-1,616	2,825
총계[1)]	616,969	388,136	-563,259	114,742

주: 1) 외국인 투자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산업분야가 있어 총 외국인 투자금액과 차이가 있음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BOP_FDI6_FLOW__custom_6799184/default/table?lang=en, 검색일자: 2023. 7. 6.

□ 2021년 EU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 및 지역은 영국령 케이맨제로로 362억유로의 투자액을 기록하였음

○ 미국은 2019년과 2020년 투자 상위 순위(2위,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에는 투자액을 회수하였음

○ 일본은 최근 3년간 EU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국가로 2019년 124억유로, 2020년 90억유로, 2021년 107억유로를 투자하였음

〈표 1-Ⅱ-8〉 최근 3년간 EU 외국인 투자(FDI inward) 상위 10 국가 및 지역

(단위: 백만유로)

순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 및 지역명	금액	국가 및 지역명	금액	국가 및 지역명	금액
1	남아프리카공화국	117,748	미국	254,691	케이맨제도	36,241
2	미국	82,653	영국	79,170	캐나다	32,048
3	버진아일랜드	55,684	아랍에미리트	52,088	버뮤다	17,409
4	홍콩	37,684	싱가포르	50,304	러시아	16,527
5	아랍에미리트	20,281	바베이도스	16,251	저지섬	13,205
6	저지섬	19,276	일본	9,067	사우디아라비아	11,553
7	일본	12,434	중국	8,681	일본	10,699
8	러시아	11,637	바하마	6,302	우루과이	4,565
9	중국	11,502	건지섬	5,878	멕시코	4,359
10	바레인	10,198	리히텐슈타인	3,865	노르웨이	4,055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BOP_FDI6_FLOW__custom_6799184/default/table?lang=en, 검색일자: 2023. 7. 6.

Ⅲ.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협정 현황

1. 관세동맹 및 통합 협정

가. 관세동맹

□ EU는 27개 회원국이 관세 목적으로 단일영토를 형성한 관세동맹임[19]

○ EU 회원국 간에 이동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EU 외부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적용함

○ 또한 관세를 정당하게 납부하고 수입요건 구비가 확인된 수입물품은 추가적인 세관 통제 없이 EU 내의 다른 지역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음

□ EU의 관세영역은 27개 회원국의 영토를 포함하지만 일부 회원국령의 영토는 제외되며, 회원국 영토 밖에 위치한 지역도 EU 관세영역의 일부로 간주됨[20]

○ 다음의 영토는 EU의 관세영역에서 제외됨

- 덴마크의 페로제도·그린란드
- 독일의 헬골란트섬·뷔징겐
- 스페인의 세우타·멜리야
- 프랑스의 뉴칼레도니아·생피에르 미클롱·월리스푸투나제도·폴리네시아·프랑스령 남부 및 남극 영토

---

19)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market-0, 검색일자: 2023. 7. 18.

20)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market-0, 검색일자: 2023. 7. 18.

- 이탈리아의 리비뇨·캄피오네 디탈리아·폰테 트레사와 포르토 세레시오 사이의 제방 및 정치적 국경 사이에 있는 루가노호

○ 반면 다음의 영토는 회원국 밖에 위치하지만 EU 관세영역에 포함됨

- 프랑스의 과들루프·프랑스령 기아나·마르티니크·마요트·레위니옹 제도의 해외 부서
- 모나코 공국의 영해, 내륙해역, 영공을 포함한 영토

□ 한편 EU는 회원국 외에도 안도라, 산마리노, 튀르키예와 관세동맹협정을 체결하여 수입물품 전부 또는 일부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관세동맹 내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철폐되고, 물품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공통의 관세 및 상업정책을 추진함

□ EU와 안도라의 관세동맹은 1990년 설립되었으며, EU와 안도라 간에 수출입되는 HS 제25류 내지 제97류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동맹이 적용됨[21)]

○ HS 제1류 내지 제24류의 물품은 안도라에서 생산되어 EU에 수입되는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됨

○ 또한 EU에서 제조되어 안도라로 수입되는 담배, EU와 안도라 간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함

□ EU와 산마리노의 관세동맹협정은 1991년 발효되었으며, 관세동맹은 ECSE 설립조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22)]을 제외한 HS 제1류 내지 제97류의 물품에 대해 적용됨[23)]

○ EU 또는 산마리노에서 생산된 물품, 제3국에서 수입되어 EU 또는 산마리노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동맹이 적용됨

---

21)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andorra-customs-unions-and-preferential-arrangements_en, 검색일자: 2023. 7. 18.

22) 석탄 및 철강제품(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an-marino-customs-unions-and-preferential-arrangements_en, 검색일자: 2023. 7. 20.)

23)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an-marino-customs-unions-and-preferential-arrangements_en, 검색일자: 2023. 7. 20.

□ 1963년 체결된 EC와 튀르키예의 앙카라 제휴협정의 최종 목표인 관세동맹은 1996년 발효되어 농산품, 석탄 및 철강제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됨[24]

○ 특히 관세동맹협정에 따라 튀르키예는 관세법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경쟁, 세금과 관련한 법령을 EU와 유사하게 정비함

나. EEA 협정

□ EU와 EFTA 3개국[25]은 EU 시장에서 물품·서비스·사람·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운송·에너지·경제 협력 등 통합 관련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 EEA(European Economic Area) 협정을 1994년 체결함[26]

○ 이에 따라 EEA 내의 모든 사업에 동일한 규정과 조건이 적용되며, EU 시장과 관련된 EU의 법령은 EEA 국가 법령의 일부임

□ EU 시장 및 통합 관련 정책 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EEA는 EFTA 세 국가에게 EU의 프로그램 및 기관에 참여하도록 보장함[27]

○ EEA 협정은 연구 및 개발, 교육, 사회정책, 환경, 소비자보호, 여행, 문화에 대해 전문가 그룹이나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세 국가에게 정보를 제공함

○ 그러나 EEA 협정은 다음의 정책은 취급하지 않음

- 공통 농업 및 어업정책
- 관세동맹
- 공통 무역 정책
- 공통 외교안보 정책

---

24)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urkey-customs-unions-and-preferential-arrangements_en, 검색일자: 2023. 7. 20.
25)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EFTA 회원국인 스위스는 EEA에 참가하지 않음)
26)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ropean-economic-area-eea-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0.
27)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ropean-economic-area-eea-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0.

- 사법 및 내무
- 경제 및 통화 연맹

□ EEA 협정에 따라 농수산물을 제외한 EEA 체약국이 원산지인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및 이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 모든 부과금은 체약국 간에 금지됨[28)]

○ 또한 체약국 간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수량 제한 및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모든 조치도 금지됨[29)]

- 다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농산물에 대해 수출 보조금이나 수입 관세를 통하여 가격 차이를 보상하고, 수산물은 어업 쿼터 등의 제한을 유지함

○ 다만 제3국의 물품이 EU 국가 또는 EFTA 세 국가로 수입되는 경우 적용되는 공통관세율은 없으며, 서로 다른 관세가 적용됨[30)]

□ 한편 EU의 관세동맹은 EFTA 세 국가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EU와 EFTA 세 국가 간의 통관절차는 아직 존재함[31)]

○ 따라서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구비해야 함

다. 안정 및 제휴협정

□ EU는 서부 발칸반도의 EU 가입을 위한 특별한 절차로 안정 및 제휴협정(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SAA)을 순차적으로 체결함[32)]

○ SAA의 체약국과 체약시기는 다음과 같음

- 알바니아: 2009년

---

28) 「EEA 협정」 제10조
29) 「EEA 협정」 제11조 내지 제12조
30)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ropean-economic-area-eea-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0.
31)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ropean-economic-area-eea-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0.
32)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western-balkans, 검색일자: 2023. 7. 20.

- 북 마케도니아: 2004년
- 몬테네그로: 2010년
- 세르비아: 2013년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2015년
- 코소보: 2016년

□ SAA는 EU 가입협상의 전 단계로 대상국가가 EU의 가치와 기준에 부합되도록 정치, 경제 및 제도개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33]

○ SAA는 ① 대상 국가를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시장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장려하며, ② 지역협력을 촉진함으로써 ③ EU에 가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34]

□ SAA 체약국은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서 HS의 모든 류 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 제한을 철폐함[35]

○ 다만 특정 농산물 및 수산물은 완전히 자유화되지 않으며, 관세 경감이나 특혜관세의 대상이 됨

라. 제휴협정

□ EU와 제3국 간의 양자협정인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은 EU 가입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초 역할을 하며, 제휴협정에는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가 포함됨[36]

○ EU는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와 제휴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몰도바와 우크라이

33)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EU 정책 브리핑』, 외교통상부, 2010, p. 46(강성훈·이재선·김미정,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p. 18에서 재인용)
34) EU DG NEAR,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enlargement-policy/steps-towards-joining_en, 검색일자: 2023. 7. 20.
35)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western-balkans, 검색일자: 2023. 7. 20.
36) EU DG NEAR,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enlargement-policy/glossary/association-agreement_en, 검색일자: 2023. 7. 21.

나는 2022년 6월 EU의 가입 후보국으로 승인을 받음[37]

□ EU와 조지아의 제휴협정이 2014년 서명되고, 2016년 6월에 발효되어 체약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관세는 대부분 철폐됨[38]

○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100% 철폐되었으나 농산물의 경우 수량할당, 진입가격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음

- 조지아에서 수입되는 마늘의 경우 220톤 내의 수량만 특혜관세가 적용되며, 초과 수량은 최혜국관세가 적용됨
- 또한 토마토, 오이, 애호박, 복숭아 등의 채소나 과일을 수입 시 송장가격이 진입가격보다 낮은 경우 진입가격과 송장가격의 차액을 관세로 납부해야 함

□ 2014년 서명된 EU와 몰도바의 제휴협정은 2016년 7월 발효되었으며, DCFTA에 따라 체약국 간 관세철폐, 신속한 통관 등이 적용됨[39]

○ EU는 협정의 잠정발효일부터 몰도바의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였고, 몰도바는 특정 공산품에 대해 3~5년의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플라스틱 및 제품, 가구, 섬유제품 등은 2019년 9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됨

○ 농산물의 경우 몰도바는 최대 10년의 과도기 이후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EU는 특정 민감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함

- 몰도바는 와인 등의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고, 돼지고기·가금류·유제품·설탕 등에 대해 수량할당을 적용함
- EU는 마늘, 포도, 사과, 체리 등에 대해 수량할당을 적용하고, 토마토에 대해 진입가격제도를 적용함

---

37)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EU 가입 신청한 몰도바와 조지아 내 친러-친서방 갈등 격화」, 『월간 정세』, 2023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mid=a10200000000&systemcode=04&brdctsNo=344968, 검색일자: 2023. 7. 21.

38)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georgia-deep-and-comprehensive-free-trade-area, 검색일자: 2023. 7. 21.

39)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moldova-deep-and-comprehensive-free-trade-area, 검색일자: 2023. 7. 21.

□ EU와 우크라이나는 2014년 제휴협정을 잠정발효하고, 이의 일환으로 DCFTA를 2016년 1월부터 잠정발효하여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함[40]

○ EU는 98.1%, 우크라이나는 99.1%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

○ 공산품의 경우 EU는 잠정발효일에 94.7%, 우크라이나는 49.2%의 관세를 철폐하였고, 2023년까지 EU는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우크라이나는 96%를 철폐하기로 함

○ 농산물에 대해 EU는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나 우크라이나는 절반 정도 물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2026년까지 일부 품목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함

- EU는 소고기·돼지고기·양고기·가금류·유제품·마늘·설탕·담배 등, 우크라이나는 돼지고기·가금류·설탕에 대해 수량할당을 적용함

마. 유로지중해 제휴협정

□ EU는 지중해 지역의 각 국가와 유로지중해 제휴협정(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정치 및 안보 대화, 경제·무역·금융·사회·문화·교육 협력을 도모함[41]

○ EU와 유로지중해 제휴협정을 맺은 지중해 국가와 발효시기는 다음과 같음

- 팔레스타인 당국: 1997년 7월 1일[42]
- 튀니지: 1998년 3월 1일
- 모로코: 2000년 3월 1일
- 이스라엘: 2000년 6월 1일
- 요르단: 2002년 5월 1일
- 이집트: 2004년 6월 1일
- 알제리: 2005년 9월 1일

---

40)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ukraine-deep-and-comprehensive-free-trade-area, 검색일자: 2023. 7. 21.

41) EU-Lex, https://eur-lex.europa.eu/EN/legal-content/summary/euro-mediterranean-association-agreements.html, 검색일자: 2023. 7. 21.

42) 협정의 체결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 문제에 대한 각 회원국의 개별 입장을 침해하지 않음

- 레바논: 2006년 4월 1일

□ 유로지중해 제휴협정은 각 상대국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지만,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고, 지중해 국가의 지역 내 협력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43]

○ 따라서 각 협정은 정치적인 대화,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 지급·자본·경쟁 등 경제적 조치, 경제·사회·문화·환경·금융 협력 등을 기본구조로 공유함

□ 특히 EU와 지중해 국가 간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관세의 점진적인 철폐, 특정 경우를 제외한 수출입에 대한 수량제한 금지 등을 통해 이루어짐[44]

○ EU와 팔레스타인 제휴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EU가 원산지인 특정 공산품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농산물은 수량제한 등이 적용됨[45]

○ EU와 튀니지 제휴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EU가 원산지인 특정 공산품은 5년 또는 12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농수산물은 수량제한 등이 적용됨[46]

○ EU와 모로코 제휴협정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EU가 원산지인 특정 공산품은 3년 또는 12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농수산물은 수량제한 등이 적용됨[47]

○ EU와 이스라엘 제휴협정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일부 농수산물은 수량제한 등이 적용됨[48]

---

43) EU-Lex, https://eur-lex.europa.eu/EN/legal-content/summary/euro-mediterranean-association-agreements.html, 검색일자: 2023. 7. 21.

44) EU-Lex, https://eur-lex.europa.eu/EN/legal-content/summary/euro-mediterranean-association-agreements.html, 검색일자: 2023. 7. 21.

45) 「Euro-Mediterranean 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of the one part, and the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 for the benefit of the Palestinian Authority of the West Bank and the Gaza Strip, on the other」 제6조 내지 제8조, 제13조

46)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Tunisia, on the other」 제9조 내지 제11조, 제17조

47)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Kingdom of Morocco, of the other part」 제9조 내지 제11조, 제17조

48)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State of Israel, of the

○ EU와 요르단 제휴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EU가 원산지인 특정 공산품은 4년, 8년, 12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농산물은 수량제한 등이 적용됨[49]

○ EU와 이집트 제휴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EU가 원산지인 특정 공산품은 3년, 6년, 12년, 1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농수산물은 수량제한 등이 적용됨[50]

○ EU와 알제리 제휴협정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EU가 원산지인 특정 공산품은 6년, 12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농수산물은 수량제한 등이 적용됨[51]

○ EU와 레바논 제휴협정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EU가 원산지인 특정 공산품은 12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농산물은 수량제한 등이 적용됨[52]

2. 기타 FTA 협정

□ EU는 관세동맹 및 제휴협정을 제외하고 양자 간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FTA를 11개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하여 발효 중임

○ 캐나다와 CETA(Comprehensive and Economic Trade Agreement)는 2017년 9월 발효되어 약 98%의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2024년까지 99%의 관세를 철폐

---

other part」 제8조, 제12조 내지 제13조

49)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of the other part」 제9조 내지 제11조, 제16조

50)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Arab Republic of Egypt, of the other part」 제8조 내지 제9조, 제14조

51)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of the other part」 제8조 내지 제9조, 제14조

52)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Lebanon, of the other part」 제8조 내지 제9조, 제14조

하기로 함[53]

○ 중앙아메리카 연합의[54] 제휴협정은 2013년 8월 발효되어 공산품 및 수산물 99%의 관세를 철폐하고, 농산물은 민감품목을 제외한 관세를 철폐함[55]

○ 칠레와는 FTA가 포함된 제휴협정을 체결하여 2003년 2월에 발효되었으며,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 철폐를 포함하여 모두 철폐되고, 농수산물의 일부 품목은 단계적 철폐 또는 수량할당이 적용됨[56]

○ 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와는 완전 또는 부분 관세 자유화를 포함한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페루와 2013년 3월, 콜롬비아와 2013년 8월, 에콰도르와 2017년 1월부터 적용하였음[57]

○ 일본과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2019년 1월에 발효되어 EU는 99%, 일본은 97%의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은 할당 또는 경감을 합의함[58]

○ 멕시코와는 정치 및 경제 협력을 위해 글로벌 협정을 2000년에 시행하였으며, 해당 협정의 무역조항이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FTA로 발전함[59]

○ 싱가포르와의 FTA는 2019년 11월에 발효되어 싱가포르가 관세를 부과하던 맥주 등의 관세를 철폐하고, EU는 84%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며 나머지 관세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일부 수산물, 가공 농산물 등의 관세를 유지함[60]

○ 우리나라와의 FTA는 2011년 발효되었으며, 상품무역 관세의 98.7%가 철폐되고

---

53)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canada-comprehensive-and-economic-trade-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54)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55)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central-america-association-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56)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chile-association-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57)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colombia-peru-ecuador-trade-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58) EU DG TRADE,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japan-economic-partnership-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59)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mexico_en, 검색일자: 2023. 7. 26.
60)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singapore-free-trade-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치즈 등의 농산물은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때에 수입할당이 적용됨[61]

○ 영국과의 무역 및 협력 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는 2021년 1월 잠정적용되어 원산지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와 수량할당을 철폐함[62]

○ 베트남과의 FTA는 2020년 8월 발표되었으며, 베트남 원산지상품 84%의 관세를 즉시철폐, 일부 수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며, EU 농산물은 50%, 공산품은 78% 즉시철폐, 나머지 단계적으로 철폐함[63]

○ 스위스와 1972년 FTA를 체결하여 경제 및 무역관계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1984년 이후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고 일부 농산물은 가격보상조치 등이 적용됨[64]

○ 페로제도와는 1997년 FTA가 발효되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 관세 조치 및 처리를 규정하고 있음[65]

- 덴마크 왕국의 주권 아래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지는 페로제도는 덴마크가 EU 가입 시 EU의 일부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EEA 구성원도 아니고, 해외 국가 및 영토도 아님

□ 또한 EU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ACP)의 7개 지역의 32개국과 EPA를 체결하여 적용하고 있음[66]

○ EU와 EPA를 체결한 ACP 지역 및 국가는 다음과 같음

- 중앙 아프리카: 카메룬
-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ESA): 코모로, 마다가스

61)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south-korea-free-trade-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62)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uk-trade-and-cooperation-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63)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vietnam-free-trade-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64)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switzerland, 검색일자: 2023. 7. 26.
65)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faroe-islands_en, 검색일자: 2023. 7. 26.
66)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conomic-partnership-agreements-epas, 검색일자: 2023. 7. 26.

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및 짐바브웨
-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브루나이,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가나
- 카리브해(Caribbean Forum; CARIFORUM):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키츠 네비스,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 태평양: 피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 EU와 ACP 지역 및 국가와의 협정은 양자 간 협정으로 각국의 사정에 맞게 조정되며, 상품무역에서의 특혜관세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67]
  ○ EU는 ACP 지역 및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수량할당을 철폐함
  ○ 반면 ACP 지역 및 국가는 15~25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농산물 등의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며, 수량할당 등의 조치가 적용됨

□ 한편 EU는 여러 국가와 무역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상품무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지는 않음
  ○ 아르메니아와 체결한 CEPA는 2018년 6월 잠정적용되고, 2021년 3월 발효되어 서비스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을 위한 환경을 강화함[68]
  ○ 아제르바이잔과의 무역관계는 1999년 시행된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기반으로 하며, 관세특혜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수량할당 철폐를 규정함[69]

---

67)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conomic-partnership-agreements-epas, 검색일자: 2023. 7. 26.
68)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armenia_en, 검색일자: 2023. 7. 26.
69)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azerbaijan_en, 검색일자: 2023. 7. 26.

○ 카자흐스탄과는 2020년 3월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이 발효되어 서비스 무역, 자본이동 등을 규율함[70]

○ 이라크와도 2012년 PCA를 체결하여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기술장벽, 위생 및 식품위생 등의 분야를 규정함[71]

□ 이와 같이 발효·적용 중인 협정 이외에도 EU의 협정은 서명 및 타결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72]

○ 남미공동시장(Southern Common Market; Mercosur)과의[73] 제휴협정은 2019년 6월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음

○ ACP 지역인 서아프리카와의[74] EPA는 대부분 국가가 서명하였으나 나이지리아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음

○ 또한 ACP 지역인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와의[75] EPA는 케냐와 르완다만 서명했으며 나머지 국가는 서명 없이 비준만 한 상태임

○ ACP 지역의 CARIFORUM에 포함된 아이티는 2019년에 EPA에 서명하였으나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음

○ 뉴질랜드와의 FTA는 2022년 협상이 종료되어 발효를 기다리고 있음

□ 또한 EU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FTA 협정도 있음[76]

○ 호주와는 2018년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중국과는 2013년 협상을 시작함

---

70)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kazakhstan_en, 검색일자: 2023. 7. 26.

71) EU DG TRADE, h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iraq_en, 검색일자: 2023. 7. 26.

72)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negotiations-and-agreements_en, 검색일자: 2023. 7. 26.

73)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74)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잠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75) 브루나이,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76)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negotiations-and-agreements_en, 검색일자: 2023. 7. 26.

○ 인도와의 협상은 2007년 시작되어 2013년 중단되었다가 2022년 재개됨

○ 인도네시아와는 2016년에, 필리핀과는 2015년에, 미얀마와는 2015년에 FTA 협상을 시작함

□ 반면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중단된 상태인 협정도 있음[77]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와의[78] 협상은 1990년 시작되었으나 2008년 중단됨

○ 중앙아프리카와의[79] 협상 또한 2003년에 시작되었으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2011년부터 일시 중지됨

○ ACP 지역의 ESA 중 지부티, 에티오피아, 말라위, 소말리아, 수단, 잠비아와의 협상도 2004년에 시작되었으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2011년부터 일시 중지됨

○ 말레이시아와의 협상은 2010년 시작되었으나 2012년부터 일시 중지되었으며, 태국과의 협상은 2013년 시작되었으나 2014년 이후 추가 협상 일정이 없음

〈표 1-Ⅲ-1〉 EU FTA 현황

발효	서명 및 비준	협상	중단
EU-캐나다 CEPA	EU-Mercosur AA	EU-호주 협정	EU-GCC FTA
EU-중앙아메리카 AA	EU-서아프리카 EPA	EU-중국 투자협정	EU-중앙아프리카 EPA[1)]
EU-칠레 AA	EU-EAC EPA	EU-인도 FTA	EU-ESA EPA[2)]
EU-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 TA	EU-아이티 EPA	EU-인도네시아 FTA	
	EU-뉴질랜드 FTA	EU-필리핀 FTA	
EU-일본 EPA		EU-미얀마 FTA	
EU-멕시코 PA			
EU-싱가포르 FTA			
EU-한국 FTA			
EU-영국 TCA			

77)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negotiations-and-agreements_en, 검색일자: 2023. 7. 26.

78)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79)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적도기니, 가봉, 콩고 민주공화국, 상투메 프린시페

〈표 1-Ⅲ-1〉의 계속

발효	서명 및 비준	협상	중단
EU-베트남 FTA			
EU-스위스 FTA			
EU-중앙아프리카 EPA			
EU-ESA EPA			
EU-EAC EPA			
EU-SADC EPA			
EU-서아프리카 EPA			
EU-CARIFORUM EPA			
EU-ACP EPA			

주: 1)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적도기니, 가봉, 콩고 민주공화국, 상투메 프린시페
2) 지부티, 에티오피아, 말라위, 소말리아, 수단, 잠비아

자료: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negotiations-and-agreements_en, 검색일자: 2023. 7. 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Ⅳ.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1. 한-EU 수출입 동향

□ EU는 2022년 우리나라에 597억유로를 수출하고, 우리나라로부터 713억유로를 수입하여 116억유로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임

○ EU의 對우리나라 수출은 2018년 이후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2021년 14%, 2022년 16.%의 증가율을 보이며 큰 폭으로 상승함

○ 한편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2018년 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21년 23%, 2022년 31%의 증가율을 보임

○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다가 2019년 수출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흑자로 돌아섰으나 202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22년 적자가 심해짐

〈표 1-Ⅳ-1〉 최근 5년간 EU 對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단위: 10억유로,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48.6	-1.3	47.0	-3.4	45.1	-3.9	51.4	13.9	59.7	16.1
수입	50.9	1.9	51.6	1.5	44.4	-14.1	54.5	22.9	71.3	30.8
교역규모	99.5	0.3	98.6	-0.9	89.5	-9.2	105.9	18.4	131.0	23.7
무역수지	-2.25	-	-4.66	-	0.77	-	-3.09	-	-11.6	-

주: 1)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ItemImpExpDetailPopup.screen, 검색일자: 2023. 4. 3.

□ 2022년 EU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46억유로의 반도체·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로 이들의 부속품이나 부분품도 6번째 규모로 수출함

○ 또한 승용자동차(2위, 4위)와 의약품(3위, 5위)의 수출이 많았으며, 냉동 돼지고기, 핸드백 등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많은 품목의 수출이 규모가 컸음

□ 한편 EU는 우리나라로부터 기타 석유와 역청유, 이들의 조제품을 30억유로를 수입하였으며, 승용자동차(2위, 4위)의 수입 또한 많았음

○ 기타 산화금속산염의 수입이 전년 대비 669% 상승한 24억유로를 기록했으며, 기타 화학공업생산품도 전년 대비 193% 증가하는 등 화학품의 수입이 증가하였음

○ 그 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속품 및 부분품(5위), 스마트폰(7위), 리튬이온 축전지(8위), 전자집적회로(9위) 등 전자제품 및 기계의 수입 규모가 컸음

〈표 1-Ⅳ-2〉 2022년 EU 對우리나라 수출입 상위 10품목[1)]

(단위: 10억유로, %)

수출				수입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2)]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단결정 보울(boule)을 성장시키는 기계	4.64	-5.0	1	기타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	3.05	192.6
2	실린더 용량이 1,500㏄ 초과 3,000㏄ 이하인 기타 승용자동차(불꽃점화식 내연기관)	2.92	29.9	2	기타 승용자동차(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2.42	7.2
3	기타 소매의약품	2.48	50.0	3	기타 산화금속산염	2.19	668.8
4	기타 승용자동차(불꽃점화식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2.36	31.8	4	기타 승용자동차(불꽃점화식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2.02	26.6
5	인체의약용 백신	1.41	2.8	5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92	31.9

〈표 1-Ⅳ-2〉의 계속

수출				수입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2)]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6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부분품과 부속품	0.92	34.6	6	기타 화학공업생산품	1.90	193.1
7	기타 승용자동차(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0.88	185.6	7	스마트폰	1.87	0.0[3)]
8	냉동 기타 돼지고기	0.87	7.5	8	리튬이온 축전지	1.80	2.8
9	전자집적회로(프로세서와 컨트롤러)	0.79	18.9	9	기타 전자집적회로	1.29	77.5
10	외부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핸드백	0.75	33.4	10	소매용의 면역용품	1.29	-38.2

주: 1) HS 6단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감률
3) HS 2022에 의해 스마트폰이 특게됨에 따라 HS 2017이 적용되는 2021년은 스마트폰만 분류되는 HS 6단위가 없어 증감률을 산출할 수 없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3. 4. 3.

2. 한-EU FTA

□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된[80)] 한-EU FTA는 거대 선진경제권과 체결된 FTA로 우리나라의 6번째 FTA임

○ 한-EU FTA는 일본, 중국보다 앞서 체결되어[81)] EU 시장에서 우리 업계에 유리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로의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82)]

80) 한-EU FTA의 경우,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리 진행되어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은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과 EU 각료이사회의 승인으로 2011년 7월 1일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하고, 각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완료되어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을 교환한 2015년 10월 15일에서 60일이 경과한 2015년 12월 13일 전체 발효됨(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12. 13(일), 한-EU FTA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 보도자료, 2015. 12. 12.)
81) 일본-EU EPA는 2019년 2월 1일 잠정발효되었으며, 중국과 EU는 FTA를 체결하지 않음

〈표 1-Ⅳ-3〉 한-EU FTA 협상 및 이행 일지

일시	내용
2006. 5.	한-EU 통상장관회담 개최(필리핀),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합의
7.	제1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9.	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11.	한-EU FTA 공청회 개최, 일반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12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2007. 4.	FTA 추진위원회 개최, 한-EU FTA 추진방안 협의
5.	대외 경제장관회의 개최, 한-EU FTA 협상 출범 승인
5.	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승인
5.	제1차 한-EU FTA 협상 개최(서울)
7.	제2차 한-EU FTA 협상 개최(브뤼셀)
9.	제3차 한-EU FTA 협상 개최(브리쉘)
10.	제4차 한-EU FTA 협상 개최(서울)
11.	제5차 한-EU FTA 협상 개최(브뤼셀)
2008. 1.	제6차 한-EU FTA 협상 개최(서울)
5.	제7차 한-EU FTA 협상 개최(브뤼셀)
2009. 3.	제8차 한-EU FTA 협상 개최(서울)
7.	한-스웨덴 정상회담 시 협상 타결 선언(스톡홀름)
10.	한-EU FTA 가서명
2010. 10.	한-EU FTA 정식서명
2011. 2.	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2.	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4.	한-EU FTA 비준 동의안 우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5.	한-EU FTA 비준 동의안 우리 국회 본회의 통과
7.	한-EU FTA 잠정발효
10.	제1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서울)
2012. 9.	제1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브뤼셀)
9.	제1자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최(브뤼셀)
10.	제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브뤼셀)
2013. 9.	제2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과천)

82) 트레이드 내비,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174#none, 검색일자: 2023. 7. 10.

〈표 1-Ⅳ-3〉의 계속

일시	내용
9.	제2차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최(과천)
10.	제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서울)
2014. 5.	크로아티아 한-EU FTA 가입 잠정발효
9.	제3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브뤼셀)
9.	제3차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최(브뤼셀)
10.	제4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브뤼셀)
2015. 9.	제4차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최(서울)
9.	제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서울)
9.	제5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서울)
12.	한-EU FTA 전체발효
2016. 6.	한-EU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브뤼셀)
11.	한-EU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브뤼셀)
12.	제6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브뤼셀)
2017. 6.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서울)
2018. 1.	제7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브뤼셀)
12.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브뤼셀)
2020. 2.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서울)

자료: 산업부 FTA 포털, https://www.fta.go.kr/eu/info/2/, 검색일자: 2023. 7. 10.

□ 우리나라와 EU는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함[83)]

○ 2006년 HS 품목 수를 기준으로 EU는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5%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 우리는 93.6%를 5년 내 철폐함

○ 이는 2004~2006년 평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EU는 모든 수입, 우리나라는 수입 97%에 해당함

- 즉 EU는 수입액 기준으로 모든 관세를 5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한 반면, 우리는 다수의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관세유지, 장기철폐 등의 예외적 취급을 확보함

83)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2. 6, p. 2

〈표 1-Ⅳ-4〉 한-EU FTA 상품 양허수준

(단위: 개, %, 억달러, %)

양허 유형	우리나라				EU			
	품목 수	비중	대EU 수입액	비중	품목 수	비중	대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	9,195	81.7	182	66.7	9,525	94.0	318	76.6
3년	625	5.5	61	22.2	282	2.9	69	16.7
5년	718	6.4	22	8.1	269	2.7	28	6.7
5년 내 소계	10,538	93.6	265	97.0	9,803	99.6	415	100
6~7년	111	1.0	4	1.4	-	-	-	-
10년	399	3.5	3	1.1	-	-	-	-
10년 초과	169	1.5	1	0.5	-	-	-	-
양허 제외	44	0.4	0	0.0	39	0.4	0	0.0
총합계	11,261	100	273	100	9,842	100	415	100

자료: 외교통상부(2012), p. 3

□ 우리나라는 2022년 한-EU FTA 특혜대상 수출물품의 87%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출 활용률임[84]

○ 최근 5년간 한-EU FTA 수출 활용률은 86.7%, 86.9%, 87.2%, 87.7%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 87%로 소폭 감소하였음

84) 2022년 우리나라의 FTA 수출 활용률은 75.5%이며, 캐나다(94.6%), 영국(89.3%), EU(87%), 미국(85.9%), 페루(83.6%) 순으로 활용률이 높음(관세청(2023), p. 5, pp. 10~11)

〈표 1-Ⅳ-5〉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한-EU FTA 수출 활용 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총금액	FTA 특혜대상	C/O 발급액	활용률[1)]
2018년	57,680,987	32,701,417	28,352,324	86.7
2019년	52,806,019	31,529,296	27,391,161	86.9
2020년	52,143,733	28,570,993	24,923,386	87.2
2021년	63,606,842	34,507,199	30,267,927	87.7
2022년	68,110,451	37,210,425	32,382,969	87.0

주: 1) FTA 특혜 대상품목의 C/O 발급액 / FTA 특혜 대상품목 수출액 × 100

자료: 관세청, 『한 눈에 보는 2018년 FTA 활용 지도』, 2019, p. 14; 관세청, 『한 눈에 보는 2019년 4분기 FTA 활용 지도』, 2020, p. 14; 관세청, 『한 눈에 보는 2020년 4분기 FTA 활용 지도』, 2021, p. 14; 관세청, 『한 눈에 보는 2021년 4분기 FTA 활용 지도』, 2022, p. 14; 관세청, 『한 눈에 보는 2022년 4분기 FTA 활용 지도』, 2023, p. 14

[그림 1-Ⅳ-1] 우리나라의 한-EU FTA 수출 활용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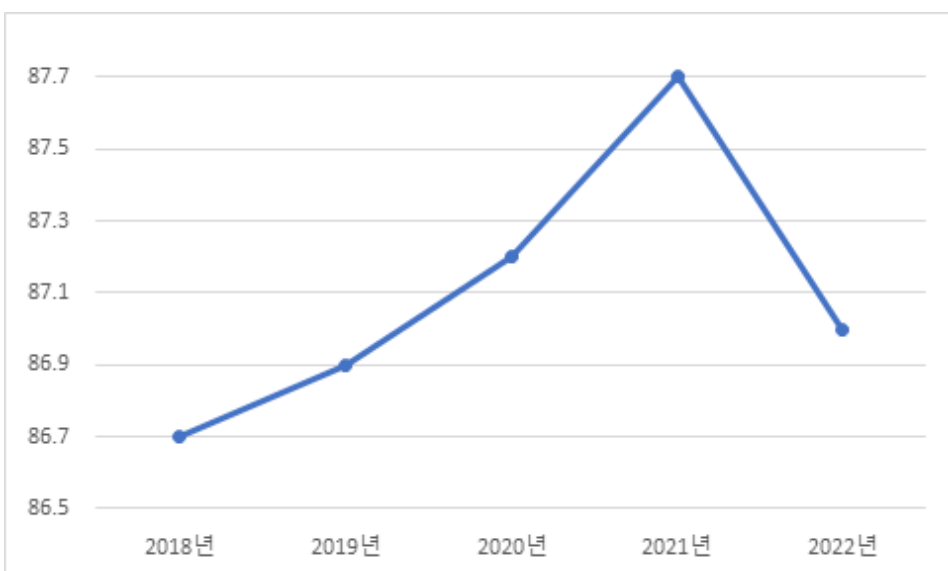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2019), p. 14; 관세청(2020), p. 14; 관세청(2021), p. 14; 관세청(2022), p. 14; 관세청(2023), p. 1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반면, 2022년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수입한 품목 중 FTA 특혜 대상품목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비율은 76.4%[85]로 수출 활용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임

○ 그러나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한-EU FTA 수입 활용률은 76.4%, 76.6%, 80%, 78.3%, 79.4%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1-Ⅳ-6〉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한-EU FTA 수입 활용 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총금액	FTA 특혜대상	FTA 적용	활용률[1)]
2018년	62,278,498	49,577,906	37,865,246	76.4
2019년	55,785,933	43,589,067	33,374,003	76.6
2020년	59,486,510	42,500,159	34,012,067	80.0
2021년	65,915,078	45,105,254	35,338,306	78.3
2022년	68,185,802	46,152,883	36,656,320	79.4

주: 1) FTA 특혜 적용액 / FTA 특혜 대상품목 수입액 × 100
자료: 관세청(2019), p. 15; 관세청(2020), p. 15; 관세청(2021), p. 15; 관세청(2022), p. 15; 관세청(2023), p. 15

[그림 1-Ⅳ-2] 우리나라의 한-EU FTA 수입 활용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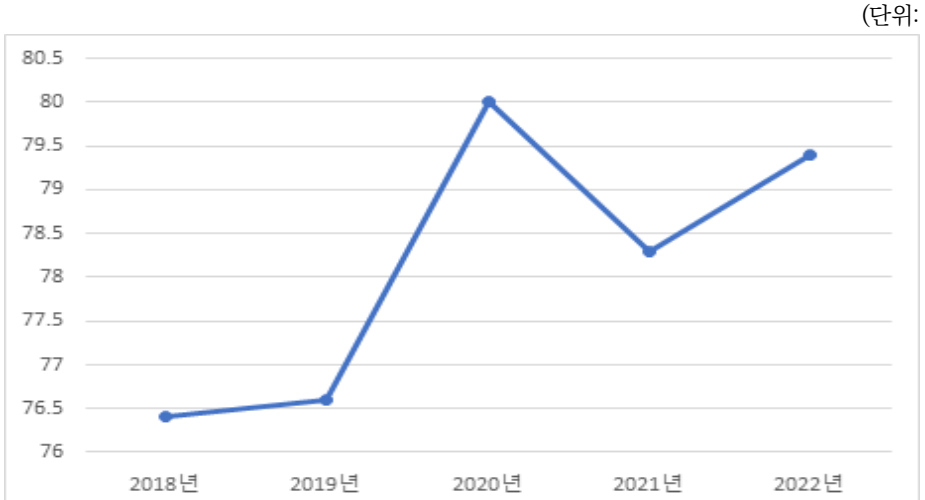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2019), p. 15; 관세청(2020), p. 15; 관세청(2021), p. 15; 관세청(2022), p. 15; 관세청(2023), p.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85) 2019년 우리나라의 FTA 수출 활용률은 76.6%임(관세청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UseRate/ftaUseRateCnvnImpList.do?mi=3353, 검색일자: 2020. 9. 1)

□ 2022년 우리나라의 한-EU FTA 활용률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특혜 대상품목의 수출·입이 가장 많은 기계류와 농림수산물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승용자동차, 자동자료처리기계 부분품 등이 속하는 기계류의 수출 활용률은 90%임

○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인 반도체 제조장비 등이 포함되는 기계류, 석유 등이 포함되는 화학공업제품도 86.3%, 85.9%로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음

- 다만, 광산물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비율이 29.9%로 다른 산업분야보다 가장 낮은 수입 활용률을 보이고 있음

〈표 1-Ⅳ-7〉 2022년 우리나라의 한-EU FTA 산업별 활용 현황

(단위: 천달러, %)

산업	수출		수입	
	FTA 특혜대상	활용률[1)]	FTA 특혜대상	활용률[1)]
농림수산물	322,028	80.1	5,234,182	90.0
광산물	51,145	94.5	1,422,502	29.9
화학공업제품	9,871,810	89.9	8,589,838	85.9
플라스틱·고무·가죽	1,892,210	72.4	972,596	84.9
섬유류	948,780	82.1	2,208,568	63.2
생활용품	418,999	80.5	5,188,236	63.0
찰강금속제품	1,790,662	78.2	1,362,654	86.4
기계류	17,022,670	90.0	17,096,897	86.3
전자전기제품	4,659,429	84.6	4,002,554	66.3
잡제품	232,692	19.8	74,856	86.2
합계	37,210,425	87.0	46,152,883	79.4

주: 1) 수출 활용률 = FTA 특혜 대상품목의 C/O 발급액 / FTA 특혜 대상품목 수출액 × 100
수입 활용률 = FTA 특혜 적용액 / FTA 특혜 대상품목 수입액 × 100

자료: 관세청(2023), p. 30

제2편 통관제도

Ⅰ. 통관 관련 조직 및 법

1. 관세행정조직

가. 조세 및 관세 동맹 총국(Taxation and Customs Union)

□ EU는 집행위원회에서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법령을 집행하며, EU 조약의 이행을 감시함[86]

○ 집행위원회는 국가의 내각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정책의 제안과 개발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EU의 재정관리·운영을 담당함[87]

□ 집행위원회는 33개의 총국(Directorate-General), 6개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 17개의 서비스부서로 구성되어 분야별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관장함[88]

---

86) 강동익·이재선(2022), p. 13
87) 외교부(2021), p. 23.(강동익·이재선(2022), p. 13에서 재인용)
88) 이주형·권소영·김원용·권미진·최웅재·van der Meulen, 『주요국(EU)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식품안전정보원, 2018, p. 18.(강동익·이재선(2022), p. 13에서 재인용)

○ 집행위원회의 일반적인 업무는 총국에서 이루어지며, 집행위원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총국을 담당하며 정치적 책임을 짐[89]

□ 집행위원회의 분야별 총국 중 조세 및 관세동맹 총국(Taxation and Customs Union; TAXUD)은 신속한 경제회복과 더 친환경적이고 디지털화 된 공정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90]

○ EU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자원을 제공하고 녹색 거래 및 디지털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및 디지털 과세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TAXUD는 조세 및 관세와 관련된 우선사항을 이행하고, EU의 투자 및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수입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91]

○ 공정한 과세원칙을 지지하고 단순한 조세환경 조성, 조세정책의 현대화, 조세 남용의 방지 등을 통해 공공재정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함

□ 특히 TAXUD는 관세동맹을 통해 원활한 무역을 촉진하고 기업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단일시장과 예산자원의 보호에 전념함[92]

○ 세관을 현대화하고, 데이터 분석 및 혁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며 제3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화되고 디지털화 된 세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함

○ 현재 EU의 관세정책은 다음의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음[93]

- 관세동맹 관리방식의 개정
- 위험관리, 보안 및 안전과 같은 영역의 강화 등 법적 구조의 현대화
- 전자정보시스템 사용의 확대
- 상품 통관분야에서 단일시장의 개선 지원

---

89) 강유덕, 『EU 로비제도의 현황과 사례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 40.(강동익·이재선(2022), p. 13에서 재인용)
90)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mission-statement_en, 검색일자: 2023. 7. 26.
91)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mission-statement_en, 검색일자: 2023. 7. 26.
92)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mission-statement_en, 검색일자: 2023. 7. 26.
93) EU 집행위원회, https://commission.europa.eu/topics/customs_en, 검색일자: 2023. 7. 26.

[그림 2-Ⅰ-1] EU 집행위원회의 구성

총국(Directorate-General)						집행기관 (Executive Agency)	서비스부서(Service Department)		
농업 및 농촌개발 (AGRI)	예산 (BUDG)	기후대책 (CLIMA)	소통 (COMM)	통신 네트워크, 콘텐츠 및 기술 (CONNECT)	경쟁 (COMP)	유럽기후, 인프라 및 환경 (CINEA)	개인권리 관리 및 지급 (PMO)	정보보호 (DPO)	유럽사기방지 (OLAF)
방위산업 및 우주 (DEFIS)	경제 및 재정업무 (ECFIN)	교육, 청소년, 스포츠 및 문화 (EAC)	고용, 사회문제 및 포용 (EMPL)	에너지 (ENER)	환경 (ENV)	유럽교육 및 문화 (EACEA)	유럽집행 위원회 도서관	유럽인력선정 (EPSO)	유럽학업관리 (EUSA)
유럽시민 보호 및 인도주의활동 (ECHO)	유럽주변국 및 확대협상 (NEAR)	유럽통계 (EUROSTAT)	금융안정성, 금융서비스 및 자본시장동맹 (FISMA)	보건 및 식품안전 (SANTE)	통역 (SCIC)	유럽보건 및 디지털 (HADEA)	외국인정책 기관 (FPI)	역사자료실	브뤼셀의 인프라 및 물류 (OIB)
인적자원 및 보안 (HR)	정보과학 (DIGIT)	국제시장, 산업,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GROW)		국제동반자 (INTPA)	모빌리티 및 운송 (MOVE)	유럽혁신위원회 및 중소기업 (EISMEA)	룩셈부르크의 인프라 및 물류(OIL)	고취, 논의, 참여 및 촉진 행동 (IDEA)	내부감사 (IAS)
공동연구센터 (JRC)	사법 및 소비자 (JUST)		해양 및 수산업 (MARE)	이주 및 내무 (HOME)	번역 (DGT)	유럽연구위원회 (ERCEA)	법률 (SJ)	간행물 (OP)	회복 및 복원 TF (RECOVER)
지역 및 도시정책 (REGIO)	연구 및 혁신 (RTD)	구조개혁지원 (REFORM)	조세 및 관세동맹 (TAXUD)	무역 (TRADE)		유럽연구 (REA)	사무총국 (SG)	보건응급준비 및 대응 당국 (HERA)	

자료: EU 집행위원회, https://commission.europa.eu/about-european-commission/departments-and-executive-agencies_en, 검색일자: 2023. 7. 26.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2-Ⅰ-2] TAXUD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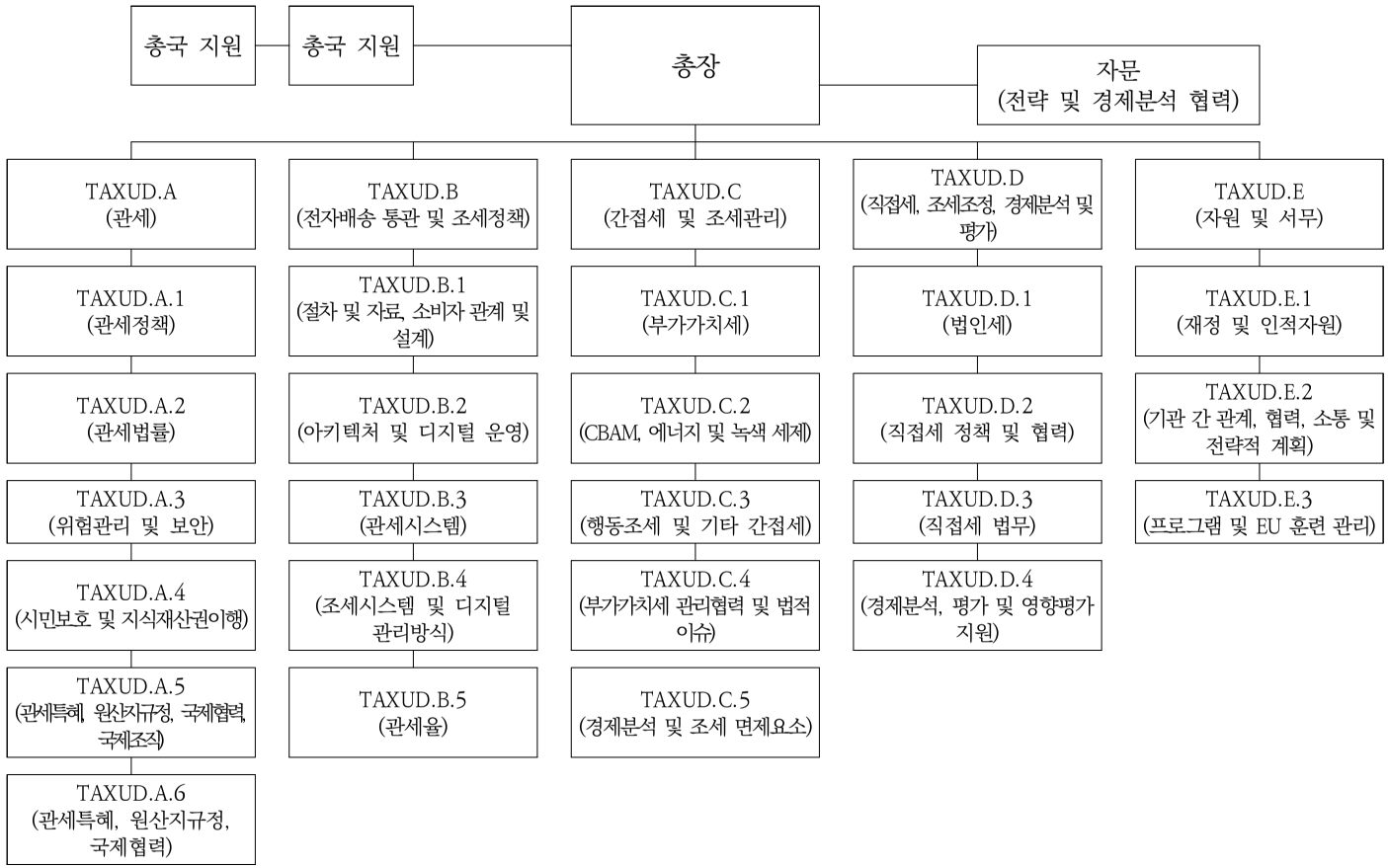

자료: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3-07/organi_EN_0.pdf, 검색일자: 2023. 7. 26.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5월 17일 관세동맹의 설립 이후 가장 포괄적인 EU 관세동맹 개혁안을 제시함[94]

○ 이는 전자상거래의 증가, 국경에서 확인해야 하는 EU 표준의 증가, 변화하는 지정학적 현실 및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임

□ 개혁안에는 세관절차를 줄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수입감독 방식으로 대체하기 위해 EU Customs Data Hub를 구축하고, 이를 감독할 세관당국의 신설을 포함함[95]

○ 이를 통해 수입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재사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세관보고를 단순화·합리화 함

○ EU Customs Data Hub는 2028년에 전자상거래에 개방되고 2032년에 다른 수입업체가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2038년 의무화할 방침임

□ 신설되는 세관당국은 관세통제의 조화의 관점에서 관세법의 단일화와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에 기여하기 위해 EU와 그 회원국의 재정적·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96]

○ 이를 위해 안전 및 안보를 보장하고, 시민·거주자·소비자·환경·공급망을 보호하는 EU의 정책에 기여하며 불법 거래로부터 EU를 보호해야 함

○ 또한 합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며, 공정하고 개방된 거래와 일반상업 정책을 위해 EU의 국제무역을 위해 감독해야 함

□ 세관당국은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97]

---

94)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eu-customs-reform_en, 검색일자: 2023. 7. 27.

95)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eu-customs-reform_en, 검색일자: 2023. 7. 27.

9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Union Customs Code and the European Union Customs Authorit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52/2013」 제2조

97)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Union Customs Code and the European Union Customs Authorit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52/2013」 제2조

○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의 적절한 징수 보장
○ 물품 및 공급망 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과 거주자의 안전 또는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는 물품이 관세영역에 반입되지 않도록 보장
○ 세관당국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인간·동물·식물의 건강과 생명, 환경, 소비자 및 기타 공익과 관련한 위험물품이 관세영역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지 않도록 다른 당국과 협력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
○ 경제적 주체[98]·공급망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최소한의 핵심 관세위반 및 처벌을 통하여 불공정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거래로부터 EU 보호
○ 세관 통제와 합법적인 무역 촉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세관 절차를 단순화하여 합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

나. 전문기구

□ EU는 27개 회원국의 약 4억 5천만명이 속한 공동체로 집행위원회의 제한된 인력으로 새로운 입법과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음[99]
○ 따라서 정책과정에서 입법제안 실무·자문과 정보제공, 회원국 간 의견조정 등 집행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집행위원회 총국의 제한된 인력 및 자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EU는 전문조직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100]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규모의 전문가로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므로 위원회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98) 자신의 사업과정에서 관세법이 적용되는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을 의미(「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Union Customs Code and the European Union Customs Authorit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52/2013」 제5조 제6항)
99) 송병준, 「유럽연합의 위원회 거버넌스: 유럽위원회 전문가그룹의 기능과 의미」, 『글로벌 정치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6. 6, p. 10.(강동익·이재선(2022), p. 17에서 재인용)
100) 송병준(2016), pp. 10~11.(강동익·이재선(2022), p. 17에서 재인용)

1) 커미톨로지위원회(comitology committees)

□ 집행위원회는 통일된 EU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시행법(Implement acts)의 채택을 위하여 커미톨로지위원회(comitology committees)를 구성함[101]

○ EU 내의 일관된 정책과 조치 실행을 위해 집행위원회에서 일부 법령의 실행법의 입법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입법과정에 커미톨로지위원회가 개입함[102]

□ 커미톨로지는 집행위원회가 법률로 실행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적용되며, 모든 시행법에 대해 커미톨로지와의 협의를 강제하지는 않음[103]

○ 집행위원회에 실행권한을 부여한 법률은 시행법에 포함된 조치를 정의할 때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커미톨로지는 EU 법률의 시행법에 대해 EU 국가의 발언권을 부여하는 대표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일련의 심의 및 자문절차임[104]

○ 따라서 위원회에는 EU 각국의 대표 1명씩이 포함되며, 집행위원회의 관료가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 커미톨로지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시행법을 채택하는 때에 심의절차 또는 자문절차를 이행하며, 위원회의 의견은 집행위원회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105]

○ 일반적인 범위의 조치나 조세 또는 농업정책과 같은 잠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시행법을 채택할 때 심의절차가 적용됨

---

101)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law/law-making-process/adopting-eu-law/implementing-and-delegated-acts/comitology_en, 검색일자: 2023. 7. 27.
102) 송병준, 「리스본조약 체결 이후 신커미톨로지(실행입법)의 의미」, 『유럽연구』, 제33권 제3호, 유럽연구협회, 2015. 9, p. 327.(강동익·이재선(2022), p. 17에서 재인용)
103)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law/law-making-process/adopting-eu-law/implementing-and-delegated-acts/comitology_en, 검색일자: 2023. 7. 27.
104)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law/law-making-process/adopting-eu-law/implementing-and-delegated-acts/comitology_en, 검색일자: 2023. 7. 27.
105)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law/law-making-process/adopting-eu-law/implementing-and-delegated-acts/comitology_en, 검색일자: 2023. 7. 27.

- 심사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다수결에 따라 시행법 초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과반수의 의견이 없으면 초안을 채택 또는 수정할 수 있음[106]

○ 심의절차가 적용되는 조치 외의 모든 시행법에서 자문절차가 적용됨

- 자문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에서의 논의와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채택할 시행법 초안을 결정해야 함[107]

□ 2023년 현재 TAXUD는 25개의 커미톨로지위원회를 운영하며, 그중 관세법 위원회(Customs Code Committee)는 13개의 분야가 운영되고 있음[108]

○ 관세법 위원회는 다음의 분야로 구성될 수 있음[109]

- 일반 관세 입법(General Customs Legislation)
- 자료 통합 및 조화(Data Integration and Harmonisation)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sed Economic Operator)[110]
- 세관통제 및 위험관리(Customs Control and Risk Management)
- 관세 및 통계 분류표(Tariff and Statistical Nomenclature)
- 관세조치(Tariff Measures)
- 관세경감(Duty Relief)
- 원산지(Origin)
-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 관세채무 및 보증(Customs Debt and Guarantees)
- 수입 및 수출 절차(Import and Export Formalities)[111]
- 통관 및 통과(Customs Status and Transit)

---

106) Regulation(EU) No.182/2011 제4조
107) Regulation(EU) No.182/2011 제5조
108)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committees?lang=en, 검색일자: 2023. 7. 27.
109) Rules of procedure for the customs code committee 제1조 제1항
110) 2023년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음(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committees?lang=en, 검색일자: 2023. 7. 26.)
111) 2023년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음(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committees?lang=en, 검색일자: 2023. 7. 26.)

-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other than Transit)
- 지식재산권 집행(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이와 더불어 EU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Environment for Customs) 위원회가 2022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음[112]

□ 관세법 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채택해야 할 실행법 초안에 대하여 자문절차 또는 심의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함[113]

○ 연합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은 집행위원회가 관세법 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커미톨로지 규정[114]에 따른 절차가 적용됨을 명시함[115]

2) 전문가그룹(Expert Groups)

□ 집행위원회는 내부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건전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함[116]

○ 집행위원회는 입법에 요구되는 정보의 제약, 관료조직에 기인한 폐쇄성 등으로 사회적 요구 수용에 한계를 가지므로 외부로부터 기능적 지원을 받아야 함[117]

□ 이러한 자문과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Expert Groups)을 집행위원회 또는 그 부서에서 구성함[118]

○ 전문가그룹에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공식그룹과 집행위원, 부국장 및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 개별 집행위원회 부서에서 구성하는 비공식그룹이 있음

---

112)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committees?lang=en, 검색일자: 2023. 7. 26.
113) Rules of procedure for the customs code committee 제3조, 제5조
114) Regulation(EU) No.182/2011
115) UCC 제285조
116)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ransparency/expert-groups-register/screen/expert-groups-explained?lang=en, 검색일자: 2023. 7. 27.
117) 송병준(2016), p. 18.(강동익·이재선(2022), p. 20에서 재인용)
118)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ransparency/expert-groups-register/screen/expert-groups-explained?lang=en, 검색일자: 2023. 7. 27.

□ 전문가그룹은 포럼의 형태로 구성되어 집행위원회에게 의견, 권고사항, 보고서 등으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를 제공함[119]

○ 다양한 출처에서 전문지식을 수집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음

○ 전문가그룹은 다음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에 조언을 제공함

- 입법제안 및 정책발의 준비
- 위임법 준비
-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및 협력을 포함하여 EU의 입법, 프로그램 및 정책의 이행
- 커미톨로지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의 이행법의 초안 준비

□ 전문가그룹의 조언은 집행위원회와 완전히 독립된 전문지식 및 견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써 집행위원회에 구속력이 없음[120]

○ 집행위원회는 특정 문제에 대한 견해를 수집하는 때에 전문가그룹뿐 아니라 연구기관, 녹서[121], 공개협의, 청문회 등을 고려하여 정책과 조치를 제안함

□ 2013년 TAXUD도 관세법과 관련하여 조언과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공식 관세법 전문가그룹을 설립하였음[122]

○ 관세법 위원회는 실행법 초안에 대한 논의, 확정 및 의견을 발표할 권한만 있으므로

---

119)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ransparency/expert-groups-register/screen/expert-groups-explained?lang=en, 검색일자: 2023. 7. 27.

120)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ransparency/expert-groups-register/screen/expert-groups-explained?lang=en, 검색일자: 2023. 7. 27.

121) 녹서(green paper)란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발표하는 정부제안 예비보고서로서 정부가 특별한 사안에 대해 새로운 법률 혹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첫 번째 단계로 녹서를 발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정책 및 법률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거나 조치 가능한 방법을 다루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협의를 제안함(KOTRA,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57310, 검색일자: 2023. 7. 27.)

122) EU 집행위원회, “Note to the expert group registry; Term of reference of the customs expert group,” 2016, p. 1.(강동익·이재선(2022), p. 21에서 재인용)

위원회가 수행한 자문업무를 전문가그룹에서 연속성 있도록 담당함

□ 관세 전문가그룹은 UCC의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개발을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함[123]

○ 관세 전문가그룹의 임무는 다음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에 관세문제에 대한 조언과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임

- 관세와 관련된 입법 제안 및 정책 발의 준비
- UCC와 기타 법률을 보완하는 관세와 관련된 위임법의 준비
- 관세와 관련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지침의 작성, 회원국 간 경험 및 선례의 교환 및 협력, 입법의 적용 및 정책의 발전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EU의 입법, 프로그램, 정책의 이행
- 국제협정의 관세규정 협상을 위한 입장 준비
- 국제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서 EU를 대표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될 초안 입장 준비
- WCO 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구 또는 후원하에 설립된 기관에서 처리되는 문제의 조정
- UCC에 따른 특별절차의 신청 및 인가와 관련하여 경제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2. 통관 관련 법령

□ EU는 세관을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UCC(Union Customs Code)[124]를 제정하여 2016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음[125]

○ UCC는 현대 무역의 현실과 전자화된 통신도구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EU 관세영역

123) EU 집행위원회(2016), pp. 1~2.(강동익·이재선(2022), p. 21에서 재인용)
124) Regulation (EU) No 952/2013
125)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union-customs-code_en, 검색일자: 2023. 7. 27.

내에서의 관세규정과 절차를 위한 포괄적인 업무 체계를 제공함

□ UCC는 간편화를 통한 서비스, 신속성을 핵심목표로 삼고 관세 법률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단순화 함[126]

○ UCC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기업에 보다 큰 법적 확실성과 동일성을 제공하고 EU 전역의 세관공무원을 위한 명확성 향상
- 종이 없는 완전 전자통관 환경으로의 전환 완료
- 규정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주체(AEO)를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 강화
-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EU 전략의 주요 목표 발전
- EU로 반입되거나 EU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흐름 보호
- EU와 회원국의 재정적·경제적 이익과 EU 시민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

□ UCC는 비필수적인 요소를 보완하고 회원국의 통일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UCC 위임법(UCC Delegated Act; UCC DA)[127]과 UCC 시행법(UCC Implementing Act; UCC DA)[128]이 제정됨[129]

○ UCC DA는 UCC에 수립된 주요 규칙을 구현하고 경제적 주체 및 관세청의 요구에 맞게 조정함

○ UCC IA는 UCC 이행을 위한 통일된 조건과 모든 회원국의 조화로운 절차 적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와 같은 UCC는 2023년 5월 17일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관세동맹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규정(Regulation (EU) No 952/2013)을 폐지하고 UCC 및 EU

126)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union-customs-code-ucc-introduction_en, 검색일자: 2023. 7. 27.
127)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No 2015/2446
12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No 2015/2447
129)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union-customs-code/ucc-legislation_en, 검색일자: 2023. 7. 27.

세관당국을 수립하는 규정이 EU 의회에 제안됨[130]

○ 새로운 UCC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구조를 가짐[131]

- 세관당국, 수입자, 수출자 및 운송업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정보는 EU Customs Data Hub에서 수집되고 위험분석을 위해 처리됨
- 다음으로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규정이 이어지며, 위기 메커니즘, EU 세관당국, 관세위반 및 비형사적 제재의 공통된 최소한의 조화 규정을 신설함

□ 이러한 제안은 합의를 위해 유럽의회와 EU 각료이사회로 송부되며, 유럽 경제 사회 위원에게 자문을 받게 됨[132]

○ EU 세관당국을 언급하는 조항은 2028년 1월부터 적용돼야 하며, EU Customs Data Hub의 기능은 2032년부터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2037년까지 완전히 개발돼야 함[133]

130)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eu-customs-reform_en, 검색일자: 2023. 7. 27.

13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Union Customs Code and the European Union Customs Authorit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52/2013」 설명각서-제안의 특정조항에 대한 설명

132)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eu-customs-reform_en, 검색일자: 2023. 7. 27.

133)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Union Customs Code and the European Union Customs Authorit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52/2013」 전문 제73항 내지 제74항

〈표 2-Ⅰ-1〉 현행 UCC 및 UCC 개정안 비교

현행 UCC		UCC 개정안		
구분	Title	구분	Title	주요 내용
Ⅰ	일반 규정	Ⅰ	일반 규정	새로운 UCC 소개
Ⅱ	거래물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 및 기타 조치를 적용하는 기초 요소	Ⅱ	관세법령에 관한 개인의 의무와 권리	수입자, 간주 수입자, 수출자의 책임
Ⅲ	관세 채무 및 담보	Ⅲ	EU Customs Data Hub	IT 시스템의 통합 및 교체
Ⅳ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물품	Ⅳ	세관감시, 세관통제 및 위험관리	관세영역에 반출·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세관감독 범위
Ⅴ	관세상의 지위, 세관절차하에 물품 두기, 물품의 검증·통관·처분에 관한 일반적 규정	Ⅴ	세관절차하에 물품 두기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거나 EU 내에서 자유유통 위해 통관하기 위한 세관절차
Ⅵ	자유유통을 위한 통관 및 수입 관세의 경감	Ⅵ	EU 관세영역으로 물품의 반입	물품을 EU 관세영역에 반입하는 간소화된 절차
Ⅶ	특별절차	Ⅶ	EU 관세영역에서 반출된 물품	물품을 EU 관세영역에서 반출하는 간소화된 절차
Ⅷ	EU 관세영역에서 반출된 물품	Ⅷ	특별 절차	기존의 절차 유지
Ⅸ	전자적 체계, 단순화, 권한의 위임, 위원회 절차 및 최종규정	IX	품목분류, 원산지, 물품가격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결정해야 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세부적 규칙
		X	관세 채무 및 담보	관세 채무 발생 지역
		XI	제한 조치 및 위기관리 메커니즘	위기 사항에 적용하는 공통 위험기준, 완화조치, 협력 업무체계, 절차
		XII	EU 세관당국	EU 세관당국의 임무, 책임, 운영방식
		XIII	관세 협력	다른 당국과의 협력
		XIV	관세 위반 및 비형사적 제재에 대한 공통 규정	관세위반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공통되는 핵심부분과 비형사적 제재의 공통원칙
		XV	최종 규정	새로운 시스템의 타임라인

자료: UCC(Regulation (EU) No 952/2013) 및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Union Customs Code and the European Union Customs Authorit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52/201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Ⅱ. 관세채무의 성립·확정·소멸

1. 관세채무의 성립

가. 관세채무의 성립 시기 및 장소

□ 관세채무란 시행되고 있는 관세법령에 따라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수출·입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함[134]

○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고 국가가 관세를 징수할 채권을 가지게 되는 관계를 관세채권·채무관계라고 하며, 이를 관세채무로 부름[135]

□ 수입에 관한 관세채무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함

○ 수입관세가 부과된 비EU 물품을 자유유통을 위한 통관 또는 수입관세의 일부 경감을 수반하는 일시적 반입 절차에 두는 경우[136]

○ 수입관세의 환급 및 면제 금지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원산지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137]

-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EU와 비EU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특혜약정의 틀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돼야 함

---

134)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procedures-import-and-export-0/customs-procedures/customs-debt_en, 검색일자: 2023. 8. 1.
135)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p. 81
136) UCC 제77조 제1항
137) UCC 제78조 제1항

□ 이 외에 수입에 관한 채무는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함[138]

○ 비EU 물품의 EU 관세영역으로 반입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을 세관 감시에서 벗어나도록 하거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가공·보관·임시보관·임시반입·폐기하기 위해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 EU 관세영역 내에서 물품의 최종 용도와 관련하여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 비EU 물품을 관세절차하에 두기 위한 조건 또는 해당 물품의 최종 용도를 이유로 수입관세의 면제 또는 감세를 위한 조건

□ 수입에 관한 관세채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세관신고서가 수리된 시점 또는 재수출 신고서가 수리된 때임[139]

○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관세채무는 다음의 어느 한 시점에 발생함[140]

- 불이행 시에 관세채무가 발생하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때 또는 그 이행이 중단된 때
- 물품을 관세절차에 두기 위한 조건 또는 물품의 최종 용도에 따라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세를 위한 조건이 사실상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관세절차에 두기 위한 세관신고서가 수리된 때

□ 한편 수출에 관한 관세채무는 수출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수출절차 또는 역외가공절차에 두는 경우 발생함[141]

○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함[142]

-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 수출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받아 EU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되도록 허가받은 조건

---

138) UCC 제79조 제1항
139) UCC 제77조 제2항, 제78조 제2항
140) UCC 제79조 제2항
141) UCC 제81조 제1항
142) UCC 제82조 제1항

□ 수출에 관한 관세채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세관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임[143]

○ 불이행에 따른 수출에 관한 관세채무는 다음의 시점에 발생함[144]

- 물품이 세관신고 없이 관세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반출된 때
- 수출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받아 EU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하도록 허가받은 물품이 목적지와 다른 장소에 도착한 때
- 목적지와 다른 장소에 도착한 때를 세관당국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물품에 대한 감면세율 적용을 허가하는 조건이 충족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기한이 만료되는 때

□ 관세채무는 세관신고서 또는 재수출신고서가 제출된 장소에서 발생함[145]

○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관세채무는 해당 채무를 발생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 관세채무 발생 장소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물품이 소재하고 있다고 세관당국이 판단한 장소에서 해당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봄
- 세관당국이 관세채무가 다른 EU 회원국에서 발생하고 그 금액이 1만유로 이하라고 확정한 경우 그 판단이 행해진 회원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 관세채무가 복수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관세채무가 최초로 발생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146]

○ 이 경우 세관당국이 복수의 장소에서 관세채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143) UCC 제81조 제2항
144) UCC 제82조 제2항
145) UCC 제87조 제1항, 제4항
146) UCC 제87조 제3항

나. 관세의 과세요건

1) 과세물건

□ UCC는 비EU 물품이 수입되거나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관세채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여 비EU 수입물품, 수출물품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함

○ 비EU 물품이란 다음의 EU 물품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EU 물품으로서의 관세상의 지위를 상실한 물품을 말함[147]

- EU 관세영역에서 완전하게 취득되고 관세영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포함하지 않은 물품
- EU 관세영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EU 관세영역에 반입되어 자유유통을 위해 시장으로 반출된 물품
- EU 관세영역에서 상기의 물품으로부터 취득 또는 제조된 물품

□ 그러나 UCC 제56조는 납세의무를 지는 수입관세 및 수출관세는 공통관세율표(Common Customs Tariff)에 근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즉 관세채무는 공통관세율표에서 관련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함

□ 공통관세율표에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나열되어 있으므로[148] 실질적으로 관세채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발생함

○ 따라서 관세의 과세물건은 자유유통 또는 일시적 반입을 하고자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입 비EU 물품임

□ 한편 수입 또는 수출에 관한 관세채무는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의 대상물품과 관련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음[149]

---

147) UCC 제5조 제24호

148)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 ANNEX PART I Section I B. General rules concerning duties

○ 다만 관세채무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않음
- EU 관세영역으로의 위조통화의 위법한 반입
- EU 관세영역으로의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의 반입, 다만, 의료 및 과학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권한있는 기관이 감독하는 경우는 제외함

○ 또한 관세범칙에 대해 적용되는 벌칙과 관련해 관세채무의 존재가 벌칙을 결정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경우 관세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봄

2) 납세의무자

□ 채무자란 관세채무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자 즉 납세의무자를 말함[150]

○ UCC는 수입관세와 수출관세와 관련한 관세채무자에 대해 정하고 있지만, 관세채무는 관세율표에 따라 수입관세와 관련하여 발생하므로 수입관세 채무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임

□ 수입에 관한 관세채무는 세관신고자 또는 재수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채무자가 됨[151]

○ 세관신고 또는 재수출 신고가 간접적 대행으로 이루어진 경우 대행자를 통해 신고를 행한 본인도 채무자가 됨
- 간접적 대행이란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지만 다른 자의 계산으로 행동하는 대리인이 이행하는 것을 말함[152]

○ 세관신고서가 수입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보에 따라 작성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그 정보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당연히 알아야 할 자도 채무자가 됨

---

149) UCC 제83조
150) UCC 제5조 제19호
151) UCC 제77조 제3항, 제78조 제3항
152) UCC 제18조 제1항

□ 수입에 관한 관세채무가 불이행에 따라 발생된 경우 다음의 자가 채무자가 됨[153]

○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받은 자

○ 관세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았던 자 또는 당연히 알아야 했던 자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위해 행위한 자 또는 의무의 불이행을 토래한 행위에 가담한 자

○ 문제가 된 물품을 취득 또는 보유한 자로서 해당 물품을 취득 또는 수령한 시점에 관세법령에 따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자

○ 물품을 관세절차에 두기 위한 조건 또는 물품의 최종 용도에 따라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감세 받는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자

- 이러한 절차에 대해 세관신고서가 작성되고, 물품에 대한 조건과 관련한 관세법령에 따라 제공된 정보로 인해 수입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징수되지 않은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자로서 그 정보가 허위인 것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자도 채무자가 됨

□ 수출에 관한 관세채무는 세관신고자가 채무자가 되며 간접적인 대행의 경우 대리자를 통해 세관신고를 행한 자도 채무자가 됨[154]

○ 세관신고서가 수출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보에 따라 작성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그 정보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당연히 알아야 할 자도 채무자가 됨

□ 수출에 대한 관세채무가 불이행에 의해 발생된 경우 다음의 자가 채무자가 됨[155]

○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EU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다음의 자를 채무자로 함

-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
- 관련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자로서 해당 의

153) UCC 제79조 제3항
154) UCC 제81조 제3항
155) UCC 제81조 제3항 내지 제4항

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
- 의무의 불이행을 초래한 행위에 가담한 자로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자

○ 수출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이 허가받은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도착한 경우 반출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자

□ 다수의 자가 단일한 관세채무에 대응하는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그 다수의 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짐[156]

○ 다수의 자가 연대해 납부책임을 가지는 채무는 발생한 관세채무 전액임

3) 관세율

□ 납세의무가 있는 수입관세 및 수출관세는 공통관세율표(Common Customs Tariff; CCT)에 근거해야 함[157]

○ EU는 내부시장을 확립한 이후로 회원국 간 물품을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EU 밖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CCT를 적용함[158]

□ 이에 따라 관세율표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동일하며, 다만 각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159]

○ 관세율표는 품목분류표와 결합하여 각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표시함

4) 과세표준

---

156) UCC 제84조
157) UCC 제56조 제1항
158)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_en, 검색일자: 2023. 8. 1.
159)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_en, 검색일자: 2023. 8. 1.

□ 공통관세율표에서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은 종가세임[160]

○ 종가세란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종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가격임[161]

□ 공통관세율표에는 대부분의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백분율로 표시되어 있으며, 원칙적인 EU의 관세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이라 할 수 있음

○ 물품의 무역에 관해 공통관세율표를 적용하기 위해 물품의 과세가격은 UCC에 따라 결정됨[162]

□ 반면 예외적인 경우 중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음

○ 이 경우 과세중량은 다음과 같이 간주됨[163]

- 총중량이란 물품과 모든 포장재 및 포장용기의 총중량을 말함
- 순중량 또는 단순히 무게를 언급하는 경우는 포장재 및 포장용기를 제외한 물품 자체의 중량을 말함

5) 과세환율

□ 물품의 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소가 EU 회원국의 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적용되는 환율을 공표해야 함[164]

○ 관세평가를 위한 통화의 환산에는 다음의 환율이 사용됨[165]

- 통화가 유로인 회원국의 경우 유럽중앙은행에서 발표한 환율

---

160)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 ANNEX PART I Section I B. General rules concerning duties
161) 관세청 관세용어 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97, 검색일자: 2023. 8. 1.
162) UCC 제69조
163)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 ANNEX PART I Section I B. General rules concerning duties
164) UCC 제53조 제1항 제a호
165) UCC IA 제146조 제1항

- 유로가 아닌 통화를 사용하는 회원국의 경우 관할 국가당국이 공시한 환율 또는 국가당국이 환율을 공표할 목적으로 지정한 민간은행이 공시한 환율

□ 관세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환율은 매월 둘째 수요일 공시되는 환율로 하며,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적용됨[166]

○ 해당 일에 환율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에 공시된 환율이 적용됨

○ 규정에 따른 환율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관련 회원국이 관세평가를 위한 환율을 결정해야 하며, 이 환율은 해당 회원국의 통화가치를 가능한 한 유사하게 반영해야 함

2. 관세채무의 확정

가. 관세채무의 통지

□ 관세채무는 관세채무가 발생한 장소 또는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장소에서 규정하는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통지돼야 함[167]

○ 납부돼야 할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 금액이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경우 세관당국에 의한 물품의 반출을 관세채무의 통지로 갈음함

□ 관세채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관세채무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음[168]

○ 관세채무를 발생시킨 행위가 형사재판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세채무 통지기간은 내국법에 따라 최소 5년, 최대 10년까지 연장돼야 함

□ 관세채무 통지기간 및 연장된 기간은 다음의 각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정지됨[169]

---

166) UCC IA 제146조 제2항 내지 제4항
167) UCC 제102조
168) UCC 제103조 제1항 내지 제2항
169) UCC 제103조 제3항 내지 제4항

○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이 제기된 시점부터 이의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정지됨
○ 세관당국이 관세채무를 통지하고자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한 경우 그 시점부터 채무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기간 동안 정지됨
○ 세관당국의 착오로 환급 또는 경감했던 관세채무가 복구된 경우 환급 또는 경감 신청이 제출된 날부터 그 결정이 내려진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됨

나. 관세채무의 납부

□ 채무자는 통지된 관세채무에 상응하는 수입관세액 또는 수출관세액을 세관당국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170]
○ 그 기한은 관세채무의 통지 후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연기돼야 함
- 과오납된 세액 등에 대해 경감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물품이 몰수되고 폐기되거나 국가를 상대로 위부된 경우
-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에 관한 관세채무의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납부는 국내 법령에 따라 현금 또는 대변 잔고의 조정을 포함하여 유사한 변제효과가 있는 현금 외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함[171]
○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부여된 납부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수 있음

□ 납부기한까지 관세채무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수입관세액 또는 수출관세액에 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가 가산됨[172]
○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EU 회원국의 이자율은 유럽중앙은행이 납부기한이 속하

170) UCC 제108조
171) UCC 제109조
172) UCC 제114조 제1항

는 달의 첫날에 주요 차환대출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2%를 더함

○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EU 회원국의 이자율은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첫날에 주요 차환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에 2%를 더함

-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EU 회원국의 이자율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첫날에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상응하는 이자율에 2%를 더함

□ 관세채무가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거나 관세채무의 통지가 통관 이후의 관리에 따른 경우 체납이자는 관세채무가 발생한 날부터 통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산됨[173]

○ 이 경우 이자율 또한 세관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관세채무와 동일하게 적용함

□ 세관당국은 채무자의 상황을 평가한 결과 체납이자를 적용하면 채무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지 않을 수 있음[174]

○ 또한 세관당국은 개별징수 절차의 금액이 10유로 미만인 경우 체납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서는 안 됨

다. 관세채무의 환급 및 경감

□ 수입관세액 또는 수출관세액이 납부되고 그에 대한 세관신고가 무효가 된 경우 해당 관세액은 환급(repayment)돼야 함[175]

○ 세관당국은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각 경우 수리된 세관신고를 무효화 할 수 있음[176]

- 해당 물품이 다른 세관절차에 놓인 경우

---

173) UCC 제114조 제2항
174) UCC 제114조 제3항
175) UCC 제116조 제1항
176) UCC 제174조

- 특별한 상황의 결과 물품을 기존의 세관절차에 두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

□ 또한 수입관세액 또는 수출관세액이 과오납된 경우 등 해당 관세액은 환급 또는 경감(remission)돼야 함[177]

○ 관세액이 환급 또는 경감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수입관세액 또는 수출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 물품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 관할당국의 오류가 있는 경우
-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애초에 통지된 관세채무 금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관세채무를 통지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 통지된 경우 해당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는 환급 또는 경감됨[178]

○ 관세채무를 통지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은 다음의 경우를 말함[179]

- 관세채무를 통지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나 관세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관세채무를 통지한다는 결정이 이후 재판소에 의해 무효화된 규정을 기초로 한 경우
- 관세법령에 의해 세관당국이 관세채무의 통지를 면제받은 경우

□ 과다하게 부과된 관세액의 환급 또는 경감이 관세할당 등 특혜적인 관세조치에 따라 면세 또는 감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180]

○ 환급 또는 경감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관세할당의 경우 그 물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환급 또는 경감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그 밖의 경우 통상적인 세율이 재설정되지 않았을 것

---

177) UCC 제116조 제1항
178) UCC 제117조 제1항
179) UCC 제102조 제1항 제c호 내지 제d호
180) UCC 제117조 제2항

□ 관세채무 통지가 물품의 통관 시점에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수입자가 거부한 물품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 그 수입세액은 환급 또는 경감함[181]

○ 하자가 있는 물품에는 통관되기 전에 손상을 입은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

□ 하자 또는 계약 상이 물품은 물품이 사용되지 않았고 EU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돼야 환급 또는 경감할 수 있음[182]

○ 다만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또는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최초 사용된 경우는 제외함

○ 세관당국은 관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을 EU 관세영역에서 반출하는 대신 역내가공·역외통과·보세창고보관·관세자유구역 절차에 두는 것을 허가해야 함[183]

□ 다음의 경우 하자 또는 계약 상이 물품에 대한 환급 또는 경감이 허용될 수 없음[184]

○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통관 전에 물품이 특별한 검사절차를 거쳤으며,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조건과 상이하다는 사실이 해당 검사절차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

○ 물품이 관세채무가 발생하는 세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물품의 하자가 계약조건, 특히 가격을 정할 때 고려된 경우

○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조건과 상이하다는 사실이 확정된 후 해당 물품을 신청인이 매도한 경우

□ 관할당국의 오류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낮은 관세채무 상당액이 통지된 경우 수입관세액 또는 수출관세액은 환급되거나 경감돼야 함[185]

○ 이 경우 ① 채무자가 해당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합당해야 하며, ② 채무자는 선의로 행동했어야 함

□ 물품에 대한 특혜조치가 EU 관세영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의 당국이 관련된 행정협

181) UCC 제118조 제1항
182) UCC 제118조 제2항
183) UCC 제118조 제4항
184) UCC 제118조 제3항
185) UCC 제119조 제1항

력 제도에 근거하여 부여된 경우 해당 당국의 증명서 발급이 부정확한 것으로 증명되면 이는 채무자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합당한 오류에 해당함[186]

○ 다만 부정확한 발급이 수출자가 제공한 부정확한 설명에 기인한 경우 이는 오류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발급 당국이 특혜대우를 받을 자격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던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됨

□ 채무자가 문제가 되는 무역거래 기간 중 특정대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한다면 그 채무자는 선의로 행동한 것으로 봄[187]

○ 집행위원회가 EU 공보에 수혜 국가 또는 지역에 의한 특혜조정의 적용에 대해 이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음을 공시한 경우 채무자는 선의를 원용할 수 없음

□ 특혜적인 관세조치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세 또는 감세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세관당국의 오류에 기인한 경우 면세 또는 감세를 위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환급 또는 경감될 수 있음[188]

○ 면세 또는 감세를 위한 조건이란 관세할당은 물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밖의 조치는 통상적인 세율이 재설정되지 않아야 함을 말함

□ 관세채무가 채무자에게 귀책시킬 수 있는 기망행위나 명백한 부주의가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과세형평을 고려해 수입관세액 또는 수출관세액을 환급 또는 경감해야 함[189]

○ 채무자가 동일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예외적인 입장에 있고, 그러한 상황이 없다면 채무자가 관세액 징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186) UCC 제119조 제3항
187) UCC 제119조 제3항
188) UCC 제119조 제2항
189) UCC 제120조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

□ 관세액의 환급 또는 경감 신청서는 다음 각 기간 내에 세관당국에 제출돼야 함[190]
  ○ 과다 납부, 권한있는 기관의 오류, 형평에 의한 경우 관세채무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
  ○ 하자가 있거나 계약조건과 상이한 물품은 관세채무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
  ○ 세관신고서가 무효가 된 경우 무효 적용규칙에 특정된 기간 내

□ 환급의 경우 관계되는 세관당국은 이자를 적용할 수 없지만 환급 결정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함[191]
  ○ 이자는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이자율은 체납 이자율의 규정에 따름
  ○ 다만 환급의 미이행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3. 관세채무의 소멸

□ 수입관세액 또는 수출관세액에 관한 관세채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해 소멸함[192]
  ○ 관세채무 통지기한이 만료하여 채무자가 더 이상 관세채무의 통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입관세액 또는 수출관세액의 납부
  ○ 다수의 자가 관세채무에 상응하는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는 경우로서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제가 인정된 자에 한하여 관세채무가 소멸함
  ○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세관절차를 위해 신고된 물품에 대한

190) UCC 제121조
191) UCC 제116조 제6항
192) UCC 제124조

세관신고가 무효로 된 경우

○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 몰수되거나 압류와 동시에 또는 압류 이후에 몰수된 경우

- EU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의 존재가 벌칙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경우 관세채무는 관세범칙에 대해 적용하는 벌칙의 목적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 세관의 감독하에 폐기되거나 국가를 상대방으로 위부된 경우

○ 물품의 성질, 예견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불가항력이나 세관당국의 지시에 따라 물품이 완전히 폐기되거나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어 물품이 소멸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관세채무가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 관세채무를 초래한 불이행이 관련된 세관절차의 적정한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망행위의 의도가 없을 것
- 물품의 상황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형식적 사항이 실행될 것

○ 최종 용도에 따라 면세 또는 감세된 수입관세를 납부한 후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물품이 세관당국의 허가를 받아 수출된 경우

○ 관세채무가 비원산지 물품이 재수출되어 발생했을 때 특혜관세가 승인되기 위해 이행되어야 하는 형식적 사항들이 취소된 경우

○ 수입관세에 관한 관세채무가 불이행에 의해 발생했을 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물품이 사용되거나 소비되지 않았다는 사실, 물품이 EU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됐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세관당국에게 충분히 제공된 경우
- 기망행위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기망행위의 시도와 관련이 없는 자, 포탈행위에 대한 대응에 일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채무가 소멸함)

Ⅲ. 관세평가제도

1. 관세평가

□ 관세평가란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에 백분율로 계산되는 관세채무 산정의 기준이 됨[193]

○ 즉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표준인 종가세 물품에 대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임[194]

□ 관세평가의 원칙은 WTO의 「WTO 관세평가협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WTO 회원국은 이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

○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세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1947년 마련한 GATT 제7조의 관세평가의 일반원칙이 WTO 출범 후 「WTO 관세평가협정」으로 발효됨[195]

□ EU는 UCC, UCC IA, UCC DA에 「WTO 관세평가협정」의 관세평가 원칙을 명시함[196]

○ 공통관세율 및 비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UCC에 따라 결정됨[197]

---

193)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valuation_en, 검색일자: 2023. 8. 3.
194) 신상화·박지우·이재선,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_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p. 73
195) 김기인(2007), pp. 289~290(신상회 외 2인(2017), p. 74에서 재인용)
196)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valuation_en, 검색일자: 2023. 8. 3.

○ EU 회원국의 세관당국은 각각의 영역에서 이러한 공통규칙을 시행할 권한이 있음

2.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 과세가격의 기초는 거래가격에 따라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며,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2차적인 관세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198]

○ 2차적인 관세가격 결정방법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역산가격, 산정가격, 대체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임

○ 최초로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만, 신고자의 요청 시 역산가격보다 산정가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

가. 거래가격

□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 기준은 거래가격임[199]

○ 거래가격은 ① EU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될 때 ②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③ 필요한 경우 조정한 가격임

1) 거래가격의 적용 요건

□ 거래가격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됨[200]

○ 구매자가 물품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 다음을 제외한 제한이 없어야 함

- 법령 또는 EU의 공공기관에서 부과하거나 요청하는 제한

197) UCC 제69조
198) UCC 제74조 제1항
199) UCC 제70조 제1항
200) UCC 제70조 제3항

- 물품이 재판매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의 제한
-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 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함
- 다만 그 가치가 결정될 수 있는 조건이나 사정의 대상인 경우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간주됨[201]
- 그러나 그 조건이나 사정이 마케팅 활동을 포함한 간접지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구매자의 활동, 가산요소와 관련되지 않아야 함

○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구매자에 의한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아야 함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아니거나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2) 거래가격의 구성

□ EU의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직전에 발생한 판매를 기준으로 세관신고 수리 시 결정됨[202]

○ 물품이 EU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전이 아니라 특별절차에 따라 임시보관 또는 장치되는 동안 EU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경우 해당 판매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됨
- 다만, 내부경유, 최종사용, 역외가공의 절차에 따른 임시보관 또는 장치의 경우는 제외함

가) 실제지급가격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해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하는 총금액을 말함[203]

---

201) UCC IA 제133조
202) UCC IA 제128조

○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다음의 자에게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신용장 또는 유가증권을 통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급을 포함함[204]
- 판매자
-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제3자
- 판매자와 특수관계인 제3자
-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 구매자, 구매자의 특수관계인이 행하거나 구매인의 계산으로 행해지는 마케팅을 포함한 활동은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간주하지 않음[205]
- 다만 UCC 제71조에 따른 가산조정의 대상이 되는 활동을 포함하지 않음

□ 세관신고가 수리되는 때에 판매계약에 할인의 적용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거래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됨[206]

○ 세관신고 수리 시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조기지급할인이 고려됨

○ 그러나 세관신고 수리 후 계약의 변경으로 발생한 할인은 고려되지 않음

□ 판매자가 구매자의 이익을 위해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때에 이를 고려할 수 있음[207]

○ 가격의 조정을 거래가격 결정 시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함
- 자유유통을 위한 통관에 대한 세관신고 수리 시 물품에 결함이 있음
- 판매자가 세관신고 수리 이전에 체결된 계약상의 의무 또는 물품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결함에 대한 보상을 위해 조정을 함

나) 가산요소

---

203) UCC 제70조 제2항
204) UCC IA 제129조 제1항
205) UCC IA 제129조 제2항
206) UCC IA 제130조
207) UCC IA 제132조

□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해야 할 가격에는 다음을 가산해야 함[208]

○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산함

-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함
- 통관목적상 물품과 하나로 취급되는 컨테이너 비용
- 인건비 및 재료비를 포함한 포장비용

○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다음의 물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유사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다이스, 금형 및 유사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비되는 재료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공예·디자인·계획·고안으로 EU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된 것

○ 구매자가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물품의 후속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

○ 물품이 EU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장소까지의 다음의 비용

- 수입물품의 운송비 및 보험료
-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적재 및 취급비용

다) 공제요소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해야 할 가격에 대한 가산은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해야 함[209]

---

208) UCC 제71조 제1항

○ UCC 제7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해야 할 가격에 가산하지 않음

□ 반면 다음의 금액은 거래가격을 기초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음[210]

○ 수입물품이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후 운송비 및 보험료

○ 산업 플랜트, 기계 또는 장비와 같은 수입물품이 EU 관세영역에 반입된 후 수행되는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또는 기술적 지원 비용

○ 구매자가 체결한 금융약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이자로 구매자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한 비용

- 물품이 실제지급가격이라고 신고된 가격으로 실제로 판매되어야 함
- 청구된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금융이 제공된 때에 널리 통용되는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함

○ EU에서 수입물품을 재생산하는 권리에 대한 요금

○ 구매수수료

○ 수입관세 및 물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이유로 EU에서 부과되는 기타 요금

○ 물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조건이 아닌 지급인 유통 또는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비용

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EU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평가대상 물품과 거의 같은 시간에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관세가격을 결정함[211]

○ 이 경우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한 상업수준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사용해야 함[212]

---

209) UCC 제71조 제2항 내지 제3항
210) UCC 제72조
211) UCC 제74조 제2항
212) UCC IA 제141조 제1항

- 이러한 판매가 없는 경우 관세가격은 다른 상업적 수준 또는 다른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결정됨

○ 거리 및 운송수단의 차이로 인한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과 수입물품 간의 비용 및 요금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213]

□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됨[214]

○ 다른 사람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은 평가대상 물품을 생산한 자가 생산한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고려됨

다. 역산가격(공제가격)[215]

□ 수입물품,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이 EU 관세영역 내에서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판매되는 단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관세가격을 결정함[216]

○ 해당 단가는 가장 많은 양으로 수입물품,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상태로 EU에서 평가대상 물품의 수입 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가격임[217]

○ 이러한 단가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이 평가대상물품의 수입 후 90일 이내 가장 빠른 시간에 EU에서 수입된 상태로 판매되는 가격이 사용됨[218]

□ 수입한 상태로 판매되는 단가가 없는 경우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물품이 추가 작업 또는 가공 후 EU 관세영역에서 판매되는 단가를 사용함[219]

○ 이 경우 추가 작업 또는 가공으로 추가된 가치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함

---

213) UCC IA 제141조 제2항
214) UCC IA 제141조 제3항
215) 제3편 Ⅱ-2-가
216) UCC 제74조 제2항
217) UCC IA 제142조 제1항
218) UCC IA 제142조 제2항
219) UCC IA 제142조 제3항

□ 다음의 판매는 EU 영역 내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음[220]

○ 수입 후 최초가 아닌 상업적 수준의 물품판매

○ 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

○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자에 대한 판매

○ 단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량의 판매

□ EU 영역 내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 해당 단가에서 다음의 비용을 공제해야 함[221]

○ 수입물품과 동류·동종의 물품의 EU 관세영역에서 판매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급했거나 하기로 동의한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 EU의 관세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운송비 및 보험료, 관련 비용

○ 수입관세 및 물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이유로 EU의 관세영역에서 부과되는 기타 요금

라. 산정가격

□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 및 제작 또는 기타 가공의 비용 또는 가격에 일정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222]

○ 수출국의 생산자가 평가대상 물품의 동종·동류의 물품을 EU의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때에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함

- 일반경비에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및 제작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직·간접적인 수출물품의 생산·판매비용을 포함함[223]

220) UCC IA 제142조 제4항
221) UCC IA 제142조 제5항
222) UCC 제74조 제2항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및 제작비용에는 컨테이너, 포장비용과 평가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수입자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생산지원비용이 포함됨[224]

○ 다만, EU에서 수행된 기술·설계·공예·디자인·계획·고안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포함됨

□ 또한 생산비용에는 물품의 경제적인 생성·추가·실질적인 향상을 위해 발생한 모든 지출이 포함됨[225]

○ 해당 비용에는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유사물품,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다이스, 금형 및 유사물품의 비용도 포함됨

마. 대체가격(Fallback)[226]

□ 관세 과세가격은 대체방법에 따라 EU의 관세영역에서 사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일반원칙과 조항으로 구성된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음[227]

○ 일반원칙과 조항은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GATT 협정」, UCC 제3장의 원칙과 조항을 말함

□ 대체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상위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228]

○ 이 경우 가능한 한 최대한 이전에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가격을 기반으로 해야 함

□ 상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유연한 적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229]

---

223) UCC IA 제143조 제2항
224) UCC IA 제143조 제2항
225) UCC IA 제143조 제3항
226) 제3편 Ⅱ-2-나
227) UCC 제74조 제3항
228) UCC IA 제144조 제1항

○ 이 경우 관세 과세가격은 다음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아야 함

- EU 관세영역 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EU 관세영역 내에서의 판매가격
- 2개의 대체가격 중 높은 값이 사용되는 시스템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
- 수출국 국내시장의 물품가격
- UCC 제74조 제2항 (d)에 따라 결정된 동질·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산정가격 외의 생산비용
-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 최소 관세 과세가격
- 임의적 또는 가상가격

229) UCC IA 제144조 제2항

Ⅳ.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1. 품목분류

가. 품목분류 체계

□ 세계관세기구(WCO)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 협약)」을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관세, 무역, 통계 등에 사용되는 품목분류표를 마련함[230]

○ 「HS 협약」 체약국뿐 아니라 기타 행정부, 국제조직, 국제 상업 및 산업체는 국가관세를 설정하거나 경제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HS 분류표를 적용함

□ EU와 회원국은 「HS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HS 품목분류표를 통합한 EU 공통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 CN)를 사용함[231]

○ HS 품목분류표는 6단위 부호로 식별되고 정해진 규칙을 기반으로 한 법적·논리적 구조에 따라 배열된 5,000여 개의 품목으로 구성됨

○ CN은 여기에 추가하여 8단위 세분류와 공동체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주석을 포함함

□ 따라서 EU는 품목분류를 공통관세율 또는 비관세조치의 적용을 위해 물품이 분류되는 CN의 소호 또는 세분류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함[232]

---

230)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harmonized-system-general-information_en, 검색일자: 2023. 8. 3.

231)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harmonized-system-general-information_en, 검색일자: 2023. 8. 3.

○ 품목분류는 특정 소호에 대한 관세율을 정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세조치나 다음과 같은 통관절차를 위해 필요함[233]
- 수입 또는 수출 허가의 신청
- 수입 또는 수집 제한사항의 확인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수출환급 또는 이와 유사한 청구
- 소비세 과세 여부의 결정
- 부가가치세 감면의 확인

□ CN은 공통관세율과 EU 정책을 위해 물품을 취급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도구로써 서두 조항, 품목분류표, 부속서로 구성됨[234]
○ 서두 조항은 품목분류를 위한 통칙, 관세 또는 분류표 관련 규칙을 포함함
○ 품목분류표는 품명, 부·류주와 CN의 세분류와 관련된 추가 주 및 주석, WTO 협정 관세율 및 EU 자체 관세율, 관세 적용을 위한 보조단위를 포함함
○ 품목분류표는 제97류까지 HS 품목분류표와 동일하지만 EU의 특별한 부호체계인 제98류 및 제99류가 추가됨
- 제98류에는 완전한 산업플랜트의 구성부품이 분류되며, 제99류는 특정 이사물품을 위한 CN코드임[235]
○ 부속서는 농업, 화학 등 관세 관련 부속서를 포함함

---

232) UCC 제57조
233)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classification-goods_en, 검색일자: 2023. 8. 3.
234)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combined-nomenclature_en, 검색일자: 2023. 8. 3.
235)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 ANNEX I Combined Nomenclature Part 2 Chapter 98, Chapter 99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BTI)

□ 수출입자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있다는 법적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236]

○ 관세율과 수출입 허가와 같은 수출입 관련 요건은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함

□ BTI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이 법적으로 설립된 회원국 또는 사전심사가 사용될 회원국의 권한있는 관세당국에 신청서와 첨부파일을 제출해야 함[237]

○ 신청서가 소관 회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에 제출된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회원국은 소관 회원국에게 신청서의 승인 7일 이내에 이를 통지해야 함[238]

□ BTI는 수입 또는 수출거래가 예정된 경우 신청해야 하며, 물품의 유형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239]

○ 품목분류와 관련 없는 사항만 차이점이 있고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물품들과 관련하여 하나의 신청을 해야 함[240]

□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물품의 사진, 견본을 포함한 물품의 자세한 사항을 제출해야 함[241]

○ BTI를 신청함으로써 신청인이 기밀정보를 제외한 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공개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242]

---

236)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ebti-european-binding-tariff-information_en, 검색일자: 2023. 8. 3.
237) UCC DA 제19조 제1항
238) UCC IA 제16조 제1항
239)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apply-bti-decision_en, 검색일자: 2023. 8. 3.
240) UCC IA 제16조 제2항
241)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apply-bti-decision_en, 검색일자: 2023. 8. 3.

□ 2019년 10월 1일 이후 BTI 신청을 포함하여 BTI와 관련된 경제적 주체와 관세당국의 모든 통신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짐[243]

○ BTI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정보, 신청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후속 사항의 교환 및 저장을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이 사용되어야 함[244]

- 관련 정보를 얻은 관세당국은 7일 이내에 전자적 시스템에 이를 제공해야 함

□ 경제적 주체는 회원국에 따라 EU 관세 무역거래자 포털(Trader Portal)[245] 또는 국가별 무역거래자 포털[246]에 BTI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247]

○ 국가별 무역거래자 포털을 제공하는 회원국의 경제적 주체 또는 해당 회원국에 BTI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제적 주체는 해당 국가의 포털에 접속해야 함

□ 관세당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의 승인요건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248]

○ 신청은 다음의 경우 승인될 수 없음[249]

- 동일한 물품에 대해 결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동일한 세관 또는 다른

---

242) UCC DA 제19조 제2항
243)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apply-bti-decision_en, 검색일자: 2023. 8. 3.
244) UCC IA 제21조 제1항
245) Central Uniform User Management and Digital Signature system(https://customs.ec.europa.eu/taxud/uumds/cas/uumds-wayf/wayf?loginRequestId=ECAS_LR-165658-jCzheIA7sxWIzzj4nhq3tJWzb2j6N7rXqHZ1JfCYKzMmut5JLBHzX4pBm7AwzTKpK5EOzroBXgBPZi2NvW0pIvszG-CiDsmZJBYJewbX9dvSaw04-LzQGknQt5jJHcUqugJBEi7SeohTdwjzbzqiwaR9JLtVLHtk4Y5zeSJ1QjzvcJnIzpqaKZluhLvaj4gIfoEUF2FB0&locale=en)
246) 크로아티아: https://e-carina.carina.hr/
프랑스: https://pro.douane.gouv.fr/
독일: www.zoll-portal.de
폴란드: https://puesc.gov.pl/web/puesc/e-wit
스페인: https://sede.agenciatributaria.gob.es/Sede/en_gb/procedimientoini/DD02.shtml
247)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apply-bti-decision_en, 검색일자: 2023. 8. 3.
248) UCC 제22조 제2항
249) UCC 제33조 제1항

세관에 신청을 하거나 이미 신청한 경우

- 신청이 BTI를 사용하거나 통관절차에 사용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없는 경우

○ 이러한 승인요건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그 검토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함[250]

□ 관세당국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을 승인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251]

○ 기한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인에게 연장기한과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연장된 결정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관세당국은 또한 신청인이 요건 및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한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결장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BTI 결정을 위한 신청 상태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 관세당국에 의해 공유되어야 함[252]

□ BTI 결정은 신청인이 결정을 수령하거나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3년 동안 결정에 명시된 물품과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물품의 신고에 적용됨[253]

○ BTI 결정은 효력 발생일 이후에 통관절차가 완료된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며[254] EU의 관세영역 전체에 거쳐서 유효함[255]

□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세당국은 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의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지 모니터링 해야 함[256]

○ 결정을 받은 자는 BTI 결정이 적용되는 물품의 통관절차가 이행될 때 BTI 결정의

---

250) UCC IA 제16조 제4항
251) UCC 제22조 제3항
252) UCC IA 제21조 제5항
253) UCC 제22조 제4항, 제33조 제3항 제4항
254) UCC 제33조 제2항
255) UCC 제26조
256) UCC 제23조

참조번호를 세관신고서에 기재해야 함[257]

○ 또한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 이후 계속되거나 결정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세당국에 알려야 함[258]

○ 집행위원회는 의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관세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BTI 사용 감시에 대한 결과를 회원국에게 전자적으로 공유해야 함[259]

□ BTI 결정은 신청인이 제공한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기초로 하는 경우 무효가 되며, 최초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무효화가 발효됨[260]

○ 결정이 무효화되는 경우 결정을 받은 자에게 통지되어야 함

□ 또한 BTI 결정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더 이상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효력이 정지되며, 효력정지는 소급되지 않음[261]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이나 조치가 적용되는 날부터 BTI 결정의 효력이 정지됨

- CN 또는 CN에 기반을 두거나 CN의 세분류를 제공하는 기타 분류표가 변경된 경우
- 집행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위한 조치를 채택한 경우

○ EU에서 규정이 채택되거나 협의가 체결되어 적용가능하게 되어 BTI 결정이 더 이상 관세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규정이나 협의의 적용일부터 효력이 정지됨

□ BTI 결정은 수정되지는 않지만, 결정을 위한 요건의 하나 이상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취소됨[262]

○ 다음에 따라 BTI 결정이 CN 또는 CN에 기반을 두거나 CN의 세분류를 제공하는

257) UCC IA 제20조
258) UCC 제23조
259) UCC IA 제21조 제3항
260) UCC 제27조, 제34조 제4항
261) UCC 제34조 제1조 내지 제3조
262) UCC 제28조, 제34조 제5항 내지 제7항

기타 분류표의 해설서와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경우 취소됨
- CN의 해설서의 변경
-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 WCO의 품목분류 결정 또는 품목분류 의견, HS 품목분류표 해설서의 변경

○ 또는 특정 BTI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집행위원회의 결정, 행정적 오류 등이 있는 경우 BTI 결정이 취소됨[263]

□ BTI 결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결정을 기반으로 하거나 해당 결정이 취소 등이 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264]

○ BTI의 연장 사용은 결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장 사용을 하고자 하는 BTI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이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한 관세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에는 연장된 기간 동안 사용될 물품의 양과 물품이 통관될 회원국이 기재되어야 함

○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당국은 필요한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
- 해당 통지에는 연장기간의 만료일과 연장기간 동안 통관될 물품의 양을 명시해야 함[265]

○ 연장기간이 부여된 BTI 결정의 사용은 통지에 명시된 물량에 도달하는 때에 중단되며, 집행위원회는 감시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즉시 통지해야 함[266]

□ 집행위원회는 BTI 결정이 부정확하고 통일되지 않은 경우 BTI 결정을 내리는 것을 유예한다고 관세당국에 통지해야 함[267]

---

263) UCC 제34조 11항;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validity-period-bti-decisions_en, 검색일자: 2023. 8. 3.
264) UCC 제34조 제9항
265) UCC IA 제22조
266) UCC IA 제22조
267) UCC 제34조 제9항; UCC IA 제23조

○ 집행위원회가 유예를 통지한 날부터 정확하고 통일된 품목분류가 보장될 때까지 BTI 결정은 발급되지 않음[268]
  - 정확하고 통일된 품목분류는 집행위원회가 통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EU 차원의 협의의 대상이 되어야 함
○ BTI 결정이 유예된 경우 BTI 결정기한은 집행위원회가 정확하고 통일된 품목분류가 보장된다고 통지하는 때까지 연장됨[269]
  - 결정의 연장기한은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
  - 그러나 BTI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석의 완료가 기간 내에 불가능한 경우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BTI 결정의 유예가 철회된 경우 집행위원회는 이를 즉시 관세당국에 통지해야 함[270]

2. 관세율

가. 관세율 수준

□ WTO에서는 HS 코드를 기준으로 농산물과 비농산물을 구분하여 각 국가별 평균 관세율을 산출하고 있음[271]
○ 농산물에는 동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품, 곡물 및 그 조제품, 설탕 및 과자류, 음료 및 담배, 면섬유 등이 포함됨
○ 비농산물에는 농산물을 제외한 수산물, 광물 및 금속제품, 석유 및 화학제품, 목제품, 직물 및 의류, 기계 및 전자기기, 수송기기 등이 분류됨

---

268) UCC IA 제23조
269) UCC DA 제20조
270) UCC 제34조 제9항; UCC IA 제23조
271)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p. 77

〈표 2-Ⅳ-1〉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1)]

농산물		비농산물	
구분	HS 코드	구분	HS 코드
동물제품	1류, 2류, 1601~02호	어류, 수산물	03류, 0508호, 0511.91호, 1504.10호, 1504.20호, 1603~05호, 2301.20호
낙농제품	0401~06호		
채소, 과일, 식물	0601~03호, 7류, 8류, 1105~06호, 1211호, 13류, 14류, 2001~08호	광물, 금속	25~27류, 31류, 3403호, 68~76류, 78~83류
커피, 차	0901~03호, 18류, 2101호	석유	2709~10호
곡물 그 조제품	0407~10호, 10류, 1101~04호, 1107~09호, 19류, 2102~06호, 2209호	화학제품	2705호, 28~30류, 32~34류, 3506~07호, 3601~04호, 37~39류
종자, 지방, 기름	1201~08호, 15류, 2304~06호, 3823호	목제품, 종이제품 등	44~49류, 9401~04호, 9619.00호
설탕, 과자	17류	섬유제품	3005.90호, 3306.20호, 3921.12~13호, 3921.90호, 4202.12호, 4202.22호, 4202.32호, 4202.92호, 50~60류, 63류, 6405.20호, 6406.10호, 6501~05호, 6601호, 7019.11~19호, 7019.40~59호, 8708.21호, 8804호, 9113.90호, 9404.90호, 9612.10호
음료, 담배	2009호, 2201~08호, 24류		
면섬유	5201~03호		
기타 농산물	0904~10호, 5류, 0604호, 1209~10호, 1212~14호, 1802호, 2301.10호, 2302~03호, 2307~09호, 2905.43~45호, 3301호, 3501~05호, 3809.10호, 3824.60호, 4101~03호, 4301호, 5101~03호, 5301~02호	의류	61~62류
		가죽, 신발 등	40~41류, 4201~05호, 4302~03호, 64류, 9605호
		비전기기계	7321~22호, 8류, 8508.60호, 8528.42호, 8528.52호, 8528.62호, 8608호, 8709호
		전기기계	8467.21~29호, 85류,
		운송장비	86류, 8701~08호, 8711~14호, 8716호, 8801~03호, 89류
		기타 제조품	2716호, 3406호, 3605~06호, 4206호, 46류, 6506~07호, 6602~03호, 67류, 6807호, 8304~05호, 8519~23호, 8710호, 8715호, 90~93류, 9405~06호, 95~97류

주: 1) 대표적인 류·호를 기재한 것으로 세부적인 호, 소호에 따라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2*, 2022, pp. 40~41

□ EU의 2021년 전체 품목의 평균 양허관세(Bound duty)[272]는 5.3%, MFN 실행관세는 5.2%로 양허관세보다 실행관세가 0.1% 정도 낮음

○ 우리나라의 경우 양허관세 18.3%, MFN 실행관세 13.6%로 차이가 4.7% 정도이며, 미국(3.3%, 3.4%), 일본(4.6%, 4.2%)은 그 차이가 1% 미만임

□ 양허관세는 농산물의 경우 12.6%, 비농산물은 4.1%로 농산물의 세율이 8.5% 정도 높았음

○ 농산물의 양허세율은 우리나라(64.9%), 일본(18.4%)보다 낮지만, 미국(4.5%)보다는 높은 수준임

○ 비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9.9%)보다는 낮지만, 미국(3.2%), 일본(2.5%)에 비해 높은 세율로 양허되었음

□ 2021년 농산물의 MFN 실행관세는 11.7%, 비농산물은 4.1%로 농산물은 양허관세보다 낮고 비농산물은 양허관세와 동일하여 세율 차는 양허관세보다 작음

○ 2021년 전체 품목의 평균 MFN 실행관세 5.2%는 미국(3.4%), 일본(4.2%)보다는 높고 우리나라(13.6%)보다 낮음

- 농산물은 우리나라(56.8%)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5.2%)보다 높음
- 비농산물은 우리나라(6.6%)보다 낮고, 미국(3.4%), 일본(2.5%)보다 높음

○ 2020년 평균 MFN 실행관세와 비교해보면 전체 품목은 5.1%에서 5.2%로 0.1% 증가하였으며, 농산물은 0.5% 증가, 비농산물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표 2-Ⅳ-2〉 EU 관세율 수준

(단위: %)

구분	기준		EU	우리나라	미국	일본
전체 품목	양허 관세	2020년	4.9	17.0	3.4	4.6
		2021년	5.3	18.3	3.3	4.6

27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부속서인 관세양허표에 의하여 적용되는 세율(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06*, 2007, p. 205 (신상화 외 2인(2017), p. 90에서 재인용))

〈표 2-Ⅳ-2〉의 계속

구분	기준		EU	우리나라	미국	일본
	MFN	2020년	5.1	13.6	6.4	4.4
		2021년	5.2	13.6	3.4	4.2
농산물	양허관세	2020년	11.6	61.5	4.8	17.8
		2021년	12.6	64.9	4.5	18.4
	MFN	2020년	11.2	56.8	5.1	15.8
		2021년	11.7	56.8	5.2	14.
비농산물	양허관세	2020년	3.9	9.8	3.2	2.5
		2021년	4.1	9.9	3.2	2.5
	MFN	2020년	4.1	6.6	3.1	2.5
		2021년	4.1	6.6	3.1	2.5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1*, 2021, p. 69, 109, 114, 185;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2*, 2022, p. 89, 109, 114, 189

□ 양허관세와 MFN 실행관세의 범위를 구간별로 나눈 후 각 구간에 적용되는 품목이 전체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볼 수 있음

○ 양허관세의 경우 미양허 품목을 제외한 품목 중 각 세율의 구간에 적용되는 품목의 비율을 나타냄[273]

□ EU는 농산물의 경우 양허관세와 MFN 실행관세 무관세, 비농산물의 경우 0~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농산물과 비농산물 모두 2020년 수입 중 무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 비율은 양허관세 기준 30.4%, MFN 실행관세 기준 31.7%이며, 비농산물은 각각 30%, 28.6%로 농산물의 무관세 품목 비중이 높음

○ 50%를 초과하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농산물은 4.2%(양허관세), 3.4%(MFN 실행관세)인 반면 비농산물은 50% 이하의 관세율만 적용되고 있음

273) WTO·ITC·UNCTAD(2020), p. 39 (신상화 외 2인(2017), p. 90에서 재인용)

〈표 2-Ⅳ-3〉 EU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

(단위: %)

구분		무관세	0% 초과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15% 이하	15% 초과 25% 이하	25%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농산물	양허관세	30.4	11.1	18.0	13.3	10.8	10.1	3.5	0.7
	2021년 MFN 실행관세	31.7	10.6	18.1	13.3	11.5	8.6	2.9	0.5
	2020년 수입[1)]	40.1	13.1	16.7	8.7	8.6	5.8	1.7	0
비농산물	양허관세	30.0	33.2	27.8	7.4	1.5	0.1	0	0
	2021년 MFN 실행관세	28.6	34.6	27.9	7.4	1.4	0.1	0	0
	2020년 수입[1)]	51.8	25.2	16.3	5.5	1.2	0	0	0

주: 1) 전체 수입 중 해당 구간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비중
자료: WTO·ITC·UNCTAD(2022), p. 89

□ 각 산업군별 품목을 세분화하여 관세율을 살펴보면 평균 양허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낙농제품(39.9%), 설탕, 과자(24.6%)이며, 비농산물은 어류, 수산물(12%), 의류(11.5%)임

○ 농산물의 경우 면섬유(100%)가, 비농산물에서는 목제품, 종이제품 등(85.8%)이 무세품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낙농제품, 설탕, 과자, 의류의 경우 무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없음

○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군은 농산물의 경우 기타 농산물(360%)이며, 비농산물은 어류, 수산물의 최고세율이 26%로 가장 높음

□ MFN 실행관세의 평균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낙농제품(39.5%), 설탕, 과자(24.3%)이며, 비농산물의 경우 어류, 수산물(11.5%), 의류(11.5%)임

○ 무세품의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군은 농산물의 경우 면섬유(100%)이며, 비농산물에서는 목제품, 종이제품 등(81.5%)으로 나타났음

- 낙농제품, 의류의 경우 무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없음

○ MFN 실행관세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포함된 품목군은 농산물의 경우 채소, 과일, 식물제품(160%), 비농산물의 경우 어류, 수산물(26%)임

〈표 2-Ⅳ-4〉 EU 산업별 관세율 수준

(단위: %)

품목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수입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1]	최고 세율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	최고 세율	비중[2]	무관세 비중[3]
동물제품	17.0	28.4	99	17.0	2384	99	0.3	1038
낙농제품	39.9	0.0	165	39.5	0.0	150	0.1	0.0
과실, 채소, 식물제품	118	19.7	160	10.9	19.8	160	2.0	15.5
커피, 차	5.9	27.1	16	5.9	27.1	16	1.0	63.4
곡물, 그 조제품	17.3	5.6	61	14.5	13.0	61	0.8	27.9
종자, 지방, 기름	5.7	48.1	110	5.7	48.3	110	1.7	68.1
설탕, 과자	24.6	0.0	117	24.3	11.8	117	0.1	9.6
음료, 담배	20.3	18.1	152	19.9	18.4	152	0.7	30.1
면섬유	0.0	100.0	0	0.0	100.0	0	0.0	100.0
기타 농산물	4.2	65.2	360	3.1	65.5	66	0.6	59.7
어류, 수산물	12.0	5.4	26	11.5	8.2	26	1.5	4.2
광물, 금속	1.9	50.4	12	2.0	49.9	12	13.7	63.9
석유제품	3.2	16.7	5	2.5	33.3	5	9.1	96.3
화학제품	4.6	21.7	7	4.5	22.8	13	14.4	50.0
목제품, 종이제품 등	0.7	85.8	12	0.9	81.5	11	2.6	83.3
섬유제품	6.5	2.1	12	6.5	2.1	12	3.6	1.7
의류	11.5	0.0	12	11.5	0..0	12	4.3	0.0
가죽, 신발 등	4.1	27.1	17	4.1	27.2	17	2.5	10.7
비전기기계	1.7	29.6	10	1.8	24.2	10	12.2	48.3
전기기계	1.9	42.1	14	2.1	33.3	14	15.0	65.6
운송장비	4.5	16.7	22	4.7	13.2	22	6.7	7.0
기타 제조품	2.0	36.6	10	2.1	33.6	10	7.1	64.0

주: 1) 해당 품목군의 전체 HS 6단위 중 무세인 HS 6단위의 비중
2) 전체 수입에서 해당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
3) 해당 품목군의 전체 수입 중 MFN 실행관세가 무세인 수입의 비중

자료: WTO·ITC·UNCTAD(2020), p. 69

나. 관세율표의 구성

□ 납세의무가 있는 수입관세 및 수출관세는 공통관세율표(CCT)에 근거하며, 관세율표란 성문화된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개념이자 법령의 모음임[274]

○ 공통관세율표는 다음의 것으로 구성됨[275]

- EU 집행위원회 규정(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관한 통일품목분류표(CN)
- 그 밖의 품목분류표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CN에 근거하고 있는 것 또는 CN을 보다 세분화 해 규정하고 있는 것, 물품의 무역에 관한 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특정 분야를 규율하는 EU 규정에 의해 확정된 것
- CN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상의 관세율 또는 통상의 자체 관세율
- EU가 EU 관세영역 외의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협정에 포함된 특혜관세상의 조치
- EU가 EU 관세영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채택한 특혜관세상의 조치
-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을 규정하는 자율적인 조치
- 관세율 또는 관세조치에서 정하는 틀에서 특정 물품의 성질 또는 그 최종 용도를 이유로 해당 물품에 대해 정해진 관세상의 유리한 취급
- 그 밖에 농업, 상업, 그 외의 EU 법령에 따라 정해진 관세상의 조치

□ EU는 이러한 관세율표와 관련한 품목분류표, 관세조치 등을 통합한 실행관세율표인 TARIC(EU Customs Tariff)을 운영하고 있음[276]

○ TARIC은 EU 관세, 상업 및 농업 법률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통합하는 다국어 데

---

274)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_en, 검색일자: 2023. 8. 4.
275) UCC 제56조 제2항
276)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eu-customs-tariff-taric_en, 검색일자: 2023. 8. 4.

이터베이스임277)

○ TARIC은 관세조치, 농업조치, 무역 방어 수단, 수출입 금지 및 제한, 수출입 시 상품 이동 감시와 같은 조치를 포함함

[그림 2-Ⅳ-1] EU Combined Nomenclature 예시

CHAPTER 23

RESIDUES AND WASTE FROM THE FOOD INDUSTRIES; PREPARED ANIMAL FODDER

Note

1. Heading 2309 includes products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btained by processing vegetable or animal materials to such an extent that they have lost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material, other than vegetable waste, vegetable residues and by-products of such processing.

Subheading note

1. For the purposes of subheading 2306 41, the expression 'low erucic acid rape or colza seeds' means seeds as defined in subheading note 1 to Chapter 12.

Additional notes

1. *Subheadings 2303 10 11 and 2303 10 19 include only residues from the manufacture of starch from maize and do not cover blends of such residues with products derived from other plants or products derived from maize otherwise than in the course of the production of starch by the wet process.*

CN code	Description	Conventional rate of duty (%)	Supplementary unit
1	2	3	4
2301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eat or meat offal,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unfit for human consumption; greaves:**		
2301 10 00	–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eat or meat offal; greaves**	Free	—

자료: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 ANNEX I Combined Nomenclature Part 2

277) TARIC: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V. 관세감면제도 및 특별절차

1. 관세감면제도

가. EU 물품에 대한 감면

1) 재수입된 물품

□ 본래 EU 물품으로서 EU 관세영역에서 수출됐던 비EU 물품이 3년 이내에 재반입되고 자유유통을 위한 신고를 한 경우 관련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관세가 면제됨[278]

○ 재반입된 물품이 이전에 EU 관세영역에서 수출된 물품의 일부인 경우에도 적용됨

□ 재반입된 물품이 EU 관세영역에서 수출되기 전에 특별한 최종 용도에 따라 수입관세를 면세 또는 감세 받아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됐던 경우 면세는 동일한 최종 용도를 위해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279]

○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물품의 최종 용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수입세액은 물품이 최초로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됐을 때 징수된 만큼 감액됨

- 최초로 징수된 금액이 재반입된 물품의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될 때 징수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분을 환급하지 않음

□ 수입관세의 면세는 물품이 수출된 상태로 재반입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280]

---

278) UCC 제203조 제1항
279) UCC 제203조 제3항

○ 물품이 EU 관세영역에서 수출된 후 물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외관을 변경하거나 수리·복원하는 것 외의 처리나 취급을 받지 않은 경우 수출된 상태로 봄[281]

○ 물품이 EU 관세영역에서 수출된 후 물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외관을 변경하거나 수리·복원하는 것 외의 처리나 취급을 받은 경우 해당 처리나 취급으로 물품의 용도에 부적합해진 것이 명백하다면 수출된 상태라고 봄[282]

○ 물품이 역외가공절차하에 있다면 수입관세가 부과됐을 처리나 취급이 EU 관세영역에서 수출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출된 상태로 봄[283]

2) 어획물 및 그 밖의 해산물

□ EU 관세영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포획된 특정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품이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되는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함[284]

○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특정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말함

- EU 회원국에서만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포획된 것
- 상기의 물품으로부터 취득한 생산품으로서 EU 회원국에서만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한 공장선에서 가공된 것

□ 이러한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는 그 조건이 충족됐음을 입증돼야 함[285]

○ 이는 어업일지, 상륙 신고서, 환적 신고서 및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를 작성하여 증명해야 함[286]

---

280) UCC 제203조 제5항
281) UCC DA 제158조 제1항
282) UCC DA 제158조 제2항
283) UCC DA 제158조 제3항
284) UCC 제208조 제1항
285) UCC 제208조 제2항

나. 개인물품에 대한 감면

1) 이사 물품

□ 제3국에서 EU 관세영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연인이 수입하는 개인재산은 수입관세가 면제됨[287]

○ 개인재산이란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재산을 말하며, 가정용품, 자전거 및 오토바이, 개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캠핑 카라반, 유람선 및 개인 비행기를 포함함[288]

○ 다만 다음의 것은 면세되지 않음[289]

- 알코올 제품
- 담배 또는 담배제품
- 상업적인 운송수단
- 실용 또는 교양 분야의 휴대용 도구가 아닌 사업 또는 직업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개인재산은 다음의 것으로 제한됨[290]

○ 비소모품의 경우 제3국의 거주지에서 이주한 날의 최소 6개월 전부터 이전의 거주지에서 소유하고 사용한 것

○ 새로운 거주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EU 관세영역 밖에 거주지가 있었어야 함[291]

○ 다만 관할당국은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EU 관세영역 밖에서 거주하려는

---

286) UCC IA 제213조
287)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3조
288)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2조 제1항 c
289)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6조
290)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4조
291)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5조

의도가 명백한 자에게 예외적으로 면세를 허용할 수 있음

□ 면세는 당사자가 EU 관세영역 내에 거주지를 설정한 후 12개월 내에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개인재산에 대하여 적용됨[292]

○ 개인재산은 12개월 내에 여러 개의 탁송품으로 분리되어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될 수 있음

○ 다만 당사자가 EU 관세영역 내에 거주지를 설정하기 전에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개인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면제가 허용될 수 있음[293]

- 이 경우 거주지를 6개월 이내에 설정할 것을 약정하고, 관할당국이 결정한 형태와 금액의 담보를 첨부해야 함
- 개인재산의 소유 및 사용기간은 개인재산이 반입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함

□ 면세를 적용받은 개인재산은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이후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당국에 통지하지 않고 대여, 담보 제공,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음[294]

○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여, 담보 제공, 임대 또는 양도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수입관세는 대여 등을 행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함

- 세율은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재산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함

□ 직업상의 의무로 인해 제3국을 떠나면서 동시에 EU의 관세영역에 거주지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당국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전하는 개인재산의 면세 반입을 허용할 수 있음[295]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해석에 따라 조건을 적용하여 면세가 허용됨

- 재산의 소유 및 사용기간, 반입기간은 재산이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날부터 계산됨
- 재산의 대여 등 금지기간은 당사자가 EU 관세영역에 거주지를 설정한 날부터 계산됨

---

292)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7조
293)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9조
294)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8조
295)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0조

○ 관할당국이 정한 기간 내에 EU 관세영역에 거주지를 설정하겠다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면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2) 결혼 물품

□ 결혼하는 때에 제3국에서 EU 관세영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가 소유하는 혼수 및 가정용품은 신품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296]

○ 또한 당사자가 제3국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받는 결혼 시 관습적으로 제공하는 1,000유로 이하의 선물도 수입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

○ 다만 알코올 제품, 담배 및 담배제품에는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297]

□ 이러한 면세는 다음의 자에게만 허용됨[298]

○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EU 관세영역 밖에 거주지를 둔 자, 다만,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EU 관세영역 밖에서 거주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자에게도 허용될 수 있음

○ 결혼의 증거를 제시하는 자

□ 또한 면세는 결혼예정일 2개월 이전 및 결혼식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만 허용됨[299]

○ 해당 물품은 이 기간 내에 여러 개의 탁송품으로 분리되어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될 수 있음

○ 결혼예정일 2개월 이전에 통관되는 물품은 관할당국이 정하는 형태와 금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함

□ 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자유유통을 위한 통관이 승인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할 때

296)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2조
297)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4조
298)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3조
299)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5조

까지 관할당국에 통지하지 않고 대여, 담보 제공,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음[300]

○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여, 담보 제공, 임대 또는 양도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수입관세는 대여 등을 행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함

- 세율은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재산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함

3) 상속 물품

□ EU 관세영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 또는 비영리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개인재산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01]

○ 해당 개인재산은 고인의 재산을 구성하는 모든 개인재산을 의미함

○ 다만 다음의 경우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302]

- 알코올 제품
- 담배 및 담배제품
- 상업적인 운송수단
- 고인의 사업 또는 직업 활동에 요구되는 실용 또는 교양분야의 휴대용 도구가 아닌 사업 또는 직업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원자재, 완성품 또는 반제품의 재고
- 일반적인 가족의 수요를 초과하는 가축 및 농산물의 재고

□ 면세는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날, 즉 상속의 최종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된 개인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됨[303]

○ 해당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당국이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여러 개의 탁송품으로 분리되어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될 수 있음

---

300)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6조
301)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7조, 제20조
302)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8조
303)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9조

4) 학생용품

□ 학업을 목적으로 EU 관세영역에 머무르는 학생이 학업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의류, 교육자료, 학생방의 가구와 같은 가정용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04]

○ 학생이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정에 풀타임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함

○ 의류란 속옷, 가정용 린넨 및 의복을 의미하며 새것인지 여부를 불문함

○ 교육자료란 학생이 학습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건 및 도구를 말하며, 계산기, 타자기를 포함함

○ 이러한 면제는 학년당 최소 1회 적용됨

5) 개인발송 물품

□ 제3국의 개인이 EU 관세영역에 거주하는 다른 개인에게 송부한 탁송품에 포함된 물품은 상업적 성격이 없는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됨[305]

○ 면제는 헬골란트섬에서 발송된 탁송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상업적 성격이 없는 경우란 수입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비정기적임
- 수취인 및 그의 가족의 개인적인 사용만을 위한 물품을 포함하며, 성격이나 수량에 상업적 의도가 반영되지 않음
- 어떠한 종류의 지급 없이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송부함

□ 탁송품당 45유로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개별 품목의 가격은 분할할 수 없음[306]

○ 2개 이상의 품목을 포함한 탁송품 가격이 45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구분되어 수입됐을 때 면제가 허용되는 품목에 대해 해당 금액까지 면제가 허용됨

---

304)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21조
305)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25조
306)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26조

□ 다음의 품목은 각 품목에 주어진 수량에 한하여 면제가 적용되며, 해당 품목의 가치는 탁송품의 가격 산출 시 포함됨[307]

○ 담배제품
- 담배 50개비
- 시가릴로 25개(개당 최대 3g)
- 시가 10개
- 흡연용 담배 50g
- 이러한 서로 다른 제품이 비례적으로 구성된 것

○ 알코올 및 알코올성 음료
- 알코올 도수가 22%를 초과하는 증류주; 변성하지 않은 에틸 알코올이 80% 이상인 것 1ℓ
- 알코올 도수가 22%를 초과하지 않는 증류주, 주정, 와인, 알코올 베이스, 타피아, 사케, 이와 유사한 음료; 스파클링 와인; 리큐르 와인 1ℓ 또는 이러한 서로 다른 제품이 비례적으로 구성된 것
- 스틸 와인 2ℓ

○ 화장품
- 향수 50g
- 화장수 0.25ℓ

6)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

□ 제3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화물에 포함된 물품이 관련 규정[308]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수입관세 또한 면제됨[309]

○ 비상업적 성격의 여행자 개인 수하물로 수입되는 물품은 금액 또는 수량 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면제해야 함[310]

---

307)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27조
308) Council Directive 2007/74/EC
309)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41조

□ 개인 수하물이란 여행자가 세관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전체 수하물을 말하며, 추후 제시되더라도 출발 당시 수하물로 등록됐다고 증명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함[311]

○ 운송수단이 자동차인 경우 표준탱크에 포함된 연료와 휴대용 용기에 포함된 10ℓ를 초과하지 않는 연료 외의 것은 개인 수하물로 간주하지 않음

□ 비상업적 성격의 여행자 수하물이란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개인용 또는 가족용 물품이나 선물용 상품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312]

○ 물품의 성격이나 수량이 상업적인 이유로 수입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야 함

□ 회원국은 수량 제한을 받지 않는 물품의 총 가치가 1인당 300유로, 항공 및 해상 여행자의 경우 1인당 43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면제해야 함[313]

○ 회원국은 15세 미만의 여행자에 대하여 금액 한도를 하향할 수 있으나 최소 150유로보다 낮출 수 없음

○ 금액 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별 품목의 가치를 분할할 수 없음

○ 일시적으로 수입되거나 일시적 수출 후 재수입되는 개인 수하물의 가치 또는 여행자의 개인적 필요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의 가치는 금액 한도에 고려되지 않음

□ 회원국은 담배 및 담배제품, 알코올 및 알코올성 음료에 대해 수량 한도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면제하며, 17세 미만의 자에게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314]

○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상한 또는 하한 수량 제한에 따라 담배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면제해야 하며, 항공여행자가 아닌 여행자에게 하한 수량 제한을 적용할 수 있음

- 담배 200개비 또는 40개비

---

310) Council Directive 2007/74/EC 제4조
311) Council Directive 2007/74/EC 제5조
312) Council Directive 2007/74/EC 제6조
313) Council Directive 2007/74/EC 제7조
314) Council Directive 2007/74/EC 제8조 내지 제10조

- 시가릴로 100개 또는 20개(최대 무게 3g)
- 시가 50개 또는 10개
- 흡연담배 250g 또는 52g

○ 회원국은 다음 수량 제한에 따라 알코올 및 알코올성 음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면제해야 함

- 알코올 도수가 22%를 초과하는 증류주;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이 80% 이상인 것 1ℓ
- 알코올 도수가 22%를 초과하지 않는 알코올성 음료 2ℓ
- 스틸 와인 4ℓ
- 맥주 16ℓ

○ 담배 및 담배제품, 스틸 와인 및 맥주를 제외한 알코올 및 알코올성 음료는 종류별로 조합될 수 있으나 각 허용량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7) 소액물품[315]

□ 제3국에서 EU의 수하인에게 직접 발송되는 소액물품으로 구성된 탁송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16]

○ 소액물품이란 탁송품당 포함하고 있는 가치가 총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말함

○ 다만 다음의 물품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317]

- 알코올성 제품
- 향수 및 화장수

---

315) 2023년 5월 17일 발표된 관세동맹 개혁안에 포함된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의 개정 제안에는 소액물품 면제 규정을 삭제하도록 예고함(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EC) No 2658/87 as regards the introduction of a simplified tariff treatment for the distance sales of goods and Regulation (EC) No 1186/2009 as regards the elimination of the customs duty relief threshold 제2조 Article 2 "Chapter V of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is deleted.")

316)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23조

317)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24조

- 담배 및 담배제품

다. 사업용 물품에 대한 감면

1) 사업장 이전 물품

□ 제3국에서의 사업활동을 중단하고 EU 관세영역에서 유사한 활동을 하기 위해 이전하는 기업의 자본재 및 기타 장비는 수입관세가 면제됨[318]

○ 기업은 생산 또는 서비스 산업의 독립적인 경제 단위를 의미하며, 이전된 기업이 농업지주인 경우 가축도 수입관세가 면제됨

○ 이러한 면제규정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자 및 비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이 이러한 활동을 제3국에서 EU 관세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반입하는 자본재 및 기타 장비에도 준용됨[319]

□ 면제가 적용되는 자본재 및 기타 장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됨[320]

○ 기업이 활동을 이전한 제3국에서 운영이 중단되기 전 최소 12개월 동안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어야 함

○ 이전 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적합해야 함

○ 기업이 제3국에서 활동을 중단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돼야 함[321]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자본재 및 기타 장비에는 면제가 허용되지 않음

○ 새로운 활동에 대한 설정 없이 EU 관세영역에 설립된 기업과 병합·흡수할 목적으

318)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28조
319)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34조
320)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29조
321)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32조

로 EU 관세영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면제가 허용되지 않음[322]

○ 다음의 자본재 및 기타 장비의 경우 면제가 허용되지 않음[323]

- 생산 또는 서비스 산업의 도구의 성격이 아닌 운송수단
- 사람의 소비 또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공급품
- 연료, 원자재·완제품·반제품의 재고
- 판매자 소유의 가축

□ 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자유유통을 위한 통관이 승인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당국에 통지하지 않고 대여, 담보 제공,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음[324]

○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여, 담보 제공, 임대 또는 양도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수입관세는 대여 등을 행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함

- 세율은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재산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함

2) 농산물 및 수산물

□ EU 관세영역에 인접한 제3국의 토지, 호수 또는 수로에서 EU의 농부·어부 등이 수행한 농업·목축업·양봉·원예 및 임업, 어업·양어·수렵활동의 제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25]

○ 다만 목축제품의 경우 EU에서 유래했거나 EU에서 자유유통 된 동물에서 파생된 것에 한함

□ 면제는 수확 또는 생산 후 일반적인 처리 외의 다른 처리를 거치지 않은 물품으로 제한됨[326]

○ 농업생산자·어업종사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EU의 관세영역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면제가 허용됨[327]

---

322)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30조
323)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31조
324)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33조
325)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35조, 제38조
326)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36조

3) 농업용 물품

□ EU 관세영역에 인접한 제3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생산자가 해당 토지에서 사용하기 위한 토양 및 농작물 처리용 종자·비료·제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28]

○ 면제는 토지 운영 목적에 필요한 수량의 종자·비료·제품으로 제한되며, 농업생산자 또는 대리인이 EU 관세영역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에 적용됨[329]

라. 특정용도의 물품에 대한 감면

1)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자료

□ 다음 〈표 2-V-1〉에 열거된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자료는 수하인이 누구든지 해당 자료의 용도와 관계없이 수입관세가 면제됨[330]

○ 다만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시청각자료의 경우 UN 또는 UN 전문기구에서 생산한 물품인 경우에 한함

〈표 2-V-1〉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자료

구분	CN code	품명
책, 간행물, 서류	3705	영화용 필름을 제외한 노광하여 현상한 사진 플레이트와 필름
	ex[1)] 3705.90-10	책, 어린이용 그림·그리기·색칠 책, 학교 연습장, 낱말퍼즐 책, 신문, 정기간행물, 비상업적 성격 및 삽화가 인쇄된 문서·보고서, 책 제작을 위한 인쇄된 페이지 및 복제 교정본의 마이크로필름
	ex 3705.10-00	책 제작을 위한 복제 필름
	4903.00-00	어린이용 그림·그리기·색칠 책
	4905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327)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37조
328)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39조
329)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40조
330)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42조

〈표 2-Ⅴ-1〉의 계속

구분	CN code	품명
	ex 4905.99-00	지질학·동물학·식물학·광물학·고생물학·고고학·민족학·기상학·기후학 및 지구 물리학과 같은 과학 분야의 지도, 차트, 도표
	ex 4906.00-00	건축·산업 또는 공학적 설계도와 도안 및 이들의 복제품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와 이와 유사한 것
	ex 4911.10-90	EU 영역 밖에 설립된 출판사 또는 서점에서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서적·간행물의 카탈로그 교육적·과학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영화·녹음·시청각 자료의 카탈로그 사적 관심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대중이 EU 영역 밖으로 여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것을 포함한 관광 및 여행 포스터·간행물·소책자·가이드북·시간표·팸플릿 및 이와 유사한 간행물(도해 여부와 상관없다) 무료 배포를 위한 서지 정보 자료 기타 무역 광고자료, 상업적 카탈로그 등
	4911.99-00	책의 제작에 사용되는 삽화·인쇄된 페이지·복제 교정본 및 이들의 축소 복사본 책, 어린이용 그림·그리기·색칠 책, 학교 연습장, 낱말퍼즐 책, 신문, 정기간행물, 비상업적 성격 및 삽화가 인쇄된 문서·보고서, 책 제작을 위한 인쇄된 페이지 및 복제 교정본의 축소 복사본 대중이 EU 영역 밖에서 공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간행물 및 이들의 축소 복사본 기상 및 지구 물리학 도표
	9023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ex 9023.00-80	지질학·동물학·식물학·광물학·고생물학·고고학·민족학·기상학·기후학 및 지구 물리학과 같은 과학 분야에 대한 사항이 양각된 지도, 차트
시청각 자료[2]	3704.00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ex 3704.00-10	플레이트 및 필름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성격의 영화 필름, 포지티브
	ex 3705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성격의 것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표 2-V-1〉의 계속

구분	CN code	품명
	3706.10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
	ex 3706.10-99	기타 포지티브 수입 당시 현재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을 묘사하는 뉴스릴로 복제의 목적으로 각 주제에 대해 최대 2개의 사본이 수입된 것(사운드 트랙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 뉴스릴 필름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보관용 필름 자료(사운드 트랙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적합한 오락 영화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성격의 기타 영화
	3706.90	기타 포지티브
	ex 3706.90-51 ex 3706.90-91 ex 3706.90-99	수입 당시 현재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을 묘사하는 뉴스릴로 복제의 목적으로 각 주제에 대해 최대 2개의 사본이 수입된 것(사운드 트랙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 뉴스릴 필름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보관용 필름 자료(사운드 트랙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적합한 오락 영화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성격의 기타 영화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ex 4911.99-00	컴퓨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성격의 정보 및 서류 서비스의 마이크로카드 및 기타 정보저장매체 오직 시연용·교육용으로 고안된 벽보
	ex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와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성격의 것
	ex 9023.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오직 시연용·교육용으로 고안된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성격의 패턴, 모형 및 벽보 분자구조, 수학공식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목업 또는 시각화 자료
	기타	레이저 프로젝션용 홀로그램 멀티미디어 키트 프로그래밍 된 지침을 위한 자료 및 해당 인쇄자료가 포함된 키트 형태의 자료

주: 1) 해당 코드 품목 중 품명에 해당하는 물품만 면제됨
2) UN 또는 UN 전문기구에서 생산한 물품인 경우에 한함
자료: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ANNEX I

□ 다음 〈표 2-V-2〉에 열거된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자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됨[331]

○ 공공 교육·과학·문화 시설 또는 조직을 위한 것

○ 다음 〈표 2-V-2〉의 4열의 각 항목에 대해 지정된 범주의 시설 또는 조직을 위한 것으로 면세로 해당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

〈표 2-V-2〉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시설·조직에서 수입하는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자료

구분	CN code	품명	수혜 시설 또는 조직
시청각 자료	3704.00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회원국의 관할당국이 해당 물품의 면세를 승인한 방송 및 텔레비전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협회, 기관
	ex[1] 3704.00-10	플레이트 및 필름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성격의 영화 필름, 포지티브	
	ex 3705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성격의 것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6.10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	
	ex 3706.10-99	기타 포지티브 수입 당시 현재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을 묘사하는 뉴스릴로 복제의 목적으로 각 주제에 대해 최대 2개의 사본이 수입된 것(사운드 트랙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 뉴스릴 필름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보관용 필름 자료(사운드 트랙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적합한 오락 영화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성격의 기타 영화	

331)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43조

〈표 2-V-2〉의 계속

구분	CN code	품명	수혜 시설 또는 조직
	3706.90	기타 포지티브	
	ex 3706.90-51 ex 3706.90-91 ex 3706.90-99	수입 당시 현재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을 묘사하는 뉴스릴로 복제의 목적으로 각 주제에 대해 최대 2개의 사본이 수입된 것(사운드 트랙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 뉴스릴 필름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보관용 필름 자료(사운드 트랙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적합한 오락 영화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성격의 기타 영화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ex 4911.99-00	컴퓨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성격의 정보 및 서류 서비스의 마이크로카드 및 기타 정보저장매체 오직 시연용·교육용으로 고안된 벽보	
	ex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와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성격의 것	
	ex 9023.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오직 시연용·교육용으로 고안된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성격의 패턴, 모형 및 벽보 분자구조, 수학공식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목업 또는 시각화 자료	
	기타	레이저 프로젝션용 홀로그램 멀티미디어 키트 프로그래밍 된 지침을 위한 자료 및 해당 인쇄자료가 포함된 키트 형태의 자료	
수집가의 작품 및 예술작품으로 교육적·과학적·문화적 특성을 가진 것	기타	판매용이 아닌 수집가의 작품 및 예술 작품	회원국의 관할 당국이 해당 물품의 면세를 승인한 갤러리, 박물관, 기타 기관

주: 1) 해당 코드 품목 중 품명에 해당하는 물품만 면제됨
자료: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ANNEX Ⅱ

□ 〈표 2-V-2〉에 포함되지 않은 과학 기기 및 장치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수입되는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됨[332]

○ 과학적 기기 및 장치란 객관적인 기술적 특성 및 얻을 수 있는 결과로 인하여 주로 또는 독점적으로 과학적 활동에 적합한 모든 기기 및 장치를 말함

○ 비상업적 목적의 수입이란 비영리 과학 연구 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과학 기기 및 장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됨

□ 이러한 과학 기기 및 장치에 대한 면제는 다음 중 하나를 위한 것으로 제한됨

○ 주로 교육 또는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공공시설 및 주로 교육 또는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공공시설의 부서

○ 주로 교육 또는 과학 연구에 종사하고 해당 물품을 면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승인받은 사설 시설

□ 또한 이러한 과학 기기 및 장치와 관련된 다음의 물품의 경우 면제가 적용됨[333]

○ 과학 기기 및 장치에 특별히 적합한 예비부품, 구성요소, 부속품, 다만 이들은 해당 기기 또는 장치와 동시에 수입되어야 하며, 나중에 수입되는 경우 해당 기기 또는 장치를 위한 것임이 식별돼야 함

- 이전에 면제가 인정된 기기 및 장치가 예비부품 등에 대한 면제가 요청되는 때에도 여전히 과학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 예비부품 등에 대한 면제가 요청되는 때에 기기 및 장치가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 과학 기기 및 장치의 유지, 점검, 교정, 수리에 사용되는 도구, 다만 이들은 해당 기기 또는 장치와 동시에 수입되어야 하며, 나중에 수입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기기 또는 장치를 위한 것임이 식별돼야 함

- 이전에 면제가 인정된 기기 및 장치가 도구에 대한 면제가 요청되는 때에도 여전

332)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44조, 제46조
333)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45조

히 과학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 도구에 대한 면제가 요청되는 때에 기기 및 장치가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 수입관세가 면제된 과학 기기 및 장치는 관할당국에 사전 통지 없이 대여, 임대, 양도할 수 없음[334]
○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자료 또는 과학 기기 및 장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에 물품을 대여, 임대, 양도한 경우 해당 기관 등이 면제의 목적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면제는 지속됨
○ 그 외의 경우 수입관세는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기기 등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대여 등을 행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됨

□ 교육적·과학적·문화적 자료 또는 과학 기기 및 장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이 면제자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당국에 통지해야 함[335]
○ 이러한 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은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기기 등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조건 충족 등이 중단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함

□ EU 외부에 기반을 둔 과학 연구 시설 또는 조직이나 이들의 대리인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장비는 수입관세가 면제됨[336]
○ 장비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제가 허용됨
- 국제적인 과학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과학 협력 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시설 등의 구성원 또는 대표의 동의에 따라 EU에 기반을 두고 회원국의 관할당국이 승인한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
- EU의 관세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EU 외부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재산으로

334)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48조
335)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49조
336)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51조

남아 있는 것

○ 장비란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장치, 기계 및 이들의 예비부품을 포함한 부속품, 이들의 유지·점검·교정·수리를 위해 고안된 도구를 말함

○ 비영리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간주함

□ 수입관세가 면제된 장비는 관할당국에 사전 통지 없이 대여, 임대, 양도할 수 없음[337]

○ 장비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에 물품을 대여, 임대,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이 면제의 목적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면제는 지속됨

○ 그 외의 경우 수입관세는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장비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대여 등을 행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됨

□ 장비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이 면제자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당국에 통지해야 함[338]

○ 이러한 시설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은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장비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조건 충족 등이 중단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함

2) 실험실용 동물, 생물학적·화학적 물질

□ 실험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동물,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생물학적·화학적 물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39]

○ 이러한 면제는 다음 중 하나에서 사용되는 동물, 생물학적·화학적 물질로 제한됨

- 주로 교육 또는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공공시설 및 주로 교육 또는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공공시설의 부서

---

337)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52조 제1항 내지 제2항
338)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52조 제3항 내지 제4항
339)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53조

- 주로 교육 또는 과학 연구에 종사하고 해당 물품을 면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승인받은 사설 시설

○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 물질은 EU 관세영역에서 동일한 생산을 할 수 없고 특이성 또는 순도 때문에 주로 또는 오직 과학 연구에 적합한 것에 한함

3) 의약품

□ 인체 기원의 치료물질, 혈액형·조직형 시약과 이들의 운송에 필수적인 특수포장 및 탁송품에 포함될 수 있는 사용에 필요한 용제·부속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40]

○ 인체 기원의 치료물질이란 인혈 및 그 파생물(전혈, 건조 혈장, 알부민 및 혈장 단백질, 면역 글로불린, 피브리노겐의 고정용액)을 말함

○ 혈액형 시약은 혈행형 분류 및 혈액 부적합성 감지에 사용되는 인간, 동물, 식물 또는 기타 기원의 모든 시약을 말함

○ 조직형 시약은 인체 조직 유형 결정에 사용되는 인간, 동물, 식물, 또는 기타 기원의 모든 시약을 말함

□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표준물질의 견본을 포함한 탁송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41]

○ 이 경우 탁송품을 면세로 수령할 수 있도록 관할당국이 승인한 수하인에게 발송되어야 함

□ EU 관세영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제3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또는 동물을 위한 인간 또는 수의학용 의약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42]

○ 다만 EU 관세영역에서 체류하는 동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면제가 허용됨

---

340)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54조, 제56조
341)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59조
342)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60조

4) 의약용 기기 및 장치

□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는 제품은 다음의 것으로 제한됨[343]

○ 비상업적 의료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것

○ 제3의 출발국에서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한 증명서가 첨부된 것

○ 식별할 수 있는 특수 라벨이 부착된 용기에 담긴 것

□ 자선단체나 개인이 보건당국,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병원부서 또는 의료연구기관에 기부한 의료 연구, 진단, 치료를 위한 기기 및 장치는 수입관세가 면제됨[344]

○ 보건당국 등은 해당 기기 및 장치를 자선단체가 제공한 자금이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구매해야 함

○ 또한 해당 기기 및 장치의 기증에 기증자의 상업적 의도가 있어도 되며, 기증자는 기기 및 장치의 제조자와 관련이 없어야 함

□ 또한 이러한 기기 및 장치와 관련된 다음의 물품의 경우 면제가 적용됨[345]

○ 기기 및 장치에 특별히 적합한 예비부품, 구성요소, 부속품, 다만 이들은 해당 기기 또는 장치와 동시에 수입되어야 하며, 나중에 수입되는 경우 해당 기기 또는 장치를 위한 것임이 식별돼야 함

○ 기기 및 장치의 유지, 점검, 교정, 수리에 사용되는 도구, 다만 이들은 해당 기기 또는 장치와 동시에 수입되어야 하며, 나중에 수입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기기 또는 장치를 위한 것임이 식별돼야 함

□ 수입관세가 면제된 기기 및 장치는 관할당국에 사전 통지 없이 대여, 임대, 양도할

343)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55조
344)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57조 제1항
345)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57조 제2항

수 없음[346]

○ 기기 및 장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에 물품을 대여, 임대, 양도한 경우 해당 기관 등이 면제의 목적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는 한 면제는 지속됨

○ 그 외의 경우 수입관세는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기기 등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대여 등을 행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됨

□ 기기 및 장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이 면제자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당국에 통지해야 함[347]

○ 이러한 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은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기기 등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조건 충족 등이 중단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함

5) 자선물품, 장애인용 물품

가) 자선물품

□ 다음의 물품은 남용 또는 경쟁에서 중대한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한 수입관세가 면제됨[348]

○ 저소득자에게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 관할당국이 승인한 자선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수입한 기본 생필품

○ EU 관세영역 밖에서 설립된 개인 또는 조직이 관할당국이 승인한 자선단체 또는 국가기관에 상업적인 의도 없이 무료로 송부하는 모든 물품으로 저소득자를 위한 자선행사에서 기금모금에 사용되는 것

○ EU 관세영역 밖에서 설립된 개인 또는 조직이 관할당국이 승인한 자선단체 또는 국가기관에 상업적인 의도 없이 무료로 송부하는 장비 및 사무용품으로 운영사의 필요를

346)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58조
347)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58조
348)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61조

위하거나 자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 다만 다음의 경우 면제가 허용되지 않음[349]
- 알코올성 제품
- 담배 및 담배제품
- 커피 및 차
- 구급차 외의 자동차

□ 면제를 받은 단체는 해당 물품이나 장비를 관할당국에 사전통지 없이 대여, 임대, 양도할 수 없음[350]

○ 다만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에 물품 또는 장비를 대여, 임대, 양도한 경우 면제의 목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한 면제는 유지됨

○ 그 외의 경우 수입관세는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물품 등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대여 등을 행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됨

□ 물품 또는 장비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면제자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당국에 통지해야 함[351]

○ 이러한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은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기기 등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조건 충족 등이 중단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함

나) 장애인용 물품

□ 다음 〈표 2-V-3〉에 열거된 시각장애인의 교육·과학·문화 발전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52]

---

349)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62조
350)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64조
351)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65조
352)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66조

〈표 2-V-3〉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시작장애인용 물품

CN code	품명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와 이와 유사한 것
ex[1] 4911.10-90	시각장애인 및 부분 실명자를 위해 양각한 것
ex 4911.91-00	시각장애인 및 부분 실명자를 위해 양각한 그림, 고안 및 사진
ex 4911.99-00	기타 시각장애인 및 부분 실명자를 위해 양각한 것

주: 1) 해당 코드 품목 중 품명에 해당하는 물품만 면제됨
자료: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ANNEX Ⅲ

□ 다음 〈표 2-V-4〉에 열거된 시각장애인의 교육·과학·문화 발전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가 수입한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됨[353]

○ 자가 사용을 위한 시각장애인 본인

○ 해당 물품의 면세를 받기 위해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시각장애인의 교육 또는 지원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조직

〈표 2-V-4〉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자가 수입하는 시각장애인용 물품

CN code	품명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종이와 판지
4802.5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ex[1] 4802.55	롤 모양으로서 중량이 40g/㎡ 이상 150g/㎡ 이하인 것 - 점자종이
ex 4802.56	시트모양으로서 중량이 40g/㎡ 이상 150g/㎡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이하이며, 다른 한 변은 297㎜ 이하인 것 - 점자종이
ex 4802.57-00	그 밖의 것으로서 중량이 40g/㎡ 이상 150g/㎡ 이하인 것 - 점자종이

353)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67조 제1항

〈표 2-Ⅴ-4〉의 계속

CN code	품명
ex 4802.58	중량이 150g/㎡를 초과하는 것 - 점자종이
4802.6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 4802.61	롤 모양의 것
ex 4802.61-80	기타 - 점자종이
ex 4802.62-00	시트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이하이며, 다른 한 변은 297㎜ 이하인 것 - 점자종이
ex 4802.69-00	기타 - 점자종이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ex 4805.91-00	중량이 150g/㎡ 이하인 것 - 점자종이
ex 4805.92-00	중량이 150g/㎡ 초과 225g/㎡ 미만인 것 - 점자종이
ex 4805.93	중량이 225g/㎡ 이상인 것
ex 4805.93-80	기타 - 점자 종이
4823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90	기타 종이와 판지(쓰기, 그리기 또는 기타 그래픽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ex 4823.90-40	점자 종이
ex 6602.00-00	지팡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 시각장애인 및 부분 실명자를 위한 하얀 지팡이
ex 8469[2)]	타자기와 워드프로세싱머신 - 시각장애인 및 부분 실명자를 위해 설계된 것
ex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기록 자료의 생산을 위한 장비

〈표 2-V-4〉의 계속

CN code	품명
ex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 시각장애인 및 부분 실명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레코드 플레이어 및 카세트 플레이어
ex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와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시각장애인용 레코드 점자 및 시각장애인용 레코드를 생산하기 위한 자기식 테이프 및 카세트
9013[2)]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ex 9013.80	기타 기기, 장치 및 기구 - 시각장애인 및 부분 실명자를 위한 텔레비전 확대기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1.90	기타
ex 9021.90-90	시각장애인 및 부분 실명자를 위한 전자 방향지시기 및 장애물 탐지기 시각장애인 및 부분 실명자를 위한 텔레비전 확대기 시각장애인 및 부분 실명자를 위한 전자 판독기
9023.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ex 9023.00-80	시각장애인 및 부분 실명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교육 보조장치 및 기구
ex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케이스가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 아닌 점자 시계
9504[2)]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4.90	기타
ex 9504.90-90	시각장애인 및 부분 실명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테이블게임 및 부속품
기타	시각장애인 및 부분 실명자의 교육, 과학 또는 문화 발전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모든 물품

주: 1) 해당 코드 품목 중 품명에 해당하는 물품만 면제됨
2) HS 2012 기준
자료: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ANNEX Ⅳ

□ 시각장애인 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의 교육·고용·사회 발전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물품은 다음 어느 하나의 자가 수입한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됨[354]

○ 자가 사용을 위한 장애인 본인

○ 해당 물품의 면세를 받기 위해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장애인의 교육 또는 지원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조직

□ 면제가 허용되는 시각 또는 기타 장애인용 물품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예비부품, 구성요소, 부속품과 유지보수·점검·교정·수리에 사용되는 도구를 포함함[355]

○ 이러한 예비부품 등, 도구는 해당 물품과 동시에 수입되어야 하며 나중에 수입되는 경우 해당 물품용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함

□ 면제가 허용되는 자가 수입하는 장애인용 물품은 관할당국에 사전통지 없이 대여,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음[356]

○ 다만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기관·단체에 물품을 대여, 임대 또는 양도한 경우 면제의 목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한 면제는 유지됨

○ 그 외의 경우 수입관세는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물품 등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대여 등을 행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됨

□ 면제가 허용되는 기관·조직이 수입한 물품은 비영리목적으로 돌보는 시각 또는 기타 장애인에게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여,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음[357]

○ 다만 이러한 조건 외에 관할당국에 먼저 통지하지 않는 한 대여,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음

□ 면제가 허용되는 기관·조직이 면제자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목적 외의

---

354)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68조 제1항
355)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67조 제2항, 제68조 제2항
356)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71조
357)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72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당국에 통지해야 함[358]

○ 이러한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은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물품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조건 충족 등이 중단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함

다) 재해구호 물품

□ 관할당국이 승인한 자선단체, 국가기관 또는 재해구호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됨[359]

○ 하나 이상의 회원국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피해자에게 무료로 배포하거나 관련 기관의 자산으로 유지하면서 재해의 피해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

- 다만 재해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면제는 허용되지 않음[360]

□ 면제의 승인은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긴급절차에 따라 관련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361]

○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통지가 있을 때까지 재해의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관세를 지불하겠다는 수입단체의 약속에 따라 수입관세 부과 유예를 승인할 수 있음

□ 면제를 받은 단체는 관할당국에 사전통지 없이 면제물품을 대여,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음[362]

○ 다만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에 물품을 대여, 임대 또는 양도한 경우 면제의 목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한 면제는 유지됨

○ 그 외의 경우 수입관세는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물품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대여 등을 행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됨

---

358)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73조
359)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74조
360)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75조
361)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76조
362)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78조

□ 자선단체 등의 자산으로 유지하면서 무료로 제공된 물품의 사용을 재해피해자가 중단하는 경우 관할당국에 사전통지해야 함[363]

○ 해당 물품을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 또는 자선물품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에 대여, 임대 또는 양도한 경우 면제의 목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한 면제는 유지됨

○ 그 외의 경우 수입관세는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물품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대여 등을 행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됨

□ 면제가 허용되는 단체가 면제자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당국에 통지해야 함[364]

○ 이러한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은 관할당국이 확인 또는 승인한 물품의 유형과 과세가격을 기초로 조건 충족 등이 중단된 날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함

6) 검사·분석·시험용 물품

□ 정보, 산업·상업 연구 목적으로 구성, 품질 또는 기술적 특성을 검사, 분석, 시험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65]

○ 면제는 검사, 분석, 시험 대상 물품이 그 과정에서 완전히 사용되거나 소모되는 경우에만 허용됨[366]

○ 그 자체로 판촉활동을 구성하는 검사, 분석, 시험에 사용되는 물품은 면제를 받을 수 없음[367]

□ 물품이 수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할당국이 관련 조건을 결정해야 함

---

363)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79조
364)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80조
365)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95조
366)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96조
367)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97조

○ 면제는 수입 목적에 꼭 필요한 수량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이러한 수량은 그 목적을 고려하여 관할당국이 결정함[368]

○ 또한 검사, 분석,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기간과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관할당국이 결정함[369]

□ 면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 분석, 시험 중에 완전히 사용되거나 소모되지 않은 물품에도 허용됨[370]

○ 검사, 분석, 시험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잔여물이 관할당국의 동의 및 감시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돼야 함

- 검사, 분석, 시험 완료 시 완전히 소모되거나 상업적 가치가 없어진 경우
-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경우 비용부담 없이 국가에 양도한 경우
- 정당한 상황에서 EU 관세영역 밖으로 수출된 경우

□ 검사, 분석, 시험 후 잔여물이 소모되거나 상업적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잔여물은 시험완료일에 적용되는 세율로 관할당국이 확인·승인한 물품의 유형 및 가격에 따라 수입관세가 부과됨[371]

○ 다만 이해관계자는 관할당국의 동의 및 감시하에 잔여물을 폐기물 또는 스크랩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 당시의 폐기물 또는 스크랩에 대한 수입관세가 적용됨

마. 기타물품에 대한 감면

1) 명예훈장 또는 포상

368)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98조
369)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01조
370)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99조
371)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00조

□ 관련자가 관할당국에 증거를 제시하고, 상업적 성격이 아닌 다음의 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72]

○ EU 관세영역에 거주지가 있는 자에게 제3국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

○ 예술, 과학, 스포츠, 공공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의 활동 또는 특정행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EU 관세영역에 거주지가 있는 자에게 제3국에서 수여하는 상징적인 성격의 컵, 메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상기의 목적으로 EU 관세영역에 제시하기 위해 제3국에 설립된 개인 또는 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상징적인 성격의 컵, 메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비즈니스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행사에서 제3국에 거주하는 자에게 무료로 배포하기 위한 가치가 제한되고 상징적 성격의 상, 트로피 및 기념품

- 다만 그 특성, 가치 또는 기타 특징이 상업적 이유로 수입되었음을 나타내지 않아야 함

2) 국제관계에 따라 받은 선물

□ 알코올성 제품, 담배 또는 담배제품을 제외한 다음의 물품은 비정기적인 선물로 특성, 가치, 수량으로 인해 상업적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됨[373]

○ 제3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자가 주최 당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EU 관세영역으로 수입하는 경우

○ EU의 관세영역에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가 주체 당국에 주기 위한 선물을 EU 관세영역으로 수입하는 경우

○ 제3국에 위치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공식 기관, 공공 기관 또는 그룹이 우정 또는 친선의 표시로 EU 관세영역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 주는 선물로 관할당국이 물품을 면세로 수령하도록 수령한 경우

---

372)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81조
373)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82조 내지 제84조

3) 국가원수용 물품

□ 다음의 물품은 관할당국이 정한 한도 내에서 조건에 따라 수입관세가 면제됨[374]

○ 군주 및 국가원수에 대한 선물 및 이들이 갖는 특권과 유사한 국제적 차원의 특권을 갖는 자에 대한 선물

○ EU 관세영역에 공식적으로 체류하는 동안 제3국의 군주 및 국가원수 또는 공식적인 대리인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물품

- 다만 이러한 면제는 수입 회원국에 의해 상호대우를 받을 수 있음

4) 지식재산권 보호단체용 물품

□ 저작권, 산업·상업 특허권의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탁송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75]

○ 이러한 탁송품에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 출원 신청서와 상표, 패턴, 고안 및 이들에 대한 근거 서류가 포함됨

5) 관광정보문헌

□ 다음의 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76]

○ 다음에 해당하는 무료로 배포되는 서류(전단지, 소책자, 서적, 잡지, 가이드북, 포스터, 액자 없는 사진, 확대사진, 지도, 그림달력 등)

- 문화, 여행, 스포츠, 종교, 무역 또는 전문적 모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외국을 방문하도록 장려하는 것
- EU 회사를 위한 상업광고의 성격이 분명한 광고를 제외하고 내용물의 25% 이하의 민간 상업광고를 포함하는 것

---

374)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85조
375)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02조
376)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03조

○ 무료로 배포되는 공식 여행대리점 또는 그 후원하에 발행된 외국 호텔 목록 및 연감 및 외국 운송서비스를 위한 시간표
- 다만 EU 회사를 위한 상업광고를 제외하고 25% 미만의 민간 상업광고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 공식 국가 여행대리점에서 임명한 공인 대표자 또는 특파원에게 배포용이 아닌 참조자료로 제공된 연감, 전화 및 텔렉스 번호, 호텔 목록, 박람회 카탈로그, 무시할 만한 가치의 공예품 표본, 박물관·대학·스파·유사시설에 대한 문헌

6) 기타 서류 및 물품

□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77]

○ 회원국의 공공 서비스 기관에 무료로 송부되는 서류
○ 무료로 배포하기 위한 외국 정부 또는 공식 국제기구의 간행물
○ 제3국에 설립된 기관이 준비한 선거용 투표용지
○ 증거 또는 유사한 목적을 위해 회원국의 법원 또는 공식기관에 제출하는 것
○ 공공서비스 또는 은행 간의 관례적인 정보교환의 일부로 전송되는 서명에 관한 견본 및 인쇄된 회람
○ 회원국의 중앙은행에 송부되는 공식 인쇄물
○ 제3국에서 등록된 회사가 작성하여 발행한 증권의 소지자, 출자자에게 송부하는 보고서, 진술, 메모, 안내서, 신청서 및 기타 문서
○ 면세수입이 남용이나 경쟁에 중대한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취인에게 무료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기록매체
○ 국제회의, 컨퍼런스, 총회에서 사용되는 파일, 아카이브, 인쇄된 양식 및 기타 문서, 이러한 모임에 대한 보고서
○ 제3국에서 주문을 받거나 이행하기 위해 또는 EU 관세영역에서 개최되는 경쟁에 참가하기 위해 수입된 도면, 기술도면, 도안, 설명 및 기타 유사한 문서

---

377)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04조

○ 제3국에 설립된 기관이 EU 관세영역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사용되는 문서
○ 국제협약의 체계에서 차량 또는 물품의 국제이동에 대해 공식문서로 사용되는 인쇄된 양식
○ 제3국의 호텔 또는 운송회사가 EU 관세영역에 설립된 여행사에 송부하는 인쇄된 양식, 라벨, 티켓 및 유사한 문서
○ 사용된 인쇄된 양식, 티켓,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및 유사한 상업 또는 공식서류
○ 제3국 또는 국제당국의 인쇄양식으로 제3국의 협회가 EU 관세영역에 위치한 해당 협회에 배포하기 위해 송부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인쇄물
○ 언론사, 신문 또는 잡지 발행인에게 전송되는 사진, 슬라이드 및 고정매트(자막 포함 여부 불문)
○ 제3국에서 요금지불을 증명하는 세금 및 유사한 인지

7) 장례용품

□ EU 관세영역에 매장된 제3국 전쟁의 희생자의 공동묘지 및 기념관의 건설, 유지 또는 장식에 사용하기 위한 모든 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78]
○ 해당 물품은 관할당국이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수입해야 함

□ 다음 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79]
○ 죽은 사람의 유골이 담긴 항아리, 시체가 들어있는 관, 꽃, 장례식 화환 및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기타 장식물
○ 제3국에 거주하는 자가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EU 관세영역에서 묘지를 장식하기 위해 가져온 꽃, 화환 및 기타 장식물

---

378)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12조
379)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13조

바. 무역진흥을 위한 물품에 대한 감면

1) 견본

□ 무시할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EU 관세영역으로 수입될 목적으로 대표하는 유형의 물품에 대한 주문을 요청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견본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80]

○ 관할당국은 특정물품에 면제를 허용하기 위하여 견본으로서의 특성을 파괴하지 않는 한 찢거나 구멍을 뚫거나 명확하고 지울 수 없는 표시를 하거나 기타 처리를 통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물품의 견본은 표시방식 및 수량에서 동일한 유형 또는 품질의 물품에 대해 주문을 요청하는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을 대표함

2) 인쇄물 및 광고물

□ 카탈로그, 가격표, 사용 지침서, 소책자와 같은 인쇄된 광고물은 다음과 관련된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됨[381]

○ EU 관세영역 밖에 설립된 법인 등에 의해 제공되는 판매 또는 임대용 물품, 운송, 상업 보험 또는 은행 서비스

○ 본질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없고 공급자가 고객에게 무료로 보내는 광고목적의 물품으로서 광고기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도 수입관세가 면제됨[382]

□ 이러한 면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인쇄광고에 한함[383]

○ 인쇄물은 생산,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이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 각 탁송품이 하나 이상의 문서로 구성된 경우 각 문서의 단일사본이 포함되어야 함

---

380)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86조
381)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87조
382)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89조
383)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88조

- 동일한 문서의 여러 사본으로 구성된 탁송품은 총중량이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제가 허용될 수 있음

○ 인쇄물은 동일한 송하인이 동일한 수하인에게 묶음배송할 수 없음

3) 무역박람회 사용·소비 물품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다만 견본 또는 시연을 위한 기계 및 장치의 경우 알코올성 제품, 담배 및 담배제품, 연료는 제외됨[384]

○ 무역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를 위해 EU 관세영역 밖에서 제조된 물품의 대표적인 견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385]

- 제3국에서 무료로 수입되거나 대량으로 수입된 물품으로부터 전시회에서 획득한 것
- 제공받은 자가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도록 오직 전시회에서 대중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것
- 단일 가치가 낮은 광고 견본으로 식별가능한 것
- 쉽게 시장에 출시할 수 없으며 적절한 경우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동일한 물품의 최소 수량보다 소량으로 포장된 것
- 포장되지 않은 식품 및 음료의 경우 전시회 현장에서 소비되는 것
- 총액과 수량이 전시회의 성격, 참관객의 수, 출품자의 참여 정도에 적합한 것

○ 시연을 위해서 수입되는 것으로 무역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되는 EU 관세영역 밖에서 제조된 기계 및 장치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386]

- 전시회에서 소비되거나 소모되는 것
- 총액과 수량이 전시회의 성격, 참관객의 수, 출품자의 참여 정도에 적합한 것

○ 무역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 제3국의 대표가 점유하는 임시 스탠드의 건설, 장식에 사용되는 페인트, 바니시, 벽지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소모되는 것

---

384)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90조 제1항, 제94조
385)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91조
386)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92조

○ 무역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 전시된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광고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인쇄물, 카탈로그, 안내서, 가격표, 광고 포스터, 달력, 액자 없는 사진 및 기타 물품[387]
- 오직 전시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대중에게 무료로 배포되도록 의도된 것
- 총액과 수량이 전시회의 성격, 참관객의 수, 출품자의 참여 정도에 적합한 것

□ 무역박람회 및 이와 유사한 행사란 다음을 말함[388]
○ 무역, 산업, 농업 또는 수공예와 관련된 전시회, 박람회, 쇼 및 유사한 행사
○ 주로 자선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시회 및 행사
○ 주로 과학·기술·수공예·예술·교육 또는 문화, 스포츠 목적, 종교적 이유·예배, 무역조합 활동·관광, 국제적인 이해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전시회 및 행사
○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대표자 회의
○ 공식 또는 기념행사 및 모임

사. 운송관련 물품에 대한 감면

1) 운송 보조자재

□ 제3국에서 EU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동안 물품의 보관 및 보호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는 수입관세가 면제됨[389]
○ 이러한 물품에는 로프, 짚, 천, 종이 및 판지, 목재, 플라스틱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재사용되지 않음

□ 제3국에서 EU 관세영역으로 동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운송 여정 중 해당 동물에게 제공되는 물품은 수입관세가 면제됨[390]

---

387)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93조
388)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90조 제2항
389)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05조

○ 이러한 물품에는 짚, 사료 및 먹이가 포함됨

2) 연료 및 윤활유

□ EU 관세영역에 들어오는 개인 및 상업용 차량 및 오토바이, 특수 컨테이너의 표준탱크 또는 휴대용 탱크에 포함된 연료 및 윤활유는 수입관세가 면제됨[391]

○ 상업용 차량은 운전자를 포함한 9인 이상의 사람 또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물 또는 장비로 구동되거나 운송 외의 특수목적을 위한 도로차량을 말함

- 트레일러가 있거나 없는 트랙터를 포함하며, 비용 지불 여부는 상관없음

○ 개인차량은 상업용 차량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차량을 말함

○ 표준탱크란 다음을 의미함

- 제조자가 해당 차량과 동일한 유형의 모든 차량에 영구적으로 장착한 탱크로 운송 중 추진 및 작동을 위해 연료를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냉각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이 영구 장착된 것
- 가스를 연료로 직접 사용하도록 설계된 차량에 장착된 가스탱크 및 차량에 장착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에 장착된 탱크
- 제조자가 해당 컨테이너와 동일한 유형의 모든 컨테이너에 영구적으로 장착한 탱크로 운송 중 작동을 위해 연료를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냉각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이 특수 컨테이너에 영구 장착된 것

○ 특수 컨테이너란 냉각 시스템, 산소 공급 시스템, 단열 시스템 또는 기타 시스템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장착된 모든 용기를 말함

○ 휴대용 탱크는 차량당 최대 10ℓ의 것을 말함

○ 윤활유는 차량과 함께 제시되고, 여정 중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것에 한함

□ 회원국은 연료와 관련하여 그 양을 제한할 수 있음

○ 상업용 차량의 표준탱크 및 특수 컨테이너에 포함된 연료와 관련하여 면제 적용을

390)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06조
391)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07조, 제111조

차량당, 특수 컨테이너당, 운송 여정당 200ℓ로 제한할 수 있음[392]

○ 또한 다음의 경우 허용되는 면세 연료의 양을 제한할 수 있음[393]

-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자의 여정인 경우 최대 25㎞의 국경지대 내에서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상업용 차량
-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개인 소유의 개인 차량

□ 면제가 인정된 연료는 해당 차량에 필요한 수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입된 차량 외의 차량에 사용하거나 반출하여 보관 또는 양도할 수 없음[394]

○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일자에 관할 당국이 확인한 물품의 유형 및 과세가격에 따라 해당 일자에 적용하는 세율로 수입관세가 부과됨

2. 특별절차

□ 물품은 통과, 보관, 특수 사용, 가공과 같은 특별절차하에 둘 수 있으며, 특수사용 및 가공절차, 보관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세관당국의 인가가 필요함[395]

○ 특별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통과: 역외 통과 및 역내 통과[396]
- 보관: 일시 보관, 보세창고, 자유구역[397]
- 특수 사용: 일시 반입, 최종 사용
- 가공: 역내 가공 및 역외 가공

○ 세관당국의 인가는 다음의 자에게만 할 수 있음

- EU 관세영역에 설립된 자

---

392)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08조
393)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09조
394)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110조
395) UCC 제210조 내지 제211조
396) 해당 절차는 Ⅶ. 보세제도 2. 보세운송에서 다룸
397) 해당 절차는 Ⅶ. 보세제도 1. 보세구역에서 다룸

-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증을 제공한 자
- 관세채무 또는 기타 비용이 특별절차하의 물품에 대해 발생한 경우 담보를 제공한 자
- 일시 반입, 역내 가공의 경우 물품을 사용하는 자, 그 사용을 준비하는 자, 물품의 가공작업을 하는 자 또는 그 가공작업을 준비하는 자

가. 특수 사용

1) 일시 반입

□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EU 물품은 수입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감을 받아 일시 반입절차를 따를 수 있음[398]

○ 일시 반입물품은 수입관세뿐 아니라 다음을 적용받지 않음

-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 비용
- 통상정책상의 조치, 다만 EU 관세영역으로 물품 반입 또는 EU 관세영역에서 물품 반출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일시 반입절차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음[399]

○ 물품을 사용함에 따라 통상적인 가치의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함

○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다만 물품의 성질 또는 그 사용 목적에 미루어 동일성을 확인할 수단이 없더라도 절차의 악용을 초래하거나 동등물품에 관해 정해진 조건에 합치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함)

○ 일시 반입절차를 취하는 자가 EU 관세영역 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관세법령에 규정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감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398) UCC 제250조 제1항
399) UCC 제250조 제2항

□ 세관당국은 일시 반입절차에 있는 물품을 재수출해야 하는 기간 또는 그 후에 계속되는 세관절차에 두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함[400]

○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자의 책임하에 물품을 일시 반입절차에 둘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4개월로 함

○ 허가된 사용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되지 않은 경우 세관당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일시 반입절차에 있을 수 있는 전체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입관세가 일부 경감되는 일시 반입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일시 반입절차에 놓인 날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된다면 과세돼야 할 수입관세의 3%로 정함[401]

○ 해당 금액은 일시 반입하에 있는 기간 동안 매달 또는 기간에 해당되는 날에 대해 과세됨

○ 수입관세는 물품이 일시 반입절차에 있는 날에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됐다고 가정된 경우에 납부할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최종 사용

□ 최종 사용절차에 따라 특수한 사용을 위해 관세 면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을 받고 물품을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할 수 있음[402]

○ 물품이 생산단계에 있고 경제적으로 명시된 최종 사용만 가능한 경우 세관당국은 인가 시 물품이 수입관세 면제 또는 경감 신청을 위한 목적상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설정할 수 있음

□ 물품이 반복적 사용에 적합하고 세관당국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

400) UCC 제251조
401) UCC 제252조
402) UCC 제254조 제1항 내지 제2항

는 경우 관세 면제 또는 경감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 사용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세관감독은 계속됨[403]

○ 세관감독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됨

- 관세 면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을 위해 규정된 목적으로 물품을 사용한 경우
- 물품이 EU의 관세영역에서 반출되거나 폐기된 경우 또는 국가에 위임한 경우
- 해당 물품이 관세 면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을 위해 규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해당 수입관세가 납부된 경우

나. 가공

□ EU는 역내에서 가공작업을 위해 반입된 원재료 또는 역외에서 가공 후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가공무역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가공작업은 다음의 하나를 의미함[404]

- 물품을 조립하거나 다른 물품에 장착하는 것을 포함한 작업
- 물품의 가공
- 복구 및 정리를 포함한 물품의 수리
- 가공물품에서 식별되지는 않으나 공정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더라도 해당 물품의 생산을 허용하거나 촉진하는 물품(제조용 부속품)의 사용

1) 역내 가공

□ 역내 가공절차에 따라 비EU 물품을 EU 관세영역에서 수입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하나 이상의 가공작업에 사용할 수 있음[405]

○ 역내 가공물품은 수입관세뿐 아니라 다음을 적용받지 않음

-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 비용

---

403) UCC 제254조 제3항 내지 제4항
404) UCC 제5조 제35호
405) UCC 제256조 제1항

- 통상정책상의 조치, 다만 EU 관세영역으로 물품 반입 또는 EU 관세영역에서 물품 반출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역내 가공절차는 수리 및 폐기 외의 경우에만, 제조용 부속품 사용의 침해 없이 해당 절차하의 물품을 가공물품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음[406]

○ 또한 동등한 물품에 대한 조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경우 역내 가공절차를 사용할 수 있음

- 동등한 물품은 특별절차하에 놓인 물품을 대신해 보관, 사용, 가공되는 EU 물품을 말하며, 대체되는 물품과 8자리의 CN코드번호, 상거래상의 품질, 기술적 특성이 동일해야 함[407]
- 동등한 물품에 의해 대체되는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동등한 물품에서 취득한 물품의 수출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관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이뿐만 아니라 역내 가공절차는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음[408]

-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을 위해 기술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물품
- 물품을 보존하고 외관 또는 시장가치를 높이거나 유통 또는 재판매를 준비하기 위한 통상의 방법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물품

□ 세관당국은 비EU 물품이 역내 가공절차에 놓인 날부터 기산하여 가공작업을 행하고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역내 가공절차 종료기간을 설정함[409]

○ 세관당국은 인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요청을 하는 경우 역내 가공절차 종료기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동등한 물품에 대한 규정에 따른 사전 수출의 경우 세관당국은 비EU 물품을 역내 가

406) UCC 제256조 제2항
407) UCC 제223조
408) UCC 제256조 제3항
409) UCC 제256조 제1항 내지 제2항

공절차를 위해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지정해야 함[410]

○ 신고기간을 정할 때에는 조달 및 EU 관세영역으로의 운송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며, 월 단위로 정해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신고기간은 동등한 물품으로부터 취득한 가공품에 관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개시됨

○ 6개월의 기간은 인가를 얻은 자의 요청에 의하여 만료 후에도 연장될 수 있으나 총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역외 가공

□ 역외 가공절차에 따라 EU 물품은 가공작업을 위해 EU 관세영역 밖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될 수 있으며, 가공된 물품은 수입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받아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될 수 있음[411]

○ 수입관세의 경감은 역외 가공절차의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의한 자로서 EU 관세영역에 사업장을 둔 자의 요청에 의함

□ 다만 역외 가공은 다음의 EU 물품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412]

○ 수출에 의하여 수입관세가 환급 또는 면제되는 물품

○ 수출 전에 최종 사용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받아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된 물품으로서 최종 사용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기간 중에 있는 것

○ 수출에 의하여 수출관세가 환급되는 물품

○ 수출에 의해 수출관세 환급 외의 금전적인 이익이 공통농업정책하에서 인정되는 물품

□ 세관당국은 수입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된 물품을 가공물품의 형태로 EU 관세영역에 재수입해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절차에 두어야 하

410) UCC 제256조 제3항 내지 제4항
411) UCC 제259조 제1항
412) UCC 제259조 제2항

는 기간을 설정해야 함[413]

○ 세관당국은 인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요청을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보증에 의해 발생하는 계약 또는 법률상의 의무나 제조 또는 재료의 결함에 따라 무료로 물품이 수리되었음을 세관당국이 확인한 경우 수입관세 전부가 경감됨[414]

○ 다만 물품이 최초로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되는 때에 제조 또는 재료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가공작업이 결함있는 EU 물품의 수리를 포함하는 경우 세관당국은 표준교환 시스템에 따라 수입물품이 가공물품을 대체하도록 인가할 수 있음[415]

○ 다만 공통농업정책에 따른 조치 또는 농산물의 가공에서 발생하는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특별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제외함

○ 대체되는 수입물품은 하자물품이 수리되었을 경우의 8자리 CN코드, 상거래상 품질, 기술적 특성이 동일해야 함

□ 세관당국은 조건을 정하여 관련자의 요청 시 하자물품의 수출 전에 대체물품의 수입을 인가해야 함[416]

○ 하자물품은 대체물품의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하기 위한 신고서가 세관당국에 수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출돼야 함

- 하자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할 수입관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함

○ 하자물품을 기간 내에 수출할 수 없었던 경우 세관당국은 인가를 받은 자로부터 정당한 요청이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413) UCC 제259조 제3항
414) UCC 제260조
415) UCC 제261조
416) UCC 제262조

Ⅵ. 원산지제도

□ EU는 원산지제도를 비특혜원산지와 특혜원산지로 구분하여 UCC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UCC DA 및 UCC IA에서 정하고 있음

○ UCC DA는 원산지결정에 관한 사항을, UCC IA는 원산지증명의 제공과 검증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417]

1. 비특혜원산지

가. 적용범위

□ 비특혜원산지 규정은 최혜국 대우 적용을 위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통상정책 조치, 무역금지, 할당, 무역통계, 원산지표시 등에도 사용됨[418]

○ UCC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물품의 비특혜원산지를 결정하는 규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함[419]

- EU가 EU 관세영역 외의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협정 및 일방적으로 채택한 특혜관세상의 조치를 제외한 CN
- 물품의 무역에 관련된 특정분야를 정하는 EU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로서 관

417) UCC 제62조 내지 제63조, 제65조 내지 66조
418)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international-affairs/origin-goods/non-preferential-origin_en, 검색일자: 2023. 11. 13.
419) UCC 제59조

세조치 이외의 것
- 그 밖에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EU의 조치

나. 원산지결정

□ 비특혜원산지는 물품의 제조에 관여하는 국가의 수에 따라 완전 획득 기준 또는 최종적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함
○ 물품이 하나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제조된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완전 획득된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결정함
○ 물품의 제조에 복수의 국가 또는 지역이 관여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봄

□ 다음의 물품은 하나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완전 획득된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봄[420]
○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추출된 광물성 제품
○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만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살아있는 동물
○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자란 살아있는 동물에서 파생된 제품
○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낚시 또는 사냥된 제품
○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영해 밖에서 획득한 해상어업 또는 기타 제품
○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공장 선박에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해상어업 또는 기타 제품으로부터 획득 또는 생산한 물품
○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이 해당 해저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하층토에서 채취한 제품
○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집되고 원자재 회수에 적합한 제조작업 또는 중고품에

420) UCC 제60조 제1항; UCC DA 제31조

서 파생된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상기에서 명시한 제품으로만 생산된 물품

□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이 관여된 경우 ① 실질적이고, ② 경제적으로 정당화된 공정 또는 작업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봄[421]
○ 이러한 공정 또는 작업을 위한 장비를 갖춘 사업장에서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결과로 새로운 물품이 제조되거나 중요한 제조단계가 이루어져야 함

□ 실질적인 공정 또는 작업 여부는 마지막으로 생산에 관여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실질적인 공정 또는 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됨
○ 특정물품에 대해 새로운 물품을 제조하거나 중요한 제조단계로 간주하는 실질적인 공정 또는 작업은 UCC DA 부속서 22-01에 열거하고 있음[422]
○ UCC DA 부속서 22-01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원산지 결정 규정은 없고, 마지막 실질적 공정 또는 작업을 사례별로 평가함[423]

□ 또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행된 공정 또는 작업이 비특혜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공정 또는 작업으로 간주됨[424]
○ 이는 마지막 공정 또는 작업의 모든 요소와 마지막 생산국에서의 공정 또는 작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함[425]

□ 다만 다음의 공정 또는 작업은 원산지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당한 공정 또는 작업으로 간주하지 않음[426]

---

421) UCC 제60조 제2항
422) UCC DA 제32조
423) EU DG TAXUD, *Guidance on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2022, p. 8(정재호·이재선,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p. 40에서 재인용)
424) UCC DA 제33조
425) EU DG TAXUD(2022), p. 8(정재호·이재선(2022), p. 41에서 재인용)

○ 운송 및 보관 중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또는 선적이나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
○ 먼지 제거, 체 질, 선별, 분류, 매칭, 세척 및 절단으로 구성된 단순공정
○ 포장 변경, 수하물 해체 및 조립,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넣기, 카드 또는 판에 고정, 기타 모든 단순 포장공정
○ 물품의 세트나 앙상블 구성 또는 판매를 위한 구성
○ 마크, 라벨, 로고, 기타 유사한 구별 표시를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부착 또는 인쇄
○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 분해 또는 용도의 변경
○ 상기에서 명시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 UCC DA 부속서 22-01에 열거된 물품에 경제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공정 또는 작업이나 단순 공정 또는 작업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결정 시 각 류의 잔여규정이 적용됨[427]
○ 각 류에 명시된 잔여규정은 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가치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결정된 주요 재료의 원산지를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제2류, 제4류, 제9류, 제14류, 제22류의 경우 혼합물품은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재료의 원산지를 물품의 원산지로 간주하며, 이러한 재료가 없는 경우 혼합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봄

426) UCC DA 제34조
427) UCC DA 제33조 내지 제34조

[그림 2-Ⅵ-1]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잔여규정 예시

ANNEX 22-01

Introductory notes and list of substantial processing or working operations conferring non-preferential origin

SECTION I

LIVE ANIMALS; ANIMAL PRODUCTS

CHAPTER 2

Meat and edible meat offal

Chapter residual rule applicable to mixtures:

(1) For the purposes of this residual rule, 'mixing' means the deliberate and proportionally controlled operation consisting in bringing together two or more fungible materials.

(2) The origin of a mixture of products of this Chapter shall be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materials that account for more than 50 % by weight of the mixture. The weight of materials of the same origin shall be taken together.

(3) When none of the materials used meet the percentage required, the origin of the mixture shall be the country in which the mixing was carried out.

Chapter residual rule:

Where the country of origin cannot be determined by application of the primary rules and the other Chapter residual rule[s],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shall be the country in which the major portion of the materials originated, a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weight of the materials.

자료: UCC DA ANNEX 22-01

□ 한편 UCC DA 부속서 22-01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이 경제적으로 정당하지 않거나 단순한 공정 또는 작업을 거친 경우 주요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함[428)]

○ 제1류 내지 제29류, 제31류 내지 제40류의 물품은 중량, 제30류, 제41류 내지 제97류의 물품은 가치를 기준으로 주요 재료를 결정함

428) UCC DA 제33조 내지 제34조

다. 원산지증명

□ 원산지증명은 신고된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모든 증거를 말하며, 세관당국은 제3국에서 발급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해서는 안 됨[429]

○ 신고인은 정확한 원산지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EU 내 자유유통을 위해 신고된 물품의 마지막 생산국에서 발생한 공정에 대한 정보를 보유해야 함

□ 다만 특별 비특혜 수입협정이 체결된 제3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돼야 함[430]

○ 원산지증명서는 제3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해당 당국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제3국에서 수출신고 되기 전에 발급돼야 하며, 발급기관은 각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함

-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 것이 오류, 비자발적 누락,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경우 수출 후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음
- 다만 신청서의 세부사항이 수출서류의 세부사항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음

---

429)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international-affairs/origin-goods/non-preferential-origin_en, 검색일자: 2023. 11. 13.

430) UCC IA 제57조

[그림 2-Ⅵ-2] 특별 비특혜 수입협정 적용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양식

1 Consignor	CERTIFICATE OF ORIGIN for imports of products subject to special non-preferential import arrangements into the European Union No ORIGINAL
2 Consignee (optional)	3 ISSUING AUTHORITY
	4 Country of origin
NOTES A. The certificate must be completed in typescript or by means of a mechanical data-processing system, or similar procedure. B. The original of the certificate must be lodged together with the declaration of release for free circulation with the relevant customs office in the European Union.	5 Remarks

6 Item number — Markings and numbers —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	7 Gross and net mass (kg)
8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S ORIGINATE IN THE COUNTRY INDICATED IN BOX 4 AND THAT THE INDICATIONS IN BOX 5 ARE CORRECT. Place and date of issue Signature Issuing authority's stamp	
9 RESERVED FOR THE CUSTOMS AUTHORITIES IN THE EUROPEAN UNION	

자료: UCC IA ANNEX 22-14

2. 특혜원산지

가. 적용범위

□ 특혜원산지 규정은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국가의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율 등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됨[431]

○ UCC에서는 다음의 조치 또는 비관세상의 특혜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는 물품은 UCC에서 정한 특혜원산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함[432]

- EU가 EU 관세영역 외의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협정에 포함된 특혜관세상의 조치
- EU가 EU 관세영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채택한 특혜관세상의 조치

□ UCC에서 정하는 특혜원산지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음[433]

○ EU가 EU 관세영역 외의 특정 국가나 지역 또는 그러한 국가나 지역의 집단과 체결한 협정에 포함된 특혜조치에 의해 혜택을 받는 물품의 원산지규정은 해당 협정에서 정해야 함

- 이는 EU가 체결한 FTA에 따른 특혜를 말하며, 각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함

○ EU가 EU 관세영역 외의 특정 국가나 지역 또는 그러한 국가나 지역의 집단에 대해 일방적으로 채택한 특혜조치에 의해 혜택을 받는 물품의 원산지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해야 함

- 이는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로 이를 적용하기

---

431)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introduction-1_en, 검색일자: 2023. 11. 16.
432) UCC 제64조 제1항
433) UCC 제64조 제2항 내지 제5항

위한 원산지규정은 UCC DA에서 정함

○ EU 관세영역과 세우타 및 멜리야 간의 가입조약의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에 적용되는 특혜조치에 의해 혜택을 받는 물품의 원산지규정은 해당 부속서에 따라 채택함

- 세우타와 멜리야는 EU 관세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나 「스페인의 EC 가입법」에 따라 EU와 상호 관세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원산지규정[434]을 마련하고 있음[435]

○ EU와 협력관계에 있는 해외 국가 및 지역을 위한 특혜약정에 포함된 특혜조치에 의해 혜택을 받는 물품의 원산지규정은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채택함

- EU가 체결한 제휴협정에 따른 특혜로 각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특혜원산지 규정은 특혜조치를 부여하는 협정에 따라 그 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협정에는 여러 가지 공통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특혜원산지 규정이 포함하는 주요 공통조항은 다음과 같음[436]

- 원산지지위: 물품이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누적: 누적은 체약 당사자들이 서로 원산지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최소공정: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또는 누적하여 수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 수준임
- 일반허용기준(최소허용기준): 제조자가 비원산지재료를 특정비율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역내가공 원칙: 작업 또는 공정이 당사자의 영역에서 수행되어야 함
- 직접운송 원칙: 수입국에 도착한 물품이 수출국에서 출발한 물품과 동일함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임

---

434) Council Regulation (EC) No. 82/2001

435)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euta-and-melilla_en, 검색일자: 2023. 11. 16.

436)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international-affairs/origin-goods/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common-provisions_en, 검색일자: 2023. 11. 16.

- 원산지증명: 물품이 특정 특혜원산지임을 주장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으로 입증돼야 함
-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는 특정 조건하에서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나. 협정 등에 따른 특혜원산지

1) 원산지결정

□ 특정 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의한 원산지의정서의 원산지규정에 명시된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함[437]

○ 이는 물품이 수혜국에서 재배 또는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품으로 제조되어야 하거나 일정량의 적업 또는 가공을 거쳐야 함을 의미함

□ EU는 유럽 및 지중해 국가와 「범유로지중해 협약(Pan-Euro-MED Convention)」을 체결하여 공통원산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참조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의 FTA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대체함[438]

○ 해당 협약의 체약국은 EU, EFTA, 페로스제도, 바르셀로나선언 참여국[439], 안정 및 제휴협정 참여국, 몰도바로 이들은 동일한 원산지의정서를 체결함

○ 특히 해당 체약국 간에는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이 인정되어 각 FTA 협정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체약국 간 원산지누적을 허용하고 있음

□ EU 및 체약국이 상호 간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과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원산지의정서는 다음과 같음

○ 원산지규정에는 비원산지재료 또는 부품으로 제조된 각 물품이 원산지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인 품목별원산지규정이 포함됨

---

437)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introduction-1_en, 검색일자: 2023. 11. 20.

438)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international-affairs/pan-euro-mediterranean-cumulation-and-pem-convention_en, 검색일자: 2023. 11. 20.

439)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튀르키예

〈표 2-Ⅵ-1〉 특혜 협정 및 원산지규정

구분	국가 및 지역	협정	원산지규정
EFTA 및 EEA	스위스	EU-스위스 FTA	의정서 3
	아이슬란드	EU-아이슬란드 FTA	의정서 3
	노르웨이	EU-노르웨이 FTA	의정서 3
	덴마크, 페로제도	EU-덴마크-페로제도 협정	의정서 3
	EEA	EEA 협정	의정서 4
지중해 국가	알제리	EU-알제리 유로지중해 제휴협정	의정서 6
	튀니지	EU-튀니지 유로지중해 제휴협정	의정서 4
	모로코	EU-모로코 유로지중해 제휴협정	의정서 4
	이스라엘	EU-이스라엘 유로지중해 제휴협정	의정서 4
	팔레스타인	EU-팔레스타인 유로지중해 제휴협정	의정서 3
	이집트	EU-이집트 유로지중해 제휴협정	의정서 4
	요르단	EU-요르단 유로지중해 제휴협정	의정서 3
	레바논	EU-레바논 유로지중해 제휴협정	의정서 4
서부 발칸	북 마케도니아	EU-북 마케도니아 안정 및 제휴협정	의정서 4
	알바니아	EU-알바니아 안정 및 제휴협정	의정서 4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EU-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안정 및 제휴협정	의정서 2
	몬테네그로	EU-몬테네그로 안정 및 제휴협정	의정서 3
	세르비아	EU-세르비아 안정 및 제휴협정	의정서 3
	코소보	EU-코소보 안정 및 제휴협정	의정서 3
동유럽 협력국	몰도바	EU-몰도바 제휴협정	의정서 2
	조지아	EU-조지아 제휴협정	의정서 2
	우크라이나	EU-우크라이나 제휴협정	의정서 1
기타	ACP[1)]	EU-ACP EPA	의정서 1
	멕시코	EU-멕시코 PA	의정서 3
	칠레	EU-칠레 AA	의정서 3
	안데스공동체	EU-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 TA	부속서 2
	중앙아메리카[2)]	EU-중앙아메리카 AA	부속서 2
	한국	EU-한국 FTA	원산지의정서
	캐나다	EU-캐나다 CEPA	원산지의정서
	일본	EU-일본 EPA	제3장
	싱가포르	EU-싱가포르 FTA	의정서 1
	영국	EU-영국 TCA	Part 2, Title Ⅰ, Chapter 2
	베트남	EU-베트남 FTA	의정서 1

주: 1) 카메룬,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및 짐바브웨, 브루나이,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가나,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키츠 네비스,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피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2)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자료: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international-affairs/origin-goods/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arrangements-list_en, 검색일자: 2023. 11. 20.

2) 원산지증명

□ 물품이 특정 특혜원산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세관당국은 정확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원산지증명을 요구함[440]

○ 특혜협정은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며, 원산지증명의 방법, 양식 등은 각 협정의 원산지의정서 또는 규정에서 정함

□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가 작성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신고서가 원산지증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441]

○ 원산지신고문구는 송장, 납품서 또는 관련 물품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세한 명세가 있는 기타 상업서류에 작성돼야 함

○ 다만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도록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음

○ 원산지증명에 대한 사항은 특혜를 받고자 하는 협정에 따른 규정을 참조해야 함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는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특정조건을 충족하여 승인을 받은 수출자임[442]

○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인증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인증수출자의 인증 절차는 각국의 규정에 따름

---

440)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international-affairs/origin-goods/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common-provisions_en, 검색일자: 2023. 11. 21.

441)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international-affairs/origin-goods/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common-provisions_en, 검색일자: 2023. 11. 21.

442)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international-affairs/origin-goods/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common-provisions_en, 검색일자: 2023. 11. 21.

□ 특혜협정에서 원산지증명이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송장신고서 또는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을 취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EU 관세영역 내의 수출자 및 송하인은 인증수출자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443]

○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특혜원산지 증명에 표시될 세관승인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세관승인번호는 승인을 발급한 회원국의 ISO 국가코드로 시작함

○ 적용가능한 특혜협정이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송장신고 또는 원산지신고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준 금액은 탁송물품당 6,000유로임

□ 반면 공급자는 특혜원산지를 인증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수출자에게 물품의 원산지지위를 나타내는 공급자신고서(supplier's declaration)를 사용할 수 있음[444]

○ 공급자신고서는 공급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탁송 건마다 발급해야 함[445]

○ 다만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이 동일한 원산지지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여러 탁송 건을 포함하는 장기공급자신고서(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를 제공할 수 있음[446]

- 장기공급자신고서는 발행일, 시작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시작일은 발행일 이전 12개월 또는 이후 6개월 내여야 하고, 종료일은 시작일부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급자신고서에는 공급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법적 체계를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범유로지중해 협약」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함[447]

○ 특혜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의 공급자신고서는 UCC IA 부속서 22-15에 따라,

---

443) UCC IA 제67조

444)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international-affairs/origin-goods/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common-provisions_en, 검색일자: 2023. 11. 21.

445) UCC IA 제61조 제1항

446) UCC IA 제62조 제1항 내지 제2항

447) UCC IA 제61조 제1항, 제63조

장기공급자 신고서는 UCC IA 부속서 22-16에 따라 작성돼야 함

○ 특혜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않고 EU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물품의 공급자신고서는 UCC IA 부속서 22-17에 따라, 장기공급자신고서는 UCC IA 부속서 22-18에 따라 작성돼야 함

[그림 2-Ⅵ-3] 특혜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의 공급자신고서 양식

DECLARATION

I, the undersigned, declare that the goods listed on this document ..... (1) originate in ..... (2) and satisfy the rules of origin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with ..... (3):

I declare that (4):

☐ Cumulation applied with ..... (name of the country/countries)

☐ No cumulation applied

I undertake to make available to the customs authorities any further supporting documents they require:

..... (5)

..... (6)

..... (7)

(1) If only some of the goods listed on the document are concerned, they shall be clearly indicated or marked and this marking entered in the declaration as follows:

'..... listed on this document and marked ..... originate in .....'.

(2) The European Union, 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from which the goods originate.

(3) 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concerned.

(4) To be completed, where necessary, only for goods having preferential origin status in the context of preferential trade relations with one of the countries, with which 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n of origin is applicable.

(5) Place and date.

(6) Name and position in the company.

(7) Signature.

자료: UCC IA ANNEX 22-15

[그림 2-Ⅵ-4] 특혜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의 장기공급자신고서 양식

DECLARATION

I, the undersigned, declare that the goods described below:

..... (1)

..... (2)

which are regularly supplied to ..... (3), originate in ..... (4) and satisfy the rules of origin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with ..... (5).

I declare that (6):

☐ Cumulation applied with ..... (name of the country/countries)

☐ No cumulation applied

This declaration is valid for all shipments of these products dispatched from: ..... to ..... (7).

I undertake to inform ..... immediately if this declaration is no longer valid.

I undertake to make available to the customs authorities any further supporting documents they require.

..... (8)

..... (9)

..... (10)

(1) Description.
(2) Commercial designation as used on the invoices, e.g. model No.
(3) Name of company to which goods are supplied.
(4) The European Union, 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from which the goods originate.
(5) 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concerned.
(6) To be completed, where necessary, only for goods having preferential origin status in the context of preferential traderelations with one of the countries with which 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n of origin is applicable.
(7) Give the dates. The period shall not exceed 24 months or 12 months if the declaration was issued retrospectively.
(8) Place and date.
(9) Name and position, name and address of company.
(10) Signature.

자료: UCC IA ANNEX 22-16

[그림 2-Ⅵ-5] 특혜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않은 물품의 공급자신고서 양식

DECLARATION

I, the undersigned, supplier of the goods covered by the annexed document, declare that:

1. The following materials which do not have a preferential originating status have been used in the European Union to produce these goods:

Description of goods supplied (1)	Description of non originating materials used	HS heading of non originating materials used (2)	Value of non originating materials used (3)
			Total:

2. All the other materials used in the European Union to produce these goods originate in ..... (4) and satisfy the rules of origin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with ..... (5), and

I declare that: (6)

☐ Cumulation applied with ..... (name of the country/countries)

☐ No cumulation applied

I undertake to make available to the customs authorities any further supporting documents they require

..... (7)

..... (8)

..... (9)

---

(1) When the invoice, delivery note or other commercial document to which the declaration is annexed relates to a variety of goods, or goods not incorporating the same proportion of non originating materials, the supplier must clearly differentiate between them.

Example:

The document covers different models of electric motor of heading 8501 to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washing machines of heading 8450. The nature and value of the non 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motors vary from one model to another. The models must be listed separately in column 1 and the information in the other columns must be given for each, so that the manufacturer of the washing machines can correctly assess the originating status of each of his products depending on the type of motor it incorporates.

(2) To be completed only where relevant.

Example:

The rule for garments of ex Chapter 62 allows the use of non-originating yarn. Thus if a French garment manufacturer uses fabric woven in Portugal from non-originating yarn, the Portuguese supplier need only enter 'yarn' as non originating materials in column 2 of his declaration — the HS heading and value of the yarn are irrelevant.

A firm manufacturing wire of HS heading 7217 from non-originating iron bars must enter 'iron bars' in column 2. If the wire is to be incorporated in a machine for which the rule of origin sets a percentage limit o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the value of the bars must be entered in column 4.

(3) 'Value' means the customs value of the materials at the time of import or, if this is not known and cannot be ascertained, the first ascertainable price paid for the materials in the European Union.

For each type of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specify the exact value per unit of the goods shown in column 1.

(4) The European Union, 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from which the materials originate.

(5) 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concerned.

(6) To be completed where necessary, only for goods having preferential originating status in the context of preferential trade relations with one of the countries with which 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n of origin is applicable.

(7) Place and date.

(8) Name and function, name and address of company.

(9) Signature.

자료: UCC IA ANNEX 22-17

[그림 2-Ⅵ-6] 특혜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않은 물품의 장기공급자신고서 양식

DECLARATION

I, the undersigned, suppli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which are regularly sent to ..... ([1]), declare that:

1. The following materials which do not have a preferential originating status have been used in the European Union to produce these goods:

Description of goods supplied ([2])	Description of non originating materials used	HS heading of non originating materials used ([3])	Value of non originating materials used ([4])
			Total:

2. All the other materials used in the European Union to produce these goods originate in ..... ([5]) and satisfy the rules of origin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with ..... ([6]), and

I declare that: ([7])

☐ Cumulation applied with ..... (name of the country/countries)

☐ No cumulation applied

This declaration is valid for all shipments of these products dispatched from ..... to ..... ([8]).

I undertake to inform ..... immediately if this declaration is no longer valid.

I undertake to make available to the customs authorities any further supporting documents they require.

..... ([9])

..... ([10])

..... ([11])

([1]) Customer's name and address.

([2]) When the invoice, delivery note or other commercial document to which the declaration is annexed relates to a variety of goods, or goods not incorporating the same proportion of non originating materials, the supplier must clearly differentiate between them.

Example:

The document covers different models of electric motor of heading 8501 to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washing machines of heading 8450. The nature and value of the non 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motors vary from one model to another. The models must be listed separately in column 1 and the information in the other columns must be given for each, so that the manufacturer of the washing machines can correctly assess the originating status of each of his products depending on the type of motor it incorporates.

([3]) To be completed only where relevant.

Example:

The rule for garments of ex Chapter 62 allows the use of non-originating yarn. Thus if a French garment manufacturer uses fabric woven in Portugal from non-originating yarn, the Portuguese supplier need only enter 'yarn' as non originating materials in column 2 of his declaration — the HS heading and value of the yarn are irrelevant.

A firm manufacturing wire of HS heading 7217 from non-originating iron bars must enter 'iron bars' in column 2. If the wire is to be incorporated in a machine for which the rule of origin sets a percentage limit o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the value of the bars must be entered in column 4.

([4]) 'Value' means the customs value of the materials at the time of import or, if this is not known and cannot be ascertained, the first ascertainable price paid for the materials in the European Union.

For each type of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specify the exact value per unit of the shown in column 1.

([5]) The European Union, 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from which the materias originate.

([6]) Country, group of countries or territory concerned.

([7]) To be completed where necessary, only for goods having preferential originating status in the context of preferential trade relations with one of the countries with which 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n of origin is applicable.

([8]) Give the dates. The period should not exceed 24 months.

([9]) Place and date.

([10]) Name and function, name and address of company.

([11]) Signature.

자료: UCC IA ANNEX 22-18

다. 일반특혜관세(GSP)

□ GSP의 원칙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합의되었으며, 특정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는 특혜임[448]

○ 특혜는 공여국인 선진국과 수혜국인 개발도상국 간의 협상에 따른 것이 아니며, 공여국이 수혜국에게 비상호적으로 우대하는 제도임

○ GSP에 따른 원산지규정은 각 공여국마다 다르며, EU는 UCC DA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수혜국의 원산지물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함

□ EU는 GSP를 Standard GSP, GPS+, EBA(Everything But Arms)로 구분하여 수혜국, 특혜공여 수준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449]

○ Standard GSP는 일반약정의 특혜를 제공하며, GPS+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올바른 거버넌스를 위한 특별우대를 부여함

○ EBA는 최빈개발도상국에게 제공되는 특혜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할당을 면제함[450]

〈표 2-Ⅵ-2〉 GSP 수혜국(2023년 기준)

Standard GSP	GPS+	EBA	
콩고	볼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말라위
쿡 아일랜드	카보베르데	앙골라	말리
인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모리타니
인도네시아	몽골	베냉	모잠비크
케냐	파키스탄	부탄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필리핀	부르키나파소	네팔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부룬디	니제르

448)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generalised-system-preferences_en, 검색일자: 2023. 11. 21.
449) Regulation (EU) No 978/2012 제1조 제2항
450)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generalised-system-preferences_en, 검색일자: 2023. 11. 21.

〈표 2-Ⅵ-2〉의 계속

Standard GSP	GPS+	EBA	
니우에	우즈베키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시리아		차드	상투메 프린시페
타지키스탄		코모로스 섬	세네갈
		콩고민주공화국	시에라리온
		지부티	솔로몬 제도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남수단
		잠비아	수단
		기니	탄자이나
		기니비사우	동티모르
		아이티	토고
		키리바시	투발루
		라오스	바누아투
		레소토	예멘
		라이베리아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자료: EU 집행위원회, “List of GSP beneficiary countries,” 2023. 1. 1.

1) 원산지결정

□ 원산지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관련 수혜국에서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 물품은 수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됨[451]

○ 해당 국가에서 완전하게 획득한 물품

○ 해당 국가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않았으나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재료를 통합하여 해당 국가에서 획득한 물품

□ 다음의 물품은 수혜국에서 완전히 획득한 것으로 간주함[452]

○ 토양 또는 해저에서 추출된 광물성 제품

451) UCC DA 제41조 내지 제42조
452) UCC DA 제44조

○ 수혜국에서 재배되거나 수확된 식물성 제품
○ 수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살아있는 동물
○ 수혜국에서 자란 살아있는 동물의 제품
○ 수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 도축된 동물의 제품
○ 수혜국에서 낚시 또는 사냥된 제품
○ 수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의 양식 제품
○ 수혜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해당 국가의 영해 밖에서 획득한 해상어업 또는 기타 제품
○ 수혜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공장 선박에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해상어업 또는 기타 제품으로부터 획득 또는 생산한 물품
○ 수혜국에서 수거된 원재료 회수에 적합한 중고품
○ 수혜국에서 수행되는 제조작업에서 발생하는 웨이스트 및 스크랩
○ 배타적 권리를 갖는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하층토에서 채취한 제품
○ 상기에서 명시한 제품으로만 생산된 물품

□ 수혜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물품은 UCC DA 부속서 22-03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혜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됨[453]
○ 하나의 국가에서 원산지지위를 획득한 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추가로 가공되어 다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되지 않음

□ 다만 다음의 공정 또는 작업은 UCC DA 부속서 22-03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공정 또는 작업으로 간주하지 않음[454]
○ 운송 및 보관 중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 포장 해체 및 조립
○ 세척, 청소, 먼지·산화물·오일·페인트·기타 흔적 제거
○ 직물·직물제품의 다림질 또는 프레싱

453) UCC DA 제45조
454) UCC DA 제47조

○ 간단한 페인팅 및 연마 작업
○ 쌀의 탈피 및 부분 또는 전체 도정, 곡물 및 쌀의 연마 및 광택
○ 설탕을 착색하거나 맛을 내는 작업, 설탕으로 덩어리를 만드는 작업, 설탕결정의 부분 또는 전체 도정
○ 과일·견과류·채소의 껍질 벗기기, 씨 제거, 껍데기 까기
○ 갈음질, 단순 연삭, 단순 절단
○ 선별, 구분, 분류, 등급 구분, 매칭, 세트 구성
○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넣기, 카드 또는 판에 고정, 기타 모든 단순 포장공정
○ 마크, 라벨, 로고, 기타 유사한 구별 표시를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부착 또는 인쇄
○ 종류가 다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설탕과 다른 재료의 혼합
○ 단순한 물 첨가, 물품의 희석, 탈수, 변성
○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완제품을 부품으로 분해
○ 동물 도축
○ 상기에서 명시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원산지증명

□ 수혜국에서 EU로 수출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양식 A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며, 총 가치가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송장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음[455]
○ 원산지증명서 양식 A는 UCC IA 부속서 22-08에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발급됨[456]
○ 송장신고서는 송장, 인도장 또는 기타 상업문서에 타자, 날인 또는 인쇄하여 프랑스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수출자가 작성해야 하며 수출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함
○ 송장신고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원산지신고문구는 UCC IA 부속서 22-09에 따름

455)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generalised-system-preferences_en, 검색일자: 2023. 11. 21.
456) UCC IA 제74조

[그림 2-Ⅵ-7] GSP 원산지증명서 양식 A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 Issued in .....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4. For official use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자료: UCC IA ANNEX 22-08

[그림 2-Ⅵ-8] GSP 송장신고서 원산지신고문구

French version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autorisation douanière no … (1)] dé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éférentielle … (2) au sens des règles d'origine du Système des préférences tarifaires généralisées de l'Union européenne et … (3).

English version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2) according to rules of origin of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of the European Union and … (3).

Spanish version
El exportador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documento (autorización aduanera no … (1)) declara que, salvo indicación en sentido contrario, estos productos gozan de un origen preferencial … (2) en el sentido de las normas de origen del Sistema de preferencias generalizado de la Unión europea y …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5)

(1) When the invoice declaration is made out by an approved European Union's exporter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77(4) of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ing certain provisions of Regulation (EU) No 952/2013 (See page 558 of this Official Journal.), the authorisation number of the approved exporter must be entered in this space. When (as will always be the case with invoice declarations made out in beneficiary countries) the invoice declaration is not made out by an approved exporter, the words in brackets shall be omitted or the space left blank.
(2) Country of origin of products to be indicated. When the invoice declaration relates, in whole or in part, to products originating in Ceuta and Melilla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2 of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the exporter must clearly indicate them in the document on which the declaration is made out by means of the symbol 'CM'.
(3) Where appropriate, enter one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EU cumulation', 'Norway cumulation', 'Switzerland cumulation', 'Turkey cumulation', 'regional cumulation', 'extended cumulation with country x' or 'Cumul UE', 'Cumul Norvège', 'Cumul Suisse', 'Cumul Turquie', 'cumul regional', 'cumul étendu avec le pays x' or 'Acumulación UE','Acumulación Noruega', 'Acumulación Suiza', 'Acumulación Turquía', 'Acumulación regional', 'Acumulación ampliada con en país x'.
(4) These indications may be omitted if the information is contained on the document itself.
(5) See Article 77(7) of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concerns approved European Union's exporters only). In cases where the exporter is not required to sign, the exemption of signature also implies the exemption of the name of the signatory.

자료: UCC IA ANNEX 22-09

□ 한편 EU는 공공기관의 원산지인증시스템을 2017년 1월 1일부터 등록수출자 시스템(Registered Exporters system; REX system)으로 대체하고, GSP 수혜국에게 2020년 6월 30일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함[457]

○ REX 시스템은 물품의 원산지를 인증할 권한이 있는 수출업자를 등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모든 GSP 수혜국은 이를 사용해야 함

- 특정 FTA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증수출자와 별도의 개념이며, 일부 FTA의 경우 REX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458]

□ 따라서 GSP 수혜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에 대한 진술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REX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459]

○ 수출자는 본사가 있거나 영구적으로 설립된 수혜국의 관할당국에 UCC IA 부속서 22-06 양식을 사용하여 등록수출자 신청을 해야 함[460]

○ 다만 총 가치가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은 탁송품의 경우 미등록수출자가 원산지 진술을 할 수 있음

□ EU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에 대한 진술을 작성할 수 있으며, 원산지 진술서에는 수출자의 서명이 필요 없음[461]

○ 원산지 진술서는 수출자가 EU 내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UCC IA 부속서 22-07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돼야 함

○ 원산지진술서는 수출자와 관련 물품을 식별할 수 있는 상업서류에 작성될 수 있음

---

457)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generalised-system-preferences_en, 검색일자: 2023. 11. 21.; UCC IA 제78조

458) EU-캐나다 CETA, EU-일본 EPA, EU-베트남 FTA, EU-싱가포르 FTA, EU-영국 TCA, EU-코트디부아르 EPA, EU-가나 EPA, EU-ESA EPA(잠정)(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online-services/online-services-and-databases-customs/rex-registered-exporter-system_en, 검색일자: 2023. 11. 21.)

459)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online-services/online-services-and-databases-customs/rex-registered-exporter-system_en, 검색일자: 2023. 11. 21.

460) UCC IA 제84조 제1항

461) UCC IA 제92조

[그림 2-Ⅵ-9] 등록수출자 발급 원산지진술서 세부사항

Statement on origin
To be made out on any commercial documents showing the name and full address of the exporter and consignee as well as a description of the products and the date of issue (1).

French version
L'exportateur … (Numéro d'exportateur enregistré (2), (3), (4))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dé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éférentielle … (5) au sens des règles d'origine du Système des préférences tarifaires généralisées de l'Union européenne et que le critère d'origine satisfait est … … (6)

English version
The exporter … (Number of Registered Exporter (2), (3), (4))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5) according to rules of origin of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at the origin criterion met is … … (6).

Spanish version
El exportador … (Número de exportador registrado (2), (3), (4))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documento declara que, salvo indicación en sentido contrario, estos productos gozan de un origen preferencial … (5)) en el sentido de las normas de origen del Sistema de preferencias generalizado de la Unión europea y que el criterio de origen satisfecho es … … (6).

(1) Where the statement on origin replaces another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1(2) and (3) of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ing certain provisions of Regulation (EU) No 952/2013 (See page 558 of this Official Journal.), the replacement statement on origin shall bear the mention 'Replacement statement' or 'Attestation de remplacement' or 'Comunicación de sustitución'. The replacement shall also indicate the date of issue of the initial statement and all other necessary data according to Article 82(6) of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2) Where the statement on origin replaces another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1 of Article 101(2) and paragraph (3) of Article 101, both of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the re-consignor of the goods making out such a statement shall indicate his name and full address followed by his number of registered exporter.
(3) Where the statement on origin replaces another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2 of Article 101(2) of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the re-consignor of the goods making out such a statement shall indicate his name and full address followed by the mention (French version) 'agissant sur la base de l'attestation

[그림 2-Ⅵ-9]의 계속

d'origine établie par [nom et adresse complète de l'exportateur dans le pays bénéficiaire], enregistré sous le numéro suivant [Numéro d'exportateur enregistré dans le pays bénéficiaire]', (English version) 'acting on the basis of the statement on origin made out by [name and complete address of the exporter in the beneficiary country], registered under the following number [Number of Registered Exporter of the exporter in the beneficiary country]', (Spanish version) 'actuando sobre la base de la comunicación extendida por [nombre y dirección completa del exportador en el país beneficiario], registrado con el número siguiente [Número de exportador registrado del exportador en el país beneficiario]'.

(4) Where the statement on origin replaces another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1(2) of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the re-consignor of the goods shall indicate the number of registered exporter only if the value of originating products in the initial consignment exceeds EUR 6 000.

(5) Country of origin of products to be indicated. When the statement on origin relates, in whole or in part, to products originating in Ceuta and Melilla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2 of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the exporter must clearly indicate them in the document on which the statement is made out by means of the symbol 'XC/XL'.

(6) Products wholly obtained: enter the letter 'P'; Products 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 enter the letter 'W' followed by a heading of the Harmonised System (example 'W'9618).

Where appropriate, the above mention shall be replaced with one of the following indications:

(a) In the case of bilateral cumulation: 'EU cumulation', 'Cumul UE' or 'Acumulación UE'.

(b) In the case of cumulation with Norway, Switzerland or Turkey: 'Norway cumulation', 'Switzerland cumulation', 'Turkey cumulation', 'Cumul Norvège', 'Cumul Suisse', 'Cumul Turquie' or 'Acumulación Noruega', 'Acumulación Suiza', or 'Acumulación Turquía'.

(c) In the case of regional cumulation: 'regional cumulation', 'cumul regional' or 'Acumulación regional'.

(d) In the case of extended cumulation: 'extended cumulation with country x', 'cumul étendu avec le pays x' or 'Acumulación ampliada con el país x'.

자료: UCC IA ANNEX 22-07

Ⅶ. 보세제도

1. 보세구역

□ 보관 절차에 따라 비EU 물품을 EU 관세영역에서 수입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보관할 수 있음[462]

○ 보관 절차하에 있는 물품은 수입관세뿐 아니라 다음을 적용받지 않음

-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 비용
- 통상정책상의 조치, 다만 EU 관세영역으로 물품 반입 또는 EU 관세영역에서 물품 반출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EU 물품은 관세법령 또는 다른 EU 법령에 따르거나 수입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에 따른 혜택을 위해 보관절차하에 둘 수 있음[463]

○ 세관당국은 경제적 필요가 있고 세관감독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 EU 물품을 보세창고 용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인가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물품은 보세창고 절차하에 있다고 간주하지 않음

□ 물품을 보관절차하에 둘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야 함[464]

○ 다만 세관당국은 물품의 종류와 성질로 인하여 장시간 보관 시 인간, 동물, 식물의 건강 및 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보관절차가 종료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462) UCC 제237조 제1항
463) UCC 제237조 제2항 내지 제3항
464) UCC 제238조

가. 보세창고

□ 비EU 물품은 세관당국이 보세창고 절차를 위해 허가한 부지 및 기타 장소에 세관당국의 감독하에 보관할 수 있음[465]

○ 보세창고는 누구든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보세창고와 보세창고의 인가를 받은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민간보세창고가 있음

○ 보세창고하의 물품은 일시적으로 보세창고에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동 시에는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세관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함

□ 세관당국은 경제적 필요가 있고 세관감독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 보세창고 내에서 역내 가공절차 물품의 가공 또는 최종 사용절차 물품의 가공을 인가할 수 있음[466]

○ 이 경우 해당 물품은 보세창고 절차하에 있다고 간주하지 않음

□ 인가를 받은 자와 절차를 이행하는 자는 보세창고 절차 물품이 세관의 감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물품을 보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467]

○ 공공보세창고에 관한 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 시 이러한 책임을 절차를 이행하는 자만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음

나. 자유구역

□ 자유구역은 비EU 물품이 수입관세, 기타 부과금 및 상업정책 조치 없이 반입될 수 있는 EU 관세영역 내의 폐쇄된 구역임[468]

○ 자유구역의 물품은 기간 이후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되거나 다른 특별절차를 따르거나 재수출될 수 있음

---

465) UCC 제240조
466) UCC 제241조
467) UCC 제242조
468)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free-zones_en, 검색일자: 2023. 11. 7.

□ EU 회원국은 EU 관세영역의 일부를 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출입 지점을 명시해야 함[469]

○ 회원국은 운영 중인 자유구역의 정보를 EU 집행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함

□ 자유구역은 폐쇄된 구역이어야 하며, 자유구역 주변과 출입 지점은 세관의 감독하여야 함[470]

○ 자유구역을 출입하는 사람, 물품 및 운송수단은 세관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유구역 내에 건물을 건설할 때는 세관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세법령에 따라 산업적, 상업적, 서비스 활동을 허가받고, 사전에 통지해야 함[471]

○ 세관당국은 물품의 성질, 세관감독의 필요성, 보안 또는 안전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산업적, 상업적, 서비스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세관당국은 관세규정의 준수에 관해 필요한 보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자유무역 내에서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이 자유구역으로 반입되는 경우 세관에 제시되고 세관 형식을 따라야 하며, 이 외의 물품은 세관에 제시될 필요가 없음[472]

○ 물품이 EU 관세영역 밖에서 직접 자유구역으로 반입되는 경우

○ 물품이 자유구역 절차하에 있을 때 종료되거나 해제된 세관절차하에 여전히 있는 경우

○ 물품이 수입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에 대한 결정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자유구역 절차하에 있는 경우

○ 관세법령 이외의 법령이 세관 형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

---

469) UCC 제243조 제1항 내지 제2항
470) UCC 제243조 제3항 내지 제4항
471) UCC 제244조
472) UCC 제245조

□ EU 물품은 자유구역에서 반입, 보관, 이동, 사용, 가공 또는 소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유구역 절차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473]

○ 세관당국은 관련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물품의 EU 물품으로서의 관세 지위를 확정해야 함

- 자유구역으로 반입되는 EU 물품
- 자유구역 내에서 가공작업을 거친 EU 물품
- 자유구역 내에서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된 물품

□ 자유구역 내의 비EU 물품은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되거나 역내 가공·일시 반입·최종 사용 절차하에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유구역 절차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474]

○ 이 경우 물품의 사용이나 소비를 배제하지 않으며, 물품의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 또는 일시 반입에는 공통농업정책 또는 공통통상정책에 따른 수입관세 또는 수입에 관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또한 물품의 사용이나 소비의 경우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 또는 일시 반입을 위한 세관신고는 요구되지 않음

- 다만 물품이 관세할당 또는 관세상한의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됨

□ 자유구역에 있는 물품은 EU 관세영역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하거나 EU 관세영역의 다른 장소로 이동될 수 있음[475]

○ 자유구역에서 EU 관세영역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 수입물품의 반입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세 지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EU 물품으로 봄

- 다만 공통농업정책 또는 공통통상정책에서 정한 수출관세, 수출면허, 수출통제조치를 적용하는 때 이러한 물품은 EU 물품으로 봄

---

473) UCC 제246조
474) UCC 제247조
475) UCC 제248조 내지 제249조

2. 보세운송

가. 역외 통과

□ 역외 통과절차에 따라 비EU 물품은 수입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EU 관세영역 내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음[476]

○ 역외 통과절차하에 있는 물품은 수입관세뿐 아니라 다음을 적용받지 않음

-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 비용
- 통상정책상의 조치, 다만 EU 관세영역으로 물품 반입 또는 EU 관세영역에서 물품 반출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역외 통과절차에 따른 물품의 이동은 다음의 어느 한 방법에 의함[477]

○ 역외 EU 통과절차에 의한 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의 경우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른 방법

- 이동이 EU 관세영역 밖에서 시작됐거나 EU 관세영역 밖에서 종료되는 경우
- EU 관세영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의 영역을 통과해 EU 관세영역 내의 두 지점 간을 이동하는 경우

○ 통과 이동의 경우 「ATA 협약」, 「이스탄불 협약」에 따른 방법

○ 「라인강의 항행에 관한 개정조약」 제9조에 의한 방법

○ 「군대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 조약의 당사국 간의 협정」에서 규정되고 있는 양식 302에 의한 방법

○ 물품이 만국우편연합의 조치하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운송된 경우 그 조치에 기인한 우편제도에 의한 방법

---

476) UCC 제226조 제1항
477) UCC 제226조 제3항

나. 역내 통과

□ EU 물품은 역내 통과절차에 따라 관세상의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고 EU 관세영역 내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될 수 있음[478]

○ 또한 EU 관세영역 밖의 국가 또는 지역을 통과할 수 있음

□ 역내 통과절차에 따른 물품의 이동은 다음의 어느 한 방법에 의함[479]

○ 역내 EU 통과절차에 의한 방법, 다만 국제 협정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른 방법

○ 통과 이동의 경우 「ATA 협약」, 「이스탄불 협약」에 따른 방법

○ 「라인강의 항행에 관한 개정조약」 제9조에 의한 방법

○ 「군대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 조약의 당사국 간의 협정」에서 규정되고 있는 양식 302에 의한 방법

○ 물품이 만국우편연합의 조치하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운송된 경우 그 조치에 기인한 우편제도에 의한 방법

478) UCC 제227조 제1항
479) UCC 제227조 제2항

Ⅷ. 수출입요건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

□ 세관당국 및 기타 당국은 부문별 정책에 따라 다양한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통제를 EU의 국경에서 수행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금지 및 제한이라고 함[480]

○ 금지 및 제한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481]

- 전면 금지
- 전문 관할당국(보건, 식품안전 등)에 의한 국경에서의 필수 통제
- 수량관리시스템에 의한 수량제한
-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승인 또는 등록
- 당국의 인가·승인 또는 선적당국에 대한 통지
- 면허증, 허가증, 증명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서류의 첨부
- 제품의 시장출시 관리

○ 통상정책에 따른 조치는 세관감독의 본질적 차원에서 시행되지만 금지 및 제한에 해당하지는 않음

□ EU 관세영역에 반입된 물품은 그 반입 시점부터 세관의 감독대상으로 세관통제하에 둘 수 있으며, 금지 및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482]

○ 금지 및 제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화되는 때에 물품에 부과할 수 있음

---

480)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prohibitions-and-restrictions_en, 검색일자: 2023. 12. 20.
481) EU DG TAXUD, *Integrated EU prohibitions & restrictions list*, 2022, pp. 5~6
482) UCC 제134조

- 공중도덕, 공공정책 또는 공공보안
- 인간, 동물, 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 환경 보호
-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지는 국가의 문화재 보호
- 산업 및 상업용 재산의 보호(마약전구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및 현금의 통제 포함)

○ EU 물품으로 관세상의 지위가 결정되면 세관의 감독에서 제외되며, 비EU 물품은 관세상의 지위가 변경될 때까지 또는 EU 관세영역에서 반출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세관의 감독하에 놓임

□ EU 관세영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세관의 감독대상이며 세관의 통제대상이 될 수 있음[483]

○ EU 관세영역에서 반출돼야 하는 물품은 필요한 경우 다음을 근거로 한 금지 및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음

- 공중도덕, 공공정책 또는 공공보안
- 인간, 동물, 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 환경 보호
-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지는 국가의 문화재 보호
- 산업 및 상업용 재산의 보호(마약전구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및 EU에서 반출되는 현금의 통제 포함)

□ 이러한 금지 및 제한은 EU의 법령 전체에 분산되어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금지 및 제한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통합 금지 및 제한 목록[484]을 발표했음[485]

○ 해당 목록은 참조용으로 모든 금지 및 제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구속력도 없음

---

483) UCC 제367조 제1항, 제3항

484) Integrated EU prohibitions & restrictions list(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d2f48d8b-b0a4-11ec-83e1-01aa75ed71a1/language-en?WT.mc_id=Selectedpublications&WT.ria_c=51677&WT.ria_f=6954&WT.ria_ev=search&WT.URL=https%3A%2F%2Ftaxation-customs.ec.europa.eu%2F, 검색일자: 2023. 12. 20.)

485)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prohibitions-and-restrictions_en, 검색일자: 2023. 12. 20.

□ 해당 목록의 조치는 세관당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뿐 아니라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세관의 관여 여부가 달라지는 조치도 정보 제공을 위해 포함하고 있음[486]

○ 목록에는 이러한 조치를 규정하는 EU 법령의 링크와 그와 관련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2-Ⅷ-1] 금지 및 제한 목록 예시

CELEX	Act	Start	End	Replaced by	Eur-Lex
(FRAMEWORK LEGISLATION) Market surveillance and compliance of products					**GROW.D.3**
32019R1020	Regulation (EU) 2019/102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market surveillance and compliance of products and amending Directive 2004/42/EC and Regulations (EC) No 765/2008 and (EU) No 305/2011 (Text with EEA relevance.)	16/07/2021	31/12/2099		ALL TXT LSU
(FRAMEWORK LEGISLATION) Ecodesign					**GROW.I.3**
32009L0125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October 200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related products (Text with EEA relevance) *This Directive is a framework legislation. It is applicable through implementing measures. For more information, see https://ec.europa.eu/energy/topics/energy-efficiency/energy-efficient-products/list-regulations-product-groups-energy-efficient-products_en.*	20/11/2010	31/12/2099		ALL TXT LSU
(FRAMEWORK LEGISLATION) Ecolabel					**ENV.B.1**
32010R0066	Regulation (EC) No 66/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09 on the EU Ecolabel (Text with EEA relevance) *This Regulation is a framework legislation. The EU Ecolabel is a voluntary environmental labelling scheme. The use of the EU Ecolabel is subject to legal and contractual conditions that may be controlled when products with an Ecolabel enter the EU market. For more information, see: www.ecolabel.eu.*	19/02/2010	31/12/2099		ALL TXT LSU
(FRAMEWORK LEGISLATION) Energy Labelling					**ENER.B.3**
32017R1369	Regulation (EU) 2017/13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July 2017 setting a framework for energy labelling and repealing Directive 2010/30/EU (Text with EEA relevance.) *This Regulation is a framework legislation. It is applicable through implementing measures. For more information, see https://ec.europa.eu/energy/topics/energy-efficiency/energy-efficient-products/list-regulations-product-groups-energy-efficient-products_en.*	01/08/2017	31/12/2099		ALL TXT LSU
(FRAMEWORK LEGISLATION) General product safety					**JUST.E.4**
32001L0095	Directive 2001/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December 2001 on general product safety (Text with EEA relevance)	15/01/2004	31/12/2099		ALL TXT LSU

자료: EU DG TAXUD(2022), p. 22

가. 소비자 제품 안전

□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물품이 EU에서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되기 전에 적절한 확인을 수행하는 것임[487]

○ 이를 위하여 EU 국경을 통과하는 무역흐름에 대한 전체 개요를 파악하고 있는 세

486) EU DG TAXUD(2022), p. 7
487)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prohibitions-and-restrictions/examples-prohibitions-and-restrictions_en, 검색일자: 2023. 12. 28.

관이 개입하여 시장감시당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EU의 제품 안전 요구사항은 일반제품 안전에 관한 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488]과 특정제품에 대한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음[489]

○ 일반제품 안전 지침은 장난감, 전기 및 전자 제품, 화장품, 화학제품 및 기타 특정제품에 적용되는 규정과 같은 부문별 법령을 보완함[490]

- 따라서 특정제품의 안전을 규율하는 EU 규정에 동일한 목적을 가진 특정조항이 없는 소비자 제품에 적용됨

○ 또한 일반제품 안전 지침은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일반제품 안전 지침에 따르면 안전한 제품만 EU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유럽 표준화기구에서 개발하여 EU 공식저널(EU Official Journal)[491]에 게시된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은 안전한 것으로 간주됨[492]

○ 장난감, 전자제품, 자동차 등은 제품별 법령에 따라 표준이 마련되며, 기타 제품별 법령이 없는 제품은 일반제품 안전 지침에 따른 표준을 준수해야 함

○ 표준이 참조하는 제품별 법령 및 규정은 다음 표와 같음

488) Directive 2001/95/EC
489)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prohibitions-and-restrictions/examples-prohibitions-and-restrictions_en, 검색일자: 2023. 12. 28.
490) EU 집행위원회,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product-safety-and-requirements/product-safety/consumer-product-safety_en, 검색일자: 2023. 12. 28.
491) https://eur-lex.europa.eu/oj/direct-access.html
492) EU 집행위원회,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product-safety-and-requirements/product-safety/standards-and-risks-specific-products_en, 검색일자: 2023. 12. 28.

〈표 2-Ⅷ-1〉 제품별 표준 참조 규정

제품	규정	제품	규정
일반제품	Directive 2001/95/EC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Directive 90/385/EEC
화학물질	Regulation(EC) 1907/2006		
민간용 폭발물	Directive 2014/28/EU	측정기	Directive 2014/32/EU
비료제품	Regulation(EU) 2019/1009	비자동 계량장비	Directive 2014/31/EU
불꽃용품	Directive 2013/29/EU	케이블카 설비	Regulation(EU) 2016/424
건축제품	Directive 89/106/EEC Regulation(EU) 305/2011	가스기기	Regulation(EU) 2016/426
		농약살포 기기	Directive 2009/128/EC
화장품	Regulation(EC) 1223/2009	리프트	Directive 2014/33/EU
개인보호장비	Regulation(EU) 2016/425	기계	Directive 2006/42/EC Regulation(EU) 2023/1230
장난감	Directive 2009/48/EC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Directive 2009/125/EC Regulation(EU) 2017/1369	압력장비	Directive 2014/68/EU
		철도시스템	Directive(EU) 2016/797
전자파 적합성	Directive 2014/30/EU	개인용 선박	Directive 2013/53/EU
폭발성 기체용 장비	Directive 2014/34/EU	단순 압력용기	Directive 2014/29/EU
저전압	Directive 2014/35/EU	무인항공기 시스템	Regulation(EU) 2019/945
무선장비	Directive 2014/53/EU		
특정 유해물질	Directive 2011/65/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Directive 94/62/EC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Regulation(EU) 2017/746 Directive 98/79/EC	플라스틱 캡과 뚜껑	Directive(EU) 2019/904
의료기기	Regulation(EU) 2017/745 Directive 93/42/EEC		

자료: EU 집행위원회,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_en, 검색일자: 2023. 12. 2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편 일반제품 안전 지침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제품 안전 규정(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493]으로 대체될 예정임[494]

○ 새로운 일반제품 안전 규정은 2023년 6월 12일에 발효되어 202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됨

493) Regulation(EU) 2023/988

494) EU 집행위원회,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product-safety-and-requirements/product-safety/consumer-product-safety_en, 검색일자: 2023. 12. 28.

□ 일반제품 안전 규정에 따르면 EU 및 EEA의 국가당국과 EU 집행위원회는 안전 게이트 신속 경보 시스템[495]을 통해 위험한 비식품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음[496]

○ 이를 통해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은 추적이 가능하며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

○ 시스템에 참여하는 국가에서 위험한 제품이 발견되어 해당 국가당국의 조치가 취해지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 제품과 관련된 위험 및 조치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에 전송해야 함

○ 해당 국가당국에서 전송된 정보는 매일 시스템에 게시되어 참여국 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짐

나. 식품 안전 및 위생

□ 질병, 해충 또는 오염물질로부터 인간, 동물 및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세관당국 및 관련 관할당국은 위험분석에 기반하여 물품을 통제함[497]

○ 건강보호를 위한 농업, 축산업, 식품생산 부문에 대한 모든 EU 법령 및 표준은 EU 내의 전체 식품생산 및 가공공정은 물론 수입 및 수출 물품에도 적용됨[498]

□ EU의 식품안전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단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499]

○ EU 법령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체 식품 공급망을 통합하여 모든 식품 및 모든

---

495) https://ec.europa.eu/safety-gate/#/screen/home

496) EU 집행위원회,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product-safety-and-requirements/product-safety/consumer-product-safety_en, 검색일자: 2023. 12. 28.

497)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prohibitions-and-restrictions/examples-prohibitions-and-restrictions_en, 검색일자: 2023. 12. 28.

498) EU, https://european-union.europa.eu/priorities-and-actions/actions-topic/food-safety_en, 검색일자: 2023. 12. 29.

499) EUR-Lex, https://eur-lex.europa.eu/summary/chapter/food_safety.html?root_default=SUM_1_CODED%3D30&locale=en, 검색일자: 2023. 12. 29.

식품 관련 운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하고 투명한 위생 정책의 기준을 제공함[500]

□ 식품 안전에 관한 EU 규정은 인간이 섭취할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시장 출시의 모든 단계를 다루고 있음[501]

○ Regulation(EC) 178/2002는 식품법의 일반원칙과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유럽식품안전청 설립 및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

○ Regulation(EC) 852/2004, Regulation(EC) 853/2004는 식품 사업자와 동물성 식품 사업자에 대한 위생에 관한 일반규칙을 정함

○ Regulation(EU) 2017/625은 1차 생산, 식품가공의 위생조건, 포장, 라벨링 및 식품안전 규정 준수에 대한 공식 통제를 다룸

□ EU로 수입되는 식품은 Regulation(EC) 178/2002에 명시된 일반요건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을 충족해야 함[502]

○ EU 시장출시를 위해 수입되는 식품은 식품법의 요구사항이나 EU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함[503]

○ 또한 EU와 수출국 간에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함

□ 또한 EU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은 Regulation(EC) 178/2002에 명시된 일반요건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을 충족해야 함[504]

○ 제3국의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EU에서 수출되는 식품은 수입당국이 요청하거나 수

500) EU 집행위원회, https://food.ec.europa.eu/safety/biological-safety/food-hygiene_en, 검색일자: 2023. 12. 29.
501) EU 집행위원회, https://food.ec.europa.eu/safety/biological-safety/food-hygiene/legislation_en, 검색일자: 2023. 12. 29.
502) Regulation(EC) 852/2004 전문 제21항
503) Regulation(EC) 178/2002 제11조
504) Regulation(EC) 852/2004 전문 제22항

입국에서 시행될 수 있는 법령, 규정, 표준, 관행 및 기타 법적·행정적 절차에 제정되지 않는 한 식품법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505]

○ 또한 이외의 경우 식품을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는 이유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목적지 국가의 당국이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식품을 수출할 수 있음

○ EU 또는 회원국 중 하나와 제3국 간에 체결된 협정의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EU 또는 해당 회원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은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한편 Regulation(EC) 852/2004는 EU로 수입되거나 EU에서 수출되는 식품의 특정 위생 요구사항을 규정하면서 식품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506]

○ 식품 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가 규정에 명시된 관련 위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507]

□ 1차 생산 및 1차 생산품을 운송, 보관, 취급하는 사업자는 Regulation(EC) 852/2004의 부속서Ⅰ Part A에 규정된 일반 위생규정을 준수해야 함[508]

○ 식품 사업자는 1차 생산품이 이후에 거치게 될 모든 가공을 고려하여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해야 함[509]

○ 또한 생산 및 관련 작업의 위험관리에 관한 적절한 EU 및 회원국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식품 사업자는 국가 감독 중에 확인된 문제를 알게 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

□ 1차 생산 및 관련 작업 이후 식품의 생산, 가공 및 유통단계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Regulation(EC) 852/2004의 부속서Ⅱ에 규정된 일반 위생규정을 준수해야 함[510]

○ 식품 시설은 청결해야 하며 양호한 상태로 수리 및 유지돼야 하고, 규정된 배치, 설계,

505) Regulation(EC) 178/2002 제12조
506) Regulation(EC) 852/2004 전문 제21항 내지 제22항, 제10조 내지 제11조
507) Regulation(EC) 852/2004 제3조
508) Regulation(EC) 852/2004 제4조 제1항
509) Regulation(EC) 852/2004 Annex Ⅰ. Part A.
510) Regulation(EC) 852/2004 제4조 제2항

건축, 부지 및 규모를 준수해야 함[511]

○ 식품을 준비, 취급, 가공하는 공간의 설계 및 배치는 작업 중의 보호를 포함하여 우수한 식품위생 관행을 따라야 함

○ 식품 운반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용기는 청결해야 하며,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양호한 상태로 수리 및 유지돼야 하고, 적절한 정소 또는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돼야 함

□ 이뿐만 아니라 식품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위생조치를 취해야 함[512]

○ 식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기준 준수

○ 해당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 식품에 대한 온도제어 요구사항 준수

○ 콜드체인 유지관리

○ 샘플링 및 분석

□ 식품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HACCP 원칙에 기초한 절차를 마련하고 실행하며 유지해야 함[513]

○ 예방,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돼야 하는 모든 위험을 식별함

○ 위험을 예방,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통제가 필수적인 단계에서 통제 지점을 식별함

○ 식별된 위험의 예방, 제거 또는 감소를 위해 수용 가능성과 수용 불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통제 지점에 기준을 설정함

○ 중요 통제 지점에서 효과적인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고 구현함

○ 모니터링 시 통제 지점이 통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시정조치를 수립함

○ 상기의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절차를 수립함

---

511) Regulation(EC) 852/2004 Annex Ⅱ.
512) Regulation(EC) 852/2004 제4조 제3항
513) Regulation(EC) 852/2004 제5조

○ 상기 조치의 효과적인 작동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체의 성격과 규모에 상응하는 문서 및 기록을 설정함

□ 식품 사업자는 EU 법령에 따라 또는 국내 법령에 따라 관할 당국과 협력해야 함[514]

○ 모든 식품 사업자는 식품의 생산, 가공 및 유통단계를 수행하는 각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설의 등록을 위해 관할당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지해야 함

○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식품 사업자는 1회 이상 현장방문 후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환경보호

1) 멸종위기종

□ EU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에 따라 멸종위기종에 대한 통제를 시행함[515]

○ CITES는 협약이 적용되는 동식물종의 모든 수입, 수출 및 재수출이 허가 및 인증 시스템을 통해 승인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CITES가 적용되는 동식물종은 위협의 정도의 따라 무역통제를 통해 보호받는 수준이 다르며, CITES는 필요한 보호수준에 따라 동식물종을 3가지로 구분함[516]

○ 부록Ⅰ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종의 거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됨

○ 부록Ⅱ에는 멸종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생존과 양립할 수 없는 이용을 방지하기

514) Regulation(EC) 852/2004 제6조

515) EU DG ENV,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nature-and-biodiversity/wildlife-trade_en, 검색일자: 2024. 1. 10.

516) EU DG ENV,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nature-and-biodiversity/wildlife-trade_en, 검색일자: 2024. 1. 10.

위해 거래를 통제해야 하는 종이 포함됨

○ 부록Ⅲ은 최소 하나의 국가에서 보호되고, 무역통제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지원이 필요한 종이 포함됨

□ EU는 CITES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EU 모든 회원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EU 야생동물거래규정」을 마련하고 있음[517]

○ 「EU 야생동물거래규정」은 다음의 규정들로 구성됨

- 동식물종의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규정인 Council Regulation(EC) 338/97
- 기본규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측면을 다루는 Council Regulation(EC) 865/2006
- 기본규정 및 이행규정에 따른 허가, 인증서 및 기타 서류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는 Council Regulation(EU) 792/2012

□ EU는 야생동물제품이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원산지인 경우에만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기본규정의 부록에 통제되는 종의 목록을 마련함[518]

○ 부록 A에는 다음이 포함됨

- EU 회원국이 유보한 경우를 제외한 CITES 부록Ⅰ
- EU 회원국이 보다 엄격한 역내 조치를 채택한 일부 CITES 부록Ⅱ 및 Ⅲ
- CITES가 아닌 일부 종

○ 부록 B에는 다음이 포함됨

- EU 회원국이 유보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모든 CITES 부록Ⅱ
- 일부 CITES 부록Ⅲ

---

517) EU DG ENV,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nature-and-biodiversity/wildlife-trade_en, 검색일자: 2024. 1. 10.

518) EU DG ENV,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nature-and-biodiversity/wildlife-trade_en, 검색일자: 2024. 1. 10.

- CITES가 아닌 일부 종

○ 부록 C에는 다음이 포함됨

- EU 회원국이 유보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모든 CITES 부록Ⅲ

○ 부록 D에는 다음이 포함됨

- EU 회원국이 유보한 일부 CITES 부록Ⅲ
- 「서식지 지침(Council Directive 92/43/EEC)」, 「조류지침(Directive 79/409/EEC)」 등 자생종 보호에 관한 기타 EU 규정에 따른 CITES가 아닌 일부 종

2) 불법어업

□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unreported·unregulated; IUU)어업은 어류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서식지를 파괴하며, 경쟁을 왜곡함[519]

○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이란 다음의 어업활동을 총칭함[520]

- 국가의 허가없이 또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그 국가의 관할수역에서 자국민 또는 외국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
-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국가의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를 하는 어업활동
-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적용수역에서 무국적어선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 또는 그 기구의 비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 또는 어업실체에 의하여 그 기구의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어업활동

□ EU는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방지, 저지, 근절하기 위해 「IUU 규정(Council Regulation(EC) 1005/2008)」을 제정하여 2010년 1월부터 발효함[521]

---

519) EU DG MARE,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fisheries/rules/illegal-fishing_en, 검색일자: 2024. 1. 11.

520) 해양수산부 용어사전, https://www.mof.go.kr/dictionary/selectDictionary.do?dictionaryKey=429&recordCountPerPage=&menuSeq=928&searchEtc1=&searchInitial=&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bbsSeq=&searchValue=IUU&currentPageNo=1, 검색일자: 2024. 1. 11.

○ 집행위원회는 「IUU 규정」의 일관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함

□ 「IUU 규정」에 따라 관할기구가 승인한 어획증명서가 첨부된 해양수산물만 EU로 수입될 수 있음[522]

○ EU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수산물의 어획증명서 확인 및 검증을 간소화하는 시스템으로 CATCH를 운영하며, 2026년 1월 10일부터 사용이 의무화 됨

□ 또한 EU는 국가가 불법어업활동을 묵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523]

○ 집행위원회는 먼저 경고를 발행한 후 여전히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비협력국가로 식별하여 해당 국가의 수산물을 EU 시장에서 금지시킴

〈표 2-Ⅷ-2〉 IUU 경고·비협력국가 목록

국가명	경고		비협력		
	식별	취소	식별	등록	삭제
브라질	2012. 11.	-	2013. 11.	2014. 3.	2014. 12.
캄보디아	2012. 11	-	2013. 11	2014. 3.	
카메룬	2021. 2.	-	2023. 1.	2023. 2.	
코모로	2015. 10.	-	2017. 5.	2017. 7.	
큐라소	2013. 11.	2017. 2.			
에콰도르	2019. 10.				
피지	2012. 11.	2014. 10.			
가나	2013. 11. 2021. 6	2015. 10			
키리바시	2013. 4.	2020. 12.			

521) EU DG MARE,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fisheries/rules/illegal-fishing_en, 검색일자: 2024. 1. 11.
522) EU DG MARE,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fisheries/rules/illegal-fishing_en, 검색일자: 2024. 1. 11.
523) EU DG MARE,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fisheries/rules/illegal-fishing_en, 검색일자: 2024. 1. 11.

〈표 2-Ⅷ-2〉의 계속

국가명	경고		비협력		
	식별	취소	식별	등록	삭제
한국	2013. 11.	2015. 4.			
라이베리아	2017. 5				
파나마	2012. 11. 2019. 12.	2014. 10.			
파푸아뉴기니	2014. 6.	2015. 10.			
필리핀	2014. 6.	2015. 4.			
기니	2012. 11.	-	2013. 11.	2014. 3.	2016. 10.
시에라리온	2016. 4.				
솔로몬제도	2014. 12.	2017. 2.			
스리랑카	2012. 11.	-	2014. 10.	2015. 2.	2016. 6.
성빈센트그레나딘	2014. 12.				
대만	2015. 10.	2019. 6.			
태국	2015. 4.	2019. 1.			
토고	2012. 11.	2014. 10.			
트리니다드토바고	2016. 4.	-	2023. 9.	2023. 11.	
투발루	2014. 12.	2018. 7.			
바누아투	2012. 11.	2014. 10.			
베트남	2017. 10.				

자료: EU DG MARE,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system/files/2023-11/illegal-fishing-overview-of-existing-procedures-third-countries_en.pdf, 검색일자: 2024. 1. 11.

3) 폐기물

□ 폐기물은 2차 원료로 활용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독성 폐기물이 통제되지 않는 경우 환경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524]

○ 그러나 경제성장과 세계화로 인하여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운송되는 폐기물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524) EU DG ENV,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waste-shipments_en, 검색일자: 2024. 1. 11.

□ EU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폐기물 운송에 관한 법령에 국경을 넘어 운송되는 폐기물에 대한 규칙을 포함함[525]

○ 폐기물 운송에 관한 법령은 다음으로 구성됨

- 폐기물 운송 규정 Regulation(EC) 1013/2006
- 비OECD 국가로의 녹색지정 폐기물 수출에 관한 규정 Regulation(EC) 1418/2007
- 플라스틱 폐기물 운송에 대한 규정 Delegated Regulation(EU) 2020/2174
- 관세코드와 폐기물 코드 간의 예비 상관관계표를 설정하는 규정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6/1245

□ 폐기물 운송 규정 및 플라스틱 폐기물 운송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은 유형과 목적지에 따라 수출입 절차가 다르게 적용되며, 각 국가 관할 당국 및 세관에서 통제를 수행함[526]

○ 유해 폐기물 및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EU에서 비OECD 국가로 수출하는 것은 금지됨

○ 재활용이 가능한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은 EU에서 비OECD 국가로 수출하기 위한 승인이 필요함

○ 유해 폐기물 및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EU에서 OECD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또는 EU로 수입하는 경우 사전 신고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 선적을 승인해야 함

○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 즉 녹색지정 폐기물을 EU 및 OECD 국가 내에서 운송하는 경우 사전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정보 제공이 요구됨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11월 17일 폐기물 운송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고 2023년 11월 16일 의회가 동의하였으며, 2년 이내에 적용하기로 함[527]

---

525) EU DG ENV,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waste-shipments_en, 검색일자: 2024. 1. 11.

526) EU DG ENV,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waste-shipments/plastic-waste-shipments_en, 검색일자: 2024. 1. 11.

527) EU DG ENV,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waste-shipments_en, 검색일자: 2024. 1. 11.

○ 새로운 규정은 EU가 폐기물 문제를 제3국으로 넘기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순환적인 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폐기물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
- 디지털 절차를 포함하여 회원국 간 폐기물 운송에 대한 현대화된 규칙
- 불법 폐기물 운송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

2. 수출입규제

□ 수출입규제, 즉 무역방어수단은 국제무역 왜곡으로부터 EU 생산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써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한 수단임[528]
○ 불공정 무역행위 발생 시 공정성과 공평한 경쟁시장을 복원하기 위해 EU는 무역방어 수단을 이용함

가. 덤핑방지조치

□ 덤핑방지조치는 비EU 제조업체가 EU 내 시장에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덤핑행위에 대응하는 조치임[529]
○ 정상가격은 비EU 제조업체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물품가격이나 생산비용과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임

1) 덤핑방지조사[530]

528)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_en, 검색일자: 2024. 1. 12.
529)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dumping-measures_en, 검색일자: 2024. 1. 12.
530)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dumping-measures_en, 검색일자: 2024. 1. 12.

□ 집행위원회는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EU로 수입되어 EU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시작함

○ 일반적으로 이러한 근거는 덤핑 수입물품의 불공정 경쟁에 피해를 받는 EU 생산자들이 공식적으로 진정을 통해 집행위원회에 전달함

○ 특별한 경우 집행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기존 조치를 감시하면서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직권으로 우회방지 조사를 시작함

□ 집행위원회는 EU 공식저널에 게시함으로써 덤핑방지조사를 개시하고, 14개월 내에 조사 결과를 EU 공식저널에 발표해야 함

○ 조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며, 이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덤핑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련 국가의 생산자들에 의한 덤핑이 있는지 여부
- 관련 EU 산업이 물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지 여부
-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조치를 취하는 것이 EU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2) 덤핑방지조치[531]

□ 집행위원회의 덤핑방지조사 결과 정당성이 있는 경우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덤핑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덤핑방지조치는 종가관세의 형태로 부과되며, 고정 또는 특정 관세금액 또는 최소 수입가격과 같은 조치가 포함됨

□ 수출업자가 EU에서 최소금액 미만의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대신 약속이 수락될 수 있음

---

531)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dumping-measures_en, 검색일자: 2024. 1. 12.

○ 집행위원회가 약속에 동의하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집행위원회는 이를 모니터링 함

○ 가격약속은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가격 하한선 아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 수출자별 가격약속도 허용될 수 있음[532]

〈표 2-Ⅷ-3〉 EU가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

대상국가	물품명	조사개시일	조치일
인도, 튀르키예	ceramic tiles	2021-12-13	2023-02-10
인도네시아	fatty acid	2021-11-30	2023-01-19
모로코	aluminium road wheels	2021-11-17	2023-01-12
브라질, 중국	electrolytic chromium coated steel	2021-09-24	2022-11-16
러시아, 튀르키예	corrosion resistant steel	2021-06-24	2022-08-12
중국	certain graphite electrode systems	2021-02-17	2022-04-07
한국	superabsorbent polymers	2021-02-18	2022-04-06
중국	calcium silicon	2021-02-18	2022-03-24
중국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2020-12-21	2022-02-17
중국	steel wind towers	2020-10-21	2021-12-16
중국	aluminium converter foil	2020-10-22	2021-12-08
중국	optical fibre cables	2020-09-24	2021-11-18
인도네시아, 인도	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2020-09-30	2021-11-18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mono ethylene glycol	2020-10-14	2021-11-15
러시아	birch plywood	2020-10-14	2021-11-09
중국	aluminium flat-rolled products	2020-08-14	2021-10-11
튀르키예	certain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2020-05-14	2021-07-06
중국	aluminium extrusions	2020-02-14	2021-03-30
한국	certain heavyweight thermal paper	2019-10-10	2020-10-20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certain hot rolled stainless steel sheets and coils (sshr)	2019-08-12	2020-10-07
중국	certain polyvinyl alcohol (pva)	2019-07-30	2020-09-29

532)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dumping-measures/trade-defence-measures_en, 검색일자: 2024. 1. 12.

〈표 2-Ⅷ-3〉의 계속

대상국가	물품명	조사개시일	조치일
중국, 이집트	certain woven and/or stitched glass fibre fabrics	2019-02-21	2020-04-06
중국	steel road wheels	2019-02-15	2020-03-04
러시아, 미국, 트리니다드토바고,	ammonium nitrate	2018-08-13	2019-10-09
중국	electric bicycles	2017-10-20	2019-01-18
중국	new and retreaded tyres for buses or lorries	2017-08-11	2018-11-12
중국	certain corrosion resistant steel	2016-12-09	2018-02-08
중국	certain cast iron articles	2016-12-10	2018-01-30
브라질, 이란, 러시아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2016-07-07	2017-10-06
벨라루스	certain concrete reinforcement bars and rods	2016-03-31	2017-06-17
중국	certain 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ther than cast iron) or steel (other than stainless steel), of circular cross section, of an external diameter exceeding 406,4 mm	2016-02-13	2017-05-12
한국	lightweight thermal paper (lwtp)	2016-02-18	2017-05-03
중국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2016-02-13	2017-04-06
중국	heavy plates of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2016-02-13	2017-02-28
대만	stainless steel tube and pipe butt-welding fittings, whether or not finished	2015-10-29	2017-01-27
중국	stainless steel tube and pipe butt-welding fittings, whether or not finished	2015-10-29	2017-01-26
중국, 러시아	cold-rolled flat steel products	2015-05-14	2016-07-29
중국	aspartame	2015-05-30	2016-07-28
인도	tubes and pipes of ductile cast iron	2014-12-20	2016-03-18
중국	acesulfame potassium (ace-k)	2014-09-04	2015-10-31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 electrical steel (goes)	2014-08-14	2015-10-30

〈표 2-Ⅷ-3〉의 계속

대상국가	물품명	조사개시일	조치일
중국, 대만	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2014-06-26	2015-08-27
인도네시아	monosodium glutamate	2013-11-29	2015-01-22
중국	solar glass	2013-02-28	2014-05-14
인도	stainless steel wires	2012-08-10	2013-11-08
중국	ceramic tableware and kitchenware	2012-02-16	2013-05-15
중국, 태국	threaded tube or pipe cast fittings of malleable cast iron	2012-02-16	2013-05-14
중국	organic coated steel products	2011-12-21	2013-03-15
중국	aluminium foil in small rolls	2011-12-20	2013-03-13
러시아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2011-11-01	2013-01-29
중국	aluminium radiators	2011-08-12	2012-11-09
중국, 인도	oxalic acid	2011-01-26	2012-04-18
중국	seamless pipes and tubes of stainless steel	2010-09-30	2011-12-20
중국	ceramic tiles	2010-06-19	2011-09-15
중국	open mesh fabrics of glass fibre	2010-05-20	2011-08-09
중국	coated fine paper	2010-02-18	2011-05-14
중국	melamine	2010-02-18	2011-05-13
중국	glass fibre products (certain continuous filament)	2009-12-17	2011-03-15
중국	polyester yarn (high tenacity)	2009-09-08	2010-12-01
중국	aluminium road wheels	2009-08-13	2010-10-28
중국	sodium gluconate	2009-08-11	2010-10-28
중국	molybdenum wires	2009-04-08	2010-06-16
중국	aluminium foil (certain)	2008-07-12	2009-10-06
중국	wire rod	2008-05-08	2009-08-05
미국	biodiesel	2008-06-13	2009-07-10
중국	psc wires and strands	2008-02-16	2009-05-13
중국	citrus fruits (namely mandarins)	2007-10-20	2008-12-30
벨라루스, 중국, 러시아	welded tubes and pipes of iron or non-alloy steel	2007-09-26	2008-12-19
중국	citric acid	2007-09-04	2008-12-03

〈표 2-Ⅷ-3〉의 계속

대상국가	물품명	조사개시일	조치일
중국	monosodium glutamate	2007-09-05	2008-12-02
중국, 러시아	ferro-silicon	2006-11-30	2008-02-28
중국	peroxosulphates (persulphates)	2006-07-13	2007-10-11
태국	sweet corn (prepared or preserved in kernels)	2006-03-28	2007-06-20
중국	ironing boards	2006-02-04	2007-04-26
중국	tungsten electrodes	2005-12-17	2007-03-13
중국	chamois leather	2005-06-25	2006-09-14
중국	lever arch mechanisms	2005-04-28	2006-07-27
러시아, 우크라이나	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steel	2005-03-31	2006-06-29
중국	trichloroisocyanuric acid (tcca)	2004-07-10	2005-10-07
중국	hand pallet trucks	2004-04-29	2005-07-21
중국	okoumé plywood	2003-08-19	2004-11-12
인도	graphite electrode systems	2003-08-21	2004-09-18
중국, 인도네시아	sodium cyclamate	2002-12-19	2004-03-11
한국, 말레이시아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2001-06-01	2002-08-24
중국	sulphanilic acid	2001-07-06	2002-07-25
중국	steel ropes and cables	1998-05-20	1999-08-17
중국	ring binder mechanisms	1995-10-28	1997-01-24
중국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1994-02-03	1996-04-03
러시아	ammonium nitrate	1994-06-09	1995-08-23
중국	bicycles	1991-10-12	1993-09-09
중국	tungsten ores and concentrates, tungsten oxide and acid, tungsten carbide and fused tungsten carbide	1988-12-15	1990-09-27
중국	silicon metal	1989-01-01	1990-07-27

자료: WTO, https://trade-remedies.wto.org/en/antidumping/measures, 검색일자: 2024. 1. 15.

〈표 2-Ⅷ-4〉 EU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

시행국가	물품명	조사개시일	조치일
튀르키예	Hot-rolled flat steel	2021-01-09	2022-07-07
파키스탄	Cold rolled coils/sheets	2021-02-25	2022-02-03
태국	Tinplate	2020-04-07	2021-11-12
태국	Tin free steel	2020-05-15	2021-11-12
인도	Toluene Di-isocyanate (TDI)	2020-01-31	2021-04-27
중국	m-Cresol	2019-07-29	2021-01-14
중국	Ethylene propylene non conjugated diene rubber or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EPDM)	2019-06-19	2020-12-18
중국	Phenol	2018-03-26	2019-09-03
중국	Stainless steel billet and hot-rolled stainless steel plate (coil)	2018-07-23	2019-07-22
인도	Nylon filament yarn	2017-08-22	2018-10-05
중국	Halogenated butyl rubber	2017-08-30	2018-08-20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Herbicides	2017-01-16	2018-05-31
인도	Veneered engineered wooden flooring	2017-02-17	2018-03-27
모로코	Polyvinyl chloride	2015-06-25	2017-07-13
중국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2015-07-23	2016-07-23
인도	Normal butanol	2014-11-20	2016-04-13
중국	Unbleached sack paper	2015-04-10	2016-04-09
인도	2-Ethylhexanol	2014-11-20	2016-03-29
브라질	Presensitized offset aluminium printing plates	2014-02-25	2015-03-05
중국	Perchlorethylene	2013-05-31	2014-05-30
인도	Methylene chloride	2013-04-04	2014-05-21
중국	Certain alloy-steel seamless tubes and pipes for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service	2013-05-10	2014-05-09
중국	Toluidine	2012-06-29	2013-06-27
중국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2011-11-18	2013-01-25

〈표 2-Ⅷ-4〉의 계속

시행국가	물품명	조사개시일	조치일
중국	Photographic paper and paper board	2010-12-23	2012-03-22
중국	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	2010-04-22	2011-04-22
중국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2008-12-29	2010-06-28
중국	Polyamide-6	2009-04-29	2010-04-21
인도	Acetone	2006-09-07	2008-03-11
중국	Potato starch	2006-02-06	2007-02-06
중국	Chloroprene rubber	2003-11-10	2005-05-10

자료: WTO, https://trade-remedies.wto.org/en/antidumping/measures, 검색일자: 2024. 1. 15.

3) 덤핑방지재심사[533]

□ 덤핑방지조치는 일반적으로 5년간 부과되며, 이해관계인은 그 기간 동안 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는 중간 재심사, 신규 수출자 재심사, 흡수방지 재심사, 우회방지 재심사, 만료 재심사가 있음

□ 중간 재심사는 덤핑방지조치 기간 내에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는 것으로 모든 수출·입자, EU 생산자, EU 회원국, 집행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수출·입자, EU 생산자는 조치가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하여야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재심사가 개시되면 집행위원회는 이를 공식저널에 게시하며, 15개월 내에 재심사를 완료해야 함

□ 중간 재심사에서는 주로 조치의 수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피해, 조치 범위 및 형태와 같은 검토도 이루어짐

533)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dumping-measures/anti-dumping-reviews_en, 검색일자: 2024. 1. 12.

○ 예를 들어 수출자가 덤핑량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변화가 지속되고 덤핑마진이 향후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관세가 다시 계산됨

□ 신규 수출자 재심사는 조사 중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EU로 수출하지 않은 수출자가 개별 관세율을 설정하기 위해 요청함

○ 조사에 협조한 수출자의 관세율은 개별로 부과되지만, 그 외의 수출자에 대한 관세율은 수출국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신규 수출자가 개별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재심사에서는 요청자가 신규 수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개별 덤핑마진을 설정하여 개별 관세율을 적용함

○ 신규 수출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최초 조사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을 EU에 수출하지 않음
- 부과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련이 없음
- 최초 조사 이후 EU에 물품을 수출했거나 EU에 상당한 수량을 수출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

□ 한편, 덤핑방지조치 후 수출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입물품의 재판매가격이 상승하지 않아 조치가 기대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흡수방지 재심사가 이루어짐

○ 덤핑방지조치가 부과된 후 2년 내에 개시되며, 개시 후 9개월 내에 조사가 완료돼야 함

○ EU 생산자 및 사용자, 수출자, 수입자 등 관세 흡수의 증거를 발견한 모든 이해당사자는 집행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회원국 당국에 알릴 수 있음

□ 재심사에서 관세를 통해 발생해야 하지만 발생하지 않은 가격변동이 덤핑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덤핑마진을 다시 계산하여 최초 관세율의 두 배까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음

○ 재심사 시 EU 생산자 및 사용자, 수출자, 수입자에게 수출가격과 EU 내 재판매가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 또한 덤핑방지조치를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우회방지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비EU 국가에서 제조 또는 수출되는 특정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의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함

○ 이러한 활동은 다음과 같을 수 있음

-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CN코드로 분류될 수 있도록 물품을 약간 변경하는 것
-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것
-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생산자를 통해 수출하는 것
- 제품을 부품으로 수출하고 부품이 관세부과 대상이 아닌 EU 국가에서 조립하는 것 등

□ 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우회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거나 EU 회원국이 요청하고 이를 타당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경우 재심사를 개시함

○ 위원회가 재심사를 공식저널에 게시하면 세관당국은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수입물품을 등록함

□ 우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우회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 또는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확대되어 시행됨

○ 덤핑방지관세는 조사가 개시된 날짜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우회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의 수출자가 관세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개별 수출자에 대해 관세 확대를 면제할 수 있음

○ 이 경우 조치대상 생산자와 관련이 없거나 우회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해야 함

□ 마지막으로 덤핑방지조치가 만료되는 경우 덤핑 및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

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만료 재심사를 할 수 있음

○ 만료 재심사는 주로 EU 생산자가 요청하며, 덤핑 및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 제거는 시행 중인 조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조치가 만료되면 추가 덤핑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이 입증돼야 함

□ EU 생산자가 만료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조치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요청해야 하며, 만료 재심사가 요청되지 않으면 집행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종료됨을 알리는 만료 통지서를 발행함

○ 조치가 시행되는 마지막 해에 집행위원회는 공식저널에 해당 조치가 특정 날짜에 만료된다는 내용의 만료임박통지를 게시함

○ 이에 대해 만료 재심사가 요청되면 집행위원회는 재심사 통지서를 발행하고 조사를 시작하며, 재심사는 12개월 내에 완료되지만 최대 15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 만료 재심사는 시행 중인 조치의 폐지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하며, 조치가 지속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향후 5년간 조치가 유지됨

○ 만료 재심사로 관세의 수준이나 형태가 변경될 수 없으며, 이는 중간 재심사에서만 다루어짐

나. 상계조치

□ 상계조치는 부당한 보조금이 EU 시장을 왜곡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조성하여 EU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특정기업·산업 또는 이들의 그룹에 대해 취하는 조치임[534]

○ 보조금은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재정적 기부임

○ 보조금은 다음의 형태일 수 있음

534)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subsidy-measures_en, 검색일자: 2024. 1. 12.

- 보조금, 대출, 지분 투입, 대출 보증 등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자금 이체
- 세금공제 등 정부수입이 포기되거나 징수되지 않는 경우
- 인프라와 별도로 정부에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 정부의 물품 구매
- 정부의 지시에 따라 민간기업이 행하는 상기의 행위

1) 상계조사

□ 집행위원회는 비EU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EU로 수입되어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 EU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시작함[535]

○ 일반적으로 이러한 근거는 보조금 수혜 수입물품의 불공정 경쟁에 피해를 받는 EU 생산자들이 공식적으로 진정을 통해 집행위원회에 전달함

○ 특별한 경우 집행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또한 보조금 수혜 수입물품이 EU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함

□ 집행위원회는 유효한 EU 업계의 진정이 접수되면 45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고, EU 공식저널에 조사물품·국가, 이해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기한 등을 설명하는 개시통지를 게시함[536]

○ 개시통지와 함께 수출자, 수출당국, EU 생산자 및 수입자, 사용자에게 설문지가 전송되며,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당사자는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협력 당사자보다 불리한 상계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집행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13개월 이내에 최종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해야 함[537]

---

535)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subsidy-measures_en, 검색일자: 2024. 1. 12.

536)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subsidy-measures/anti-subsidy-investigations_en, 검색일자: 2024. 1. 12.

537)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

○ 조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며, 이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입물품이 상계가능한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지 여부
- 관련 EU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지 여부
- 보조금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조치를 취하는 것이 EU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상계조치[538]

□ 집행위원회의 조사결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은 수입물품이 EU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고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상계조치가 적용됨

○ 상계조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부과됨
- 물품가격의 일정비율을 추가
- 단위당 고정금액을 추가
- 최저수입가격 적용

□ 수출업자가 EU에서 최소금액 미만의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대신 약속이 수락될 수 있음

○ 집행위원회가 약속에 동의하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표 2-Ⅷ-5〉 EU가 시행 중인 상계조치

대상국가	물품명	조사개시일	조치일
인도네시아, 인도	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2021-02-17	2022-03-16
중국	Optical fibre cables	2020-12-21	2022-01-19
중국	Aluminium converter foil	2020-12-04	2021-12-22
이집트	Continuous filament glass fibre	2019-06-07	2020-06-25

fence/anti-subsidy-measures/anti-subsidy-investigations_en, 검색일자: 2024. 1. 12.

538)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subsidy-measures_en, 검색일자: 2024. 1. 12.

〈표 2-Ⅷ-5〉의 계속

대상국가	물품명	조사개시일	조치일
중국, 이집트	Glass fibre fabrics	2019-05-16	2020-06-15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Biodiesel	2018-12-06	2019-12-09
중국	Electric bikes	2017-12-21	2019-01-18
중국	Retreaded tyres for buses or lorries	2017-10-14	2018-11-12
중국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2016-05-13	2017-06-09
인도	Tubes and pipes of ductile cast iron	2015-03-11	2016-03-18
튀르키예	Trout (certain rainbow)	2014-02-15	2015-02-27
중국	Filament glass fibre products (certain)	2013-12-12	2014-12-23
중국	Solar glass	2013-04-27	2014-05-14
중국	Organic coated steel products	2012-02-22	2013-03-15
중국	Coated fine paper	2010-04-17	2011-05-14
인도	Stainless steel bars	2010-04-01	2011-04-28
미국	Biodiesel	2008-06-13	2009-07-10
인도	Graphite electrode systems	2003-08-21	2004-09-18
인도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1999-11-06	2000-11-30

자료: WTO, https://trade-remedies.wto.org/en/countervailing/measures, 검색일자: 2024. 1. 15.

〈표 2-Ⅷ-6〉 EU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계조치

시행국가	물품명	조사개시일	조치일
중국	Potato starch	2010-08-30	2011-09-17
캐나다	Certain refined sugar	1995-03-17	1995-11-06

자료: WTO, https://trade-remedies.wto.org/en/countervailing/measures, 검색일자: 2024. 1. 15.

3) 상계재심사[539]

□ 상계조치는 일반적으로 5년간 부과되며, 그 기간 동안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539) EU DG Trade,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subsidy-measures/anti-subsidy-reviews_en, 검색일자: 2024. 1. 12.

○ 상계조치에 대한 재심사는 중간 재심사, 신규 수출자 재심사, 흡수방지 재심사, 우회방지 재심사, 만료 재심사가 있음

□ 중간 재심사는 상계조치 기간 내에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는 것으로 모든 수출·입자, EU 생산자, EU 회원국, 집행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계속적인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조치를 제거 또는 변경하는 경우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요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간 재심사가 시작됨

○ EU 국가 및 집행위원회는 재심사를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출·입자, EU 생산자는 조치가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하여야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재심사가 개시되면 집행위원회는 이를 공식저널에 게시하며, 12개월~최대 15개월 내에 재심사를 완료해야 함

□ 중간 재심사에서는 주로 조치의 수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피해, 조치 범위 및 형태와 같은 검토도 이루어짐

○ 예를 들어 수출국 정부가 보조금 금액이 감소 또는 폐지됐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변화가 지속되는 경우 보조금 마진은 새로운 조사기간에 대해 다시 계산됨

□ 신규 수출자 재심사는 조사 중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EU로 수출하지 않은 수출자가 개별 관세율을 설정하기 위해 요청함

○ 조사에 협조한 수출자의 관세율은 개별로 부과되지만, 그 외의 수출자에 대한 관세율은 수출국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신규 수출자가 개별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재심사에서는 요청자가 신규 수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개별 보조금 마진을 설정하여 개별 관세율을 적용함

○ 신규 수출자는 기업이 최초 조사기간 동안 협조 거부 이외의 사유로 개별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

□ 한편, 상계조치 후 수출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입물품의 재판매가격이 상승하지 않아 조치가 기대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흡수방지 재심사가 이루어짐

○ 상계조치가 부과된 후 2년 내에 개시되며, 개시 후 9개월 내에 조사가 완료돼야 함

○ EU 생산자 및 사용자, 수출자, 수입자 등 관세 흡수의 증거를 발견한 모든 이해당사자는 집행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회원국 당국에 알릴 수 있음

□ 재심사에서 관세를 통해 발생해야 하지만 발생하지 않은 가격변동이 보조금 상쇄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보조금 마진을 다시 계산하여 최초 관세율의 두 배까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음

○ 재심사 시 EU 생산자 및 사용자, 수출자, 수입자에게 수출가격과 EU 내 재판매가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 또한 상계조치를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우회방지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비EU 국가에서 제조 또는 수출되는 특정물품에 부과되는 상계관세의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함

○ 이러한 활동은 다음과 같을 수 있음

-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CN코드로 분류될 수 있도록 물품을 약간 변경하는 것
-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것
-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생산자를 통해 수출하는 것
- 제품을 부품으로 수출하고 부품이 관세부과 대상이 아닌 EU 국가에서 조립하는 것 등

□ 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우회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거나 EU 회원국이 요청하고 이를 타당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경우 재심사를 개시함

○ 위원회가 재심사를 공식저널에 게시하면 세관당국은 상계조치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수입물품을 등록함

□ 우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우회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 또는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상계관세가 확대되어 시행됨

○ 상계관세는 조사가 개시된 날짜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우회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의 수출자가 관세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개별 수출자에 대해 관세 확대를 면제할 수 있음

○ 이 경우 조치대상 생산자와 관련이 없거나 우회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해야 함

□ 마지막으로 상계조치가 만료되는 경우 보조금 및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만료 재심사를 할 수 있음

○ 만료 재심사는 EU 생산자가 요청이나 집행위원회의 직권으로 이루어짐

○ 재심사 요청에는 보조금 및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 제거는 시행 중인 조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조치가 만료되면 추가 보조금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첨부돼야 함

□ EU 생산자가 만료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조치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요청해야 하며, 만료 재심사가 요청되지 않으면 집행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종료됨을 알리는 만료 통지서를 발행함

○ 조치가 시행되는 마지막 해에 집행위원회는 공식저널에 해당 조치가 특정 날짜에 만료된다는 내용의 만료임박통지를 게시함

○ 이에 대해 만료 재심사가 요청되면 집행위원회는 재심사 통지서를 발행하고 조사를 시작하며, 재심사는 12개월 내에 완료되지만 최대 15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 만료 재심사는 시행 중인 조치의 폐지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하며, 조치가 지속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향후 5년간 조치가 유지됨

○ 만료 재심사로 관세의 수준이나 형태가 변경될 수 없으며, 이는 중간 재심사에서만 다루어짐

Ⅸ. 권리구제 및 벌칙제도

□ EU는 UCC에서 권리구제 및 벌칙에 관한 지침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회원국별 세관당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540]

○ 권리구제 및 벌칙에 대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규정이나 시행규정을 두지 않고 UCC에서만 언급하고 있음

1. 권리구제제도

□ 누구든지 직접 및 개별적으로 자신과 관련 있는 관세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세관당국이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가짐[541]

○ 또한 세관당국에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기한 내에 결정을 받지 못한 자는 이의신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그 결정을 했거나 결정을 신청받은 회원국에서 제기해야 하며, 회원국은 세관당국에 의한 결정이 신속하게 확정 또는 정정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542]

○ 이의신청의 권리는 최소한 다음의 2단계로 행사할 수 있음

- 1단계로 세관당국, 사법당국, 회원국에 의해 그 목적을 위해 지정된 기관에 대한 행사
- 후속단계로 사법당국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기관과 같은 회원국에서 적용되는

---

540) 권성오·김미정·노영예,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_독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 178, 188
541) UCC 제44조 제1항
542) UCC 제44조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따른 보다 상위의 독립기관에 대한 행사

□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다툼의 대상이 되는 세관당국의 결정에 대한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543]

○ 다만 세관당국은 해당 결정이 관세법령과 모순되거나 관계자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해야 함

○ 이 경우 해당 결정에 의해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함

- 다만 서류심사에 기초하여 판단한 결과 담보 제공에 의해 채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지 않아야 함

□ 다만 이와 같은 이의신청에 대한 UCC의 규정은 적용범위가 제한됨

○ 관세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사법당국 또는 사법당국의 역할을 하는 세관당국이 내린 결정에 대해 무효, 취소 또는 정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음[544]

2. 벌칙제도

□ 각 회원국은 관세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을 적용해야 하며, 그러한 벌칙은 위반행위에 대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력이 있어야 함[545]

○ 회원국은 해당 규정의 적용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EU 집행위원회에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국내 규정을 통지해야 하며, 그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후속 개정에 관하여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함[546]

---

543) UCC 제45조
544) UCC 제43조
545) UCC 제42조 제1항
546) UCC 제42조 제3항

□ 행정벌칙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의 형식을 취해야 함[547]

○ 경우에 따라 형벌을 대신하여 적용되는 합의를 포함한 세관당국에 의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 있음

○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을 취소, 보류 또는 수정할 수 있음

547) UCC 제42조 제2항

X. AEO 제도

1. AEO의 의의 및 유형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548]는 세계관세기구가 도입한 세관-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으로 EU는 이를 2008년 도입함[549]

○ 국제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관과 AEO 간에는 상호투명성, 정확성, 공정성, 책임의 원칙을 기반으로 관계가 형성됨

□ AEO 제도에 따라 법규 준수, 재정 안정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제적 주체를 세관이 공인하고, 세관절차 또는 보안 및 안전 절차상의 편익을 제공함[550]

○ AEO 업체는 세관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급망 보안이라는 공통 목표가 EU 전역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보장함

□ 국제공급망을 구성하고 관세 업무에 참여하는 EU 관세영역 내에 설립된 모든 경제적 주체는 AEO 지위를 신청할 수 있음[551]

○ 세관당국은 필요한 경우 권한이 있는 다른 기관과 협의 후 AEO 지위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모든 회원국의 세관당국에서 인정됨[552]

---

548) 우리나라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고 함

549)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aeo-authorised-economic-operator/what-aeo_en, 검색일자: 2023. 11. 22.

550)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aeo-authorised-economic-operator/what-aeo_en, 검색일자: 2023. 11. 22.

551) UCC 제38조 제1항;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aeo-authorised-economic-operator/what-aeo_en, 검색일자: 2023. 11. 22.

□ AEO 지위는 부여받는 혜택에 따라 AEOC(AEO-Customs simplification), AEOS (AEO-Security and safety), AEOF(AEO-Full)로 구분되며, 지위에 따라 요구되는 공인기준 또한 달라짐[553]

○ AEOC는 관세규정에 따른 세관절차의 간소화의 혜택을 받으며, 역량 또는 전문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함

○ AEOS는 보안과 안전과 관련된 편의를 받으며, 적절한 보안과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상기의 두 유형의 공인이 동시에 부여되는 지위가 AEOF이며, AEOC와 AEOS에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함

[그림 2-X-1] EU AEO 공인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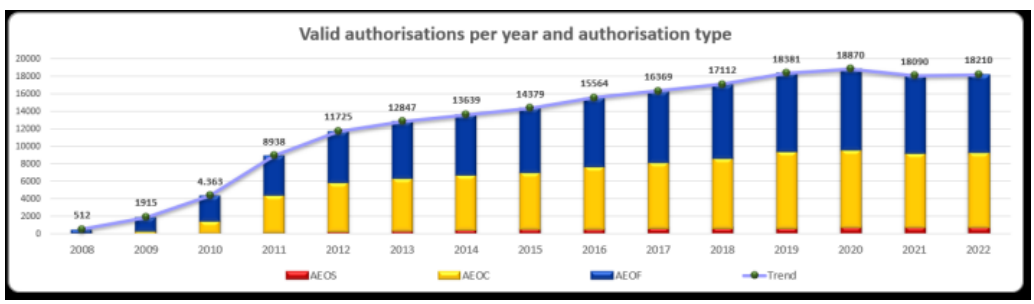

자료: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aeo-authorised-economic-operator/what-aeo_en, 검색일자: 2023. 11. 22.

2. AEO 공인기준

□ AEO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554]

○ 신청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형사적 범죄행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관세법령

552) UCC 제38조 제1항, 제4항

553) UCC 제38조 제2항 내지 제3항;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aeo-authorised-economic-operator/what-aeo_en, 검색일자: 2023. 11. 22.

554) UCC 제39조

및 과세규칙의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되는 위반이 없어야 함

○ 적절한 세관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 및 운송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업무와 물품의 유통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를 입증해야 함

○ 재정적 지급능력은 신청인이 해당 사업활동 유형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양호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함

○ AEOC 공인과 관련하여, 수행된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역량 또는 전문자격의 실무기준이 입증돼야 함

○ AEOS 공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물리적 무결성, 접근통제, 운송절차, 특정 유형의 물품 취급, 직원·협력사의 신원확인을 포함한 국제공급망의 보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표 2-X-1〉 AEO 유형에 따른 공인기준

공인기준	AEOC	AEOS
관세법령 및 과세규칙의 준수	○	○
적절한 기록보관	○	○
재정적 지급능력	○	○
역량 또는 전문자격의 실무기준의 증명	○	
적절한 보안 및 안전조치		○

자료: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aeo-authorised-economic-operator/what-aeo_en, 검색일자: 2023. 11. 22.

□ 법규 준수 기준은 신청인, 신청인의 세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신청인의 책임자 또는 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555]

○ 이들 중 한 명도 지난 3년간 자신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관세법령 또는 과세규칙을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결정이 없어야 함

-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세관당국이 관련업무의 횟수나 규모와 관련하여 위반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법령 및 과세규칙 준수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555) UCC IA 제24조

- 신청인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세관당국은 사용할 수 있는 기록 및 정보를 기반으로 관세법령 및 과세규칙 준수 여부를 평가함

○ 이들 중 누구도 신청인의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자신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어야 함

□ 상업 및 운송 기록 관리시스템 기준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556]

○ 신청인은 계정이 있는 회원국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치하는 회계시스템을 유지하고 감사기반 세관통제를 허용하며, 데이터가 파일에 입력되는 순간부터 감사추적을 제공하는 데이터의 이력 기록을 유지해야 함

○ 관세 목적으로 신청인이 보관하는 기록은 신청인의 회계시스템에 통합되거나 회계시스템과 정보의 교차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신청인은 세관당국이 해당하는 경우 회계시스템과 상업 및 운송 기록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신청인은 세관당국이 해당하는 경우 회계시스템, 해당 시스템 또는 기록이 전자적으로 보관되는 상업 및 운송기록에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신청인은 물품을 EU 물품, 비EU 물품으로 식별하고 적절한 경우 그 위치를 표시하는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다만 AEOS 공인의 경우 해당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신청인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상응하고 물품의 유통 관리에 적합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오류를 예방, 탐지, 시정할 수 있고 불법 또는 부정거래를 예방, 탐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가지고 있음

○ 신청인은 해당하는 경우 상업정책 조치에 따라 또는 농산물 무역과 관련하여 부여된 면허 및 승인을 처리하기 위해 충분한 절차를 가지고 있음

○ 신청인은 기록 및 정보 보관 및 정보의 손실 방지를 위해 충분한 절차를 가지고 있음

○ 신청인은 관련 직원에게 규정준수의 어려움이 발견될 때마다 세관당국에 통보하도

556) UCC IA 제25조

록 지시하고 세관당국에 이러한 어려움을 알리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함

○ 신청인은 승인되지 않은 침입으로부터 신청인의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신청인의 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신청인은 해당되는 경우 금지 또는 제한이 되는 물품을 다른 물품과 구별하는 조치, 해당 금지 및 제한의 준수를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금지 및 제한과 관련된 수출입 허가를 처리하기 위해 충분한 절차를 가지고 있음

□ 재정적 지급능력 기준은 신청인이 다음을 준수하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557]

○ 신청인은 파산절차의 대상이 아님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전 지난 3년 동안 관세 및 기타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모든 세금 또는 요금 납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함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전 지난 3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의 순자산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사업활동의 유형과 규모에 관한 자신의 의무 및 약속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가능한 기록과 정보를 바탕으로 입증함

- 신청인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재정적 지급능력은 이용가능한 기록과 정보에 근거하여 확인돼야 함

□ 역량 또는 전문자격의 실무기준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하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558]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세관업무 담당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실무적인 능력기준에 부합함

- 세관업무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입증된 실무 경험
- 유럽표준화기관이 채택한 세관사항에 관한 품질표준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세관업무 담당자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제공되는 세관 관련 활동에 관련된 범위와 일치하고 관련된 관세법령을 다루는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함

---

557) UCC IA 제26조
558) UCC IA 제27조

- 회원국의 세관당국
- 세관당국 또는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회원국 단체에 의해 그러한 자격을 제공하기 위해 인정된 교육기관
- 회원국 세관당국에 의해 인정되거나 그러한 자격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EU에서 인정된 전문가 또는 무역협회

□ 보안 및 안전 기준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559]

○ AEOS 공인과 관련된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건물은 불법침입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불법침입에 저항하는 재료로 건설됨

○ 사무실, 선적구역, 하역장, 화물 구역 및 기타 관련 장소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승인되지 않은 반입, 교환에 대한 보호, 잘못된 취급 및 화물 장치 조작 방지를 포함하는 물품취급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신청인은 자신의 협력사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며, 신청인의 사업모델에 따라 적절한 계약체결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통해 해당 협력사가 국제공급망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부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

○ 신청인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에 민감한 직위에서 근무하는 예비직원에 대한 보안심사를 수행하고, 그러한 직위에 있는 직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행함

○ 신청인은 계약된 외부 용역제공업체에 대해 적절한 보안절차를 갖추고 있음

○ 신청인은 보안문제와 관련된 책임이 있는 직원이 보안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함

○ 신청인은 안전 및 보안 관련 문제에 유능한 담당자를 고용함

○ 다만 신청인이 국제협약 또는 ISO의 국제표준 또는 유럽표준기구의 표준에 근거하여 발행된 보안 및 안전 인증서의 소지자인 경우 이 인증서들은 안전 및 보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 고려됨

559) UCC IA 제28조

- 그 인증서의 발급기준이 안전 및 보안기준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봄
- 신청인이 제3국에서 발급한 보안 및 안전 인증서의 소지자인 경우 해당 인증서를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준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

3. AEO 혜택

□ AEO 업체는 공인된 내용에 따라 물리적 및 서류기반의 통제의 감소와 같이 세관통제 면에서 다른 경제적 주체보다 유리한 취급을 받을 수 있음[560]

○ AEO 업체는 다른 경제적 주체보다 더 적게 물리적 및 서류기반의 통제의 대상이 됨

○ AEO 업체가 제출한 임시보관신고 또는 세관신고에 대한 물품이 세관통제를 위해 선별된 경우 신고를 접수할 관할세관은 이 사실을 물품이 세관에 제시되기 전에 AEO 업체에 통보해야 함

- 다만 이러한 통지가 수행할 통제 또는 그 결과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제공되지 않음

○ AEO 업체가 신고한 물품이 물리적 또는 서류기반 통제를 위해 선별된 경우 해당 통제가 우선적으로 수행돼야 함

- 이 경우 AEO 업체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세관에 제시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통제가 수행될 수 있음

○ AEOS 업체가 제출한 반입요약신고, 세관신고, 임시보관신고 또는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한 반입요약신고에 대한 물품이 물리적 통제를 위해 선별된 경우 최초 입국세관은 물품이 EU 관세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사실을 AEOS 업체에게 통지해야 함

- 다만 이러한 통지가 수행할 통제 또는 그 결과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제공되지 않음

560) UCC 제38조 제6항; UCC DA 제24조

□ 세관당국은 AEOC의 승인을 기초로 하고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간소화조치에 관한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업체가 간소화 조치의 혜택을 받는 것을 인정해야 함[561]
  ○ 세관당국은 AEO 지위를 부여할 당시에 검사한 기준을 재검사할 수 없음

□ 한편 AEOS에 따라 보안 및 안전에 대한 특혜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세관신고서 또는 재수출신고서의 형태로 출국 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에 명시된 것 외의 다른 세부사항을 요구받지 않음[562]
  ○ 또한 AEOS 업체가 다른 AEOS 업체를 대신하여 세관신고서 또는 재수출신고서 형식의 출발 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에 명시된 것 외의 다른 세부사항을 요구받지 않음

〈표 2-X-2〉 AEO 유형에 따른 혜택

혜택	AEOC	AEOS
세관절차 간소화	○	
물리적 및 문서 기반 통제 감소 (보안 및 안전 관련, 기타 관세법령 관련)	○	○
물리적 통제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사전통지 (안전 및 보안 관련)		○
세관 통제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사전통지 (기타 관세법령 관련)	○	
통제를 위해 선별된 경우 우선 처리	○	○
세관통제를 위한 특정장소를 요청할 기회	○	○
간접적 혜택 (위험 없고 안전한 사업 파트너로서의 인식, 세관 및 기타 정부당국과의 관계 개선, 도난 및 손실 감소, 배송지연 감소, 고객서비스 및 고객충성도 향상, 공급업체의 검사비용 절감, 협력 증대 등)	○	○
제3국과의 상호인정		○

자료: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aeo-authorised-economic-operator/what-aeo_en, 검색일자: 2023. 11. 22.

561) UCC 제38조 제5항
562) UCC DA 제23조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Ⅰ. 수입 통관절차

1. 수입의 개념

□ 수입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UCC는 EU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세관절차를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release)로 규정함[563]

○ 세관절차란 UCC에 따라 물품에 적용하는 ①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 ② 특별절차, ③ 수출의 절차를 말함[564][565]

□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은 비EU 물품을 EU 물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EU 관세영역 전체에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허용하는 절차임[566]

---

563)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procedures-import-and-export-0/what-importation_en, 검색일자: 2023. 12. 13.

564) UCC 제5조 제16호

565) 본 장에서는 수입에 해당하는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특별절차는 2-Ⅴ 및 2-Ⅶ에서, 수출은 3-Ⅱ에서 기술함

○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8조는 EU 전역에서 EU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하며, 이 원칙은 EU에서 생산된 물품뿐만 아니라, 수입관세를 납부한 후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된 수입물품에도 적용됨[567]

□ 세관의 관점에서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은 비EU 물품의 지위를 EU 물품으로 변경하고, 수입에 대해 규정된 모든 절차를 완료한 것을 의미함

○ EU 물품이란 다음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함[568]

- EU 관세영역에서 완전하게 취득되고, EU 관세영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 물품
- EU 관세영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된 물품
- EU 관세영역에서 오로지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된 물품으로부터 취득·제조된 물품 또는 완전취득 물품 및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된 물품으로부터 취득·제조된 물품

○ 비EU 물품은 EU 물품 외의 물품 또는 EU 물품으로서 관세상 지위를 상실한 물품을 말함[569]

2. 수입 통관절차

가. 반입약식신고

□ EU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물품은 EU에 반입되기 전에 최초 반입 세관에 반입약식신

---

566)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procedures-import-and-export-0/what-importation_en, 검색일자: 2023. 12. 13.
567)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procedures-import-and-export-0/what-importation/free-circulation_en, 검색일자: 2023. 12. 13.
568) UCC 제5조 제23호
569) UCC 제5조 제24호

고(Entry Summary declaration; ENS)를 제출해야 함[570]

○ EU 관세영역의 영해 또는 영공을 통과하지만 영역 내에 머무르지 않는 운송수단 및 물품은 반입약식신고 제출이 면제됨

○ 다음 상품과 관련하여 반입약식신고서 제출이 면제됨[571]

- 전기에너지
- 파이프라인으로 반입되는 물품
- 서신 품목
- 가정용품[572]
- 구두 세관신고가 허용되는 물품
- 세관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
- 여행자의 개인수하물에 포함된 물품
- 군사활동의 맥락에서 이동 또는 사용된 물품[573]
- 회원국의 군사방어를 담당하는 당국이 군사수송 또는 군 당국의 단독 사용을 위해 운영되는 수송을 통해 EU의 관세영역으로 반입한 무기 또는 군사장비
- EU의 관세영역에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역외시설에서 직접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건설·수리·유지·보수·개조를 위해 해양설비에 부착된 물품, 근해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 물품, 해양설비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물품, 근해시설에서 나오는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
- 외교관 물품[574]
- 선박 및 항공기에 선적되는 선박 및 항공기의 부품 또는 부속품에 통합되기 위한 물품, 선박 및 항공기의 엔진, 기계 및 기타 장비의 작동을 위한 물품, 기내에서 소비되거나 판매되는 식품 및 기타 물품
- 세우타, 멜리야, 지브롤터, 헬골란트, 산마리노 공화국, 바티칸 시국, 리비그노 지

570) UCC 제127조 제1항 내지 제3항
571) UCC DA 제104조 제1항
572)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2조 제1항 (d)에 따름
573) 「NATO」 Form 302 또는 EU Form 302에 따름
57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기타 영사협약, 「특별임무에 관한 뉴욕협약」에 따름

방자치단체에서 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물품
- EU 어선이 EU 관세영역 밖의 해상에서 채집한 해양 낚시 물품 또는 기타 물품
- 항구시설에 연결하지 않고 물품을 선적할 목적으로만 회원국의 영해에 진입하는 선박 및 이에 선적된 물품
- ATA 또는 CPD 까르네가 적용되는 물품
- 사전 폐기물 통지가 국가 해양단일창구 또는 세관을 포함한 관할당국이 허용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선박 폐기물[575]

□ 반입약식신고는 운송업자가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음[576]
○ 운송업자가 수입자, 수하인, 기타의 자의 명의로 또는 대리하여 행위하는 경우 수입자, 수하인, 기타의 자
○ 물품이 반입되는 세관에서 물품을 제시할 수 있거나 제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

□ 반입약식신고는 물품이 EU 관세영역에 도착하기 전 반입되는 최초의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운송수단에 따라 정해진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함[577]
○ 다만 세관당국은 다른 세관이 최초의 세관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전달할 수 있거나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그 다른 세관에 제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음

〈표 3-Ⅰ-1〉 운송수단별 반입약식신고 기한

운송수단		신고기한
해상	단거리를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EU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될 선박에 적재되기 최소 24시간 전
	단거리를 제외한 벌크 화물	선박이 EU의 관세영역으로 입항하는 항구에 도착하기 최소 4시간 전

575) Directive (EU) No 2019/883 제6조에 따름
576) UCC 제127조 제4항
577) UCC 제127조 제2항; UCC DA 제105조 내지 제110조

〈표 3-Ⅰ-1〉의 계속

운송수단		신고기한
	단거리 화물(그린란드, 페로제도, 아이슬란드, 발트해, 북해, 흑해, 지중해, 모로코, 영국, 북아일랜드 왕국의 항구, 항해 기간이 24시간 미만인 EU 외의 영토, 프랑스 해외도서, 아조레스 제도, 마데리아 제도, 카타리아 제도에서 출발)	선박이 EU의 관세영역으로 입항하는 항구에 도착하기 최소 2시간 전
항공	단거리 화물(비행 시간이 4시간 미만)	최소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
	단거리 화물을 제외한 화물	EU 관세영역의 첫 번째 공항에 항공기가 도착하기 최소 4시간 전
철도	제3국에 위치한 마지막 역에서 EU 영역 내의 최초 세관까지 2시간 미만이 소요되는 경우	최초 세관이 관할하는 장소에 물품이 도착하기 최소 1시간 전
	기타의 경우	최초 세관이 관할하는 장소에 물품이 도착하기 최소 2시간 전
도로		최초 세관이 관할하는 장소에 물품이 도착하기 최소 1시간 전
내륙 수로		최초 세관이 관할하는 장소에 물품이 도착하기 최소 2시간 전
복합운송		물품이 EU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때에 운행 중인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기한

자료: UCC DA 제105조 내지 제110조

□ 반입약식신고서에는 보안 및 안전 목적상 위험분석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578]

○ 반입약식신고서에는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컨테이너 번호, 화물의 총중량, HS code, 위험품목 코드, 운송료 지불방법, 수출입업자 등록번호, 운송인·송하인·수하인 등의 정보가 포함됨[579]

□ 반입약식신고는 수입통제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 ICS2)이라는 사전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음

○ ICS2는 반입약식신고서의 제출 및 처리에 관한 UCC의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을 위해서 사용됨[580]

578) UCC 제127조
579) 권성오 외 2인(2018), pp. 214~215

- 반입약식신고서의 세부사항, 이와 관련된 정보, 보안 및 안전을 위한 위험분석,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수행된 조치의 제출, 처리 및 저장
- 반입약식신고서의 세부사항, 위험분석 결과, 위험분석 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 위험분석을 기반으로 수행된 조치의 정보교환
- 공통 보안 및 안전 위험기준 및 표준과 통제조치 및 우선 통제영역의 구현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정보교환

□ EU는 사전화물정보시스템인 ICS2를 통해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세관당국이 적절한 공급망 단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함[581]

○ EU는 물품이 EU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경제적 주체는 반입약식신고를 통해 안전 및 보안 정보를 제공해야 함

□ EU는 ICS2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과 제공 정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도입하고 있음

○ 첫 번째 단계는 2021년 3월 15일, 두 번째 단계는 2023년 3월 1일, 세 번째 단계는 2024년 3월 1일부터 개시됨

〈표 3-Ⅰ-2〉 수입통제시스템(ICS2) 도입 일정

단계	적용대상	제공정보	도입 개시일	도입 완료일
1단계	우편사업자, 항공특송업자	ENS의 선적 전 정보 세트	2021. 3. 15.	2021. 10. 1.
2단계	모든 항공운송업자	사업 및 위험 관리와 관련된 완전한 ENS 의무사항	2023. 3. 1.	2023. 10. 2.
3단계	모든 해상·내륙수로·도로·철도운송업자	사업 및 위험 관리와 관련된 완전한 ENS 의무사항	2024. 3. 1.	2024. 10. 1.

자료: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9/2151 ANNEX Ⅱ A. 17.

□ 우편 탁송품은 반입약식신고 제출이 면제되었으나 ICS2의 도입 일정에 따라 선적 전 정보를 포함한 모든 반입약식신고 정보를 제출해야 함[582]

580) UCC IA 제182조
581)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security/import-control-system-2-ics2-0_en, 검색일자: 2023. 12. 11.

○ 최소 반입약식신고 정보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하는 선적 전 화물정보(Pre-Loading Advance Cargo Informaion; PLACI)에는 다음이 포함됨[583]
- 송하인의 이름 및 주소,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포장번호, 총중량,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운송서류번호

□ 세관당국은 제출된 사전화물정보 및 반입약식신고 정보를 분석하여 신고를 수락하거나 거절, 보충 정보 요청, 심사 요청, 선적 거부 등의 조치를 함[584]

○ 식별되거나 잠정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평가완료(Assessment Complete)라는 메시지를 전송함

○ 필수적인 정보 요소가 누락되는 등 제출된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반입약식신고는 거절되고 오류 메시지가 전송됨

○ 위험분석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반입약식신고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메시지가 전송되며, 경제운영자는 이에 대해 회신하거나 수정신고를 해야 함

○ 고위험 화물 및 우편의 경우 경제운영자에게 심사를 수행하도록 요청(Request for screening)하는 메시지가 전송됨
- 고위험 화물 및 우편은 보안에 대한 위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증거가 필요하거나 사용가능한 정보로 위험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이 경우 경제운영자가 실제 심사수행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요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있음
  - 따라서 경제운영자는 요청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장소에서 심사활동을 담당하는 기관, 운영자 또는 당국에 연락해야 함

○ 또한 다음의 경우 적절한 보안 프로토콜과 절차가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선적 거부(Do Not Load) 메시지가 발송됨
- 사전화물정보가 보안에 임박한 위협을 나타내는 특정정보 또는 위협 시나리오(예:

582) UCC DA 제104조 제2항
583) UCC 제128조; EU, “ICS2 Pre-Loading Requirements,” 2021. p. 2
584) EU DG TAXUD, “EU guidance on air cargo security referral protocols ICS2,” 2020, p. 13, 25, 31

상자 속의 폭탄)와 일치하는 경우
- 심사요청 상황의 해결 과정에서 화물에서 위협 품목이 식별된 경우

나. 물품의 도착

1) 도착 통지

□ EU 영역으로 진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기장은 운송수단이 도착하는 때에 그 사실을 최초 진입 세관에 통지해야 함[585]
  ○ 세관당국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도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우 도착 통지를 면제할 수 있음
  ○ 세관당국은 항구나 공항의 시스템 또는 기타 정보통신 수단을 사용해 운송수단의 도착을 통지하도록 승인할 수 있음

2) 장치장소로의 운송 및 제시

□ 물품을 EU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세관당국이 지정한 노선 및 지시에 따라서 세관당국이 지정한 세관, 승인한 장소 또는 자유구역으로 운송해야 함
  ○ 해상 또는 항공으로 자유구역에 반입하는 물품은 자유구역으로 직접 반입해야 하며, 회원국과 제3국 사이의 국경선에 인접한 자유구역에 육상으로 운송하는 물품은 EU 관세영역 외의 부분을 통과해서는 안 됨
  ○ EU 관세영역의 영해 또는 영공을 통과하지만 해당 영역 내에 머물지 않는 운송수단과 그 운송수단에 선적된 물품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EU 관세영역에 반입된 물품이 세관당국이 지정한 세관 등 장치장소에 도착하면 해당 물품을 도착 즉시 세관에 제시해야 함[586]

---

585) UCC 제133조
586) UCC 제138조 제1항, 제3항

○ 다음의 자는 세관에 물품을 제시해야 함
- EU 관세영역에 물품을 반입한 자
- 자신의 명의로 EU 관세영역에 물품을 반입한 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EU 관세영역에 물품을 반입한 자
- 물품이 EU 관세영역에 반입된 후 물품의 운송을 책임지는 자

○ 다만 상기에서 정한 자의 의무와 관계없이 다음의 자도 물품을 제시할 수 있음
- 물품을 세관절차하에 두고자 하는 자
- 장치시설의 운영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자유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물품을 제시하는 자는 반입약식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에 관해 제출된 반입약식신고서, 세관신고서 또는 잠정반입신고서와의 관련성을 적시해야 함[587]

○ 세관에 제시된 비EU 물품이 반입약식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입약식신고 제출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즉시 제출하거나 세관신고서 또는 잠정보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3) 잠정보관

□ 비EU 물품은 세관에 제시된 시점부터 잠정보관 상태에 두어야 하며, 물품을 제시하는 자는 물품을 세관에 제시하는 시점까지 잠정보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588]

○ 또한 잠정보관 중인 물품에 관련된 서류는 EU 법령이 요구하거나 세관통제상 필요한 경우 세관당국에 제공돼야 함

□ 반입약식신고가 면제되지 않는 이상 잠정보관신고서는 세관에 제시된 물품을 위해 제출된 반입요약신고서에 대한 참조를 포함해야 함[589]

---

587) UCC 제139조 제5항 내지 제6항
588) UCC 제144조 내지 제145조
589) UCC 제145조

○ 잠정보관신고서는 도착 통지 또는 물품의 세관 제시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음

□ 잠정보관 중인 비EU 물품은 90일 이내에 세관절차를 거치거나 재수출돼야 함[590]
○ 잠정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인의 비용으로 몰수, 판매, 폐기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591]

다. 세관신고

□ 자유구역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절차하에 두게 되는 물품은 각 절차에 적합한 세관신고서의 대상이 됨[592]
○ 세관신고란 어떠한 자가 정해진 형식과 방법에 따라 물품을 특정한 세관절차에 두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593]

□ 물품에 관한 세관절차를 정하는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세관신고를 할 수 있음[594]
○ 다만 세관신고서의 수리에 수반하여 특정한 자에게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특정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해야 함
□ 세관신고자는 EU 관세영역 내에 사업장을 두어야 함[595]
○ 다만 다음의 자는 EU 관세영역 내에 사업장을 둘 필요가 없음
- 통과 또는 일시반입 신고를 제출하는 자
- 최종 사용 또는 역내 가공을 포함한 신고의 빈도가 적은 자로서 세관당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590) UCC 제149조
591)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procedures-import-and-export-0/customs-procedures/temporary-storage_en, 검색일자: 2023. 12. 13.
592) UCC 제158조 제1항
593) UCC 제5조 제12호
594) UCC 제170조 제1항
595) UCC 제170조 제2항 내지 제3항

- EU 관세영역과 인접한 국가에 사업장을 둔 자로서 신고대상 물품을 EU 인접 국경 세관에 제시하고 사업장이 설치된 국가가 상호주의적 혜택을 EU 관세영역 내에 사업장을 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 세관신고는 물품이 세관에 제시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물품이 세관에 제시되기 전에 할 수 있음[596]

○ 물품이 세관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 세관신고는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세관신고는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될 수 있음[597]

○ 다음 물품의 경우 자유유통을 위한 세관신고서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음[598]

- 비상업적 성격의 물품
-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상업적 성격의 물품으로 가치가 1,000유로 또는 순중량이 1,000㎏을 초과하지 않는 것
- 관세감면을 받는 어업 및 사냥활동의 물품 및 제3국에 위치한 자산에서 EU의 농민이 획득한 물품
- 관세면제를 받는 제3국의 농민이 해당 국가에 인접한 자산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토양 및 작물 처리용 종자, 비료, 기타 물품

○ 다음 물품의 경우 녹색 또는 신고할 사항 없음 채널을 통과하거나 자발적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세관을 경유하는 행위 등을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신고로 갈음함[599]

- 수입관세 면제를 받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비상업적 성격의 물품
- 관세감면을 받는 어업 및 사냥활동의 물품 및 제3국에 위치한 자산에서 EU의 농민이 획득한 물품

---

596) UCC 제159조 제3항, 제171조
597) UCC 제6조, 제158조 제2항
598) UCC DA 제135조
599) UCC DA 제138조, 제141조

- 관세면제를 받는 제3국의 농민이 해당 국가에 인접한 자산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토양 및 작물 처리용 종자, 비료, 기타 물품
- 관세면제를 받는 팔레트, 컨테이너 및 운송수단, 이들의 예비부품, 부속품 및 장비,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포장
- 여행자가 재수입하여 수입관세 면제를 받는 휴대용 악기
- 서신물품
- 비상 시 영구이식 또는 수혈에 적합한 장기 및 기타 인간 또는 동물조직, 인혈
- 「NATO」 Form 302 또는 EU Form 302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 재수입으로 수입관세 경감을 받는 것
- 사전 폐기물 통지가 국가 해양단일창구 또는 세관을 포함한 관할당국이 허용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선박 폐기물

○ 서신물품은 EU의 관세영역에 반입됨으로써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됨[600]

□ 세관당국은 세관신고서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고, 해당 물품이 이미 세관에 제시된 경우 즉시 신고를 수리해야 함[601]

○ 세관신고 수리일은 물품이 신고된 세관절차를 정하는 규정의 적용을 위해 사용되는 날 또는 기타 수입 또는 수출절차를 위해 사용되는 날로 함

□ 신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고서가 세관에 의해 수리된 후에도 신고서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음[602]

○ 다만 신고서를 수정하면서 최초의 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물품 외의 물품을 해당 신고서에 포함시킬 수는 없음

○ 또한 다음에 규정한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신고서의 수정을 요청한 경우 해당 요청은 인정되지 않음

---

600) UCC DA 제141조 제2항
601) UCC 제172조
602) UCC 제173조

- 세관당국이 신고인에게 물품 검사 사실을 이미 통지한 경우
- 수정하고자 하는 기재사항이 부정확한 것을 세관당국이 이미 확인하고 있는 경우
- 세관당국이 물품을 이미 반출한 경우

□ 세관당국은 물품이 신고한 절차와 다른 세관절차에 놓인 경우 또는 물품을 해당 세관절차에 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수리된 세관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음[603]

○ 다만 세관당국이 신고인에게 물품 조사 의도를 통지한 경우 무효화 신청은 조사가 행해지기 전에는 허용되지 않음

라. 검증 및 물품의 반출(release)

1) 검증

□ 세관당국은 수리한 세관신고서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을 행할 수 있음[604]

○ 신고서 및 근거 서류의 검사

○ 신고인에게 기타 서류 제출을 요구

○ 물품의 검사

○ 물품의 상세한 검사 또는 분석을 위한 견본 채취

□ 물품검사 또는 견본 채취를 위한 물품의 운반, 기타 취급은 신고인이 행하거나 신고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발생한 비용 또한 신고인이 부담함[605]

○ 신고인은 물품의 검사 및 견본 채취 시에 입회할 권리 또는 대리인을 입회시킬 권리를 가짐

---

603) UCC 제174조
604) UCC 제188조
605) UCC 제189조

○ 세관당국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물품을 검사허가나 견본을 채취할 때 신고인에게 입회를 요구하거나 대리인을 입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인에게 검사 또는 견본 채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견본이 유효한 규정에 따라 채취된 경우 세관당국은 견본 채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나, 견본 분석 또는 검사의 비용을 부담함

□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 검사하거나 견본을 채취하는 경우 그 일부 검사의 결과나 견본의 분석 또는 검사의 결과는 동일 신고서에 기대된 물품 전체에 적용됨[606]

○ 다만 신고인은 일부 검사나 견본 분석 또는 검사의 결과가 신고된 물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검사 또는 견본 채취를 요청할 수 있음

-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반출되더라도 신고인이 물품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세관신고서에 둘 이상의 품명란이 사용되는 경우 각 란의 기재사항은 독립된 신고서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

□ 세관신고서를 검증한 결과는 물품에 적용된 세관절차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돼야 함[607]

○ 세관신고서를 검증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토대로 세관절차의 규정을 적용함

○ 세관당국의 검증결과는 EU 관세영역 전역에 걸쳐서 최종적인 것으로서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신고된 물품에 적용되는 세관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동일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당국 또는 경제적 주체는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608]

606) UCC 제190조
607) UCC 제191조

○ 물품, 포장 또는 운송수단에 부가된 동일성의 확인 수단은 세관당국만이 제거 또는 파괴할 수 있으나 세관당국이 승인한 경우 경제적 주체도 행할 수 있음
○ 동일성의 확인조치는 EU 관세영역 전역에 걸쳐서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짐

2) 물품의 반출

□ 물품을 세관절차에 두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고,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구비하였으며, 물품이 금지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세관당국은 세관신고서를 검증하거나 검증하지 않고 수리한 즉시 물품을 반출시켜야 함[609]
○ 세관신고서의 검증이 적정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없고, 검증을 위해 더 이상 물품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물품을 반출시켜야 함
○ 동일한 신고서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동시에 반출되며, 이와 관련해 세관신고서에 둘 이상의 품명란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각 란의 기재사항이 독립된 신고서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

□ 물품을 세관절차에 둠에 따라 관세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물품의 반출은 관세채무에 상당하는 관세의 지급 또는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함[610]
○ 세관당국은 신고물품에 적용되는 세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담부가 제공될 때까지 해당 세관절차와 관련해 해당 물품을 반출해서는 안 됨
□ EU 시장에 유통하거나 EU 내에서 개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비EU 물품은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돼야 함[611]
○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은 다음의 행위가 수반돼야 함
-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수입관세의 징수
- 다른 제반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다른 제반비용의 징수

608) UCC 제192조
609) UCC 제194조
610) UCC 제195조
611) UCC 제201조

- 통상정책상의 조치, 금지 및 제한의 적용
- 물품의 수입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기타 다른 절차의 완료

○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을 통해 비EU 물품은 EU 물품으로서의 관세상 지위를 갖게 됨

Ⅱ. 수출 통관절차

1. 수출의 개념

□ 수출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exit)하는 것을 의미하며, UCC는 물품의 관세상 지위에 따라 수출 또는 재수출을 구분함[612]

○ 세관의 관점에서 수출은 EU 물품의 지위를 비EU 물품으로 변경하고, 수출에 대해 규정된 모든 절차를 완료한 것을 의미함

○ 반면 재수출은 비EU 물품을 EU 관세영역에서 반출하는 절차에 적용됨

□ EU 관세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EU 물품은 수출절차하에 두어야 함[613]

○ 다만 다음의 EU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절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역외가공절차하의 물품
- 최종 사용절차하에 둔 이후에 EU 관세영역에서 벗어난 물품
- 선박 또는 항공기의 공급품으로 운송되어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 다만 그에 대한 증빙이 필요함
- 역내통과절차하의 물품
- EU 관세영역을 일시적으로 이탈한 물품

□ EU 관세영역을 벗어나는 비EU 물품은 재수출신고의 대상이 되며 세관신고에 관한

612)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procedures-import-and-export-0/what-exportation_en, 검색일자: 2023. 12. 14.

613) UCC 제269조

절차는 재수출신고에 적용됨[614]

○ 다만 다음의 물품은 재수출신고 제출의 대상이 아님

- EU 관세영역을 통과만 하는 역외통과절차하의 물품
- 자유구역 내에서 환적되는 물품 또는 자유구역에서 직접 재수출되는 물품
- 잠정보관절차하의 물품으로서 승인을 얻어 잠정보관시설로부터 직접 재수출된 물품

2. 수출 통관절차

가. 출발 전 신고

□ EU 관세영역을 벗어나고자 하는 물품은 물품이 EU 관세영역을 벗어나기 전에 출발 전 신고서(pre-departure declaration)를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함[615]

○ 다만 EU 관세영역 내에 정지하지 않고 EU 관세영역의 영해 또는 영공을 통과하는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은 출발 전 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됨

○ 또한 특정한 사례로 규정되거나 국제조약에 의해 요구되는 다음의 물품이나 운송수단은 출발 전 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됨[616]

- 전기에너지
- 파이프라인으로 반출되는 물품
- 서신 품목
- 만국우편연합의 규정에 따라 이동된 물품
- 가정용품[617]
- 여행자의 개인수하물에 포함된 물품

---

614) UCC 제270조
615) UCC 제263조 제1항 내지 제2항
616) UCC DA 제245조 제1항
617)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2조 제1항 (d)에 따름

-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팔레트, 컨테이너, 운송수단 및 이들의 예비부품, 부속품, 장비
- 군사활동의 맥락에서 이동 또는 사용된 물품[618]
- EU의 관세영역 밖의 항구에서 기항 없이 EU 항구 사이를 이동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물품
- 회원국의 군사방어를 담당하는 당국이 군사수송 또는 군 당국의 단독 사용을 위해 운영되는 수송을 통해 EU의 관세영역에서 반출한 무기 또는 군사장비
- EU의 관세영역에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역외시설로 직접 반출되는 건설·수리·유지·보수·개조를 위해 해양설비에 부착된 물품, 근해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 물품, 해양설비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물품
- 외교관 물품[619]
- 선박 및 항공기에 선적되는 선박 및 항공기의 부품 또는 부속품에 통합되기 위한 물품, 선박 및 항공기의 엔진, 기계 및 기타 장비의 작동을 위한 물품, 기내에서 소비되거나 판매되는 식품 및 기타 물품
- EU 관세영역에서 세우타, 멜리야, 지브롤터, 헬골란트, 산마리노 공화국, 바티칸 시국, 리비그노 지방자치단체로 반출된 물품
- EU 어선이 EU 관세영역 밖의 해상에서 채집한 해양 낚시 물품 또는 기타 물품
- 항구시설에 연결하지 않고 물품을 선적할 목적으로만 회원국의 영해에 진입하는 선박 및 이에 선적된 물품
- ATA 또는 CPD 까르네가 적용되는 물품
- 사전 폐기물 통지가 국가 해양단일창구 또는 세관을 포함한 관할당국이 허용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선박 폐기물[620]

□ 다음의 경우 물품에 대한 출발 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621]

---

618) 「NATO」 Form 302 또는 EU Form 302에 따름
619)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기타 영사협약, 「특별임무에 관한 뉴욕협약」에 따름
620) Directive (EU) No 2019/883 제6조에 따름

○ EU 항구 사이에서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EU 관세영역 밖에서 기항하고 그동안 물품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 항구 또는 공항에서 물품이 EU의 관세영역으로 운송하고 그 영역 밖으로 운송할 운송수단에서 하역되지 않은 경우
○ 적재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 전 신고가 제출되었거나 출발 전 신고의무가 면제된 물품이 EU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될 운송수단에 남아 있는 경우
○ 잠정보관 또는 자유구역 절차 중인 물품이 동일한 세관의 감독하에 잠정보관 또는 자유구역으로 운반한 운송수단에서 EU 관세영역 밖으로 운송할 선박, 항공기, 철도로 환적되는 때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물품이 제시된 후 14일 이내 또는 14일 이내에 환적하기 충분하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 세관이 승인한 기간 내에 환적돼야 함
- 물품의 정보를 세관당국이 이용가능해야 함
- 물품의 목적지와 수하인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변경되지 않아야 함
○ 물품이 EU의 관세영역으로 운송되었으나 관할 세관당국에 의해 거부되어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된 경우

□ 출발 전 신고는 물품이 EU 관세영역에서 벗어나기 전 관할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운송수단에 따라 정해진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함[622]
○ 다만 출발 전 신고서 제출기한 규정은 불가항력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표 3-Ⅱ-1〉 운송수단별 출발 전 신고 기한

운송수단		신고기한
해상	단거리를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EU의 관세영역에서 벗어날 선박에 적재되기 최소 24시간 전
	단거리를 제외한 벌크 화물	EU의 관세영역의 항구에서 출발하기 최소 2시간 전

621) UCC DA 제245조 제2항
622) UCC 제263조 제1항

〈표 3-II-1〉의 계속

운송수단		신고기한
	단거리 화물(그린란드, 페로제도, 아이슬란드, 발트해, 북해, 흑해, 지중해, 모로코, 영국, 북아일랜드 왕국의 항구, 항해 기간이 24시간 미만인 EU 외의 영토, 프랑스 해외도서, 아조레스 제도, 마데리아 제도, 카타리아 제도에서 출발)	EU의 관세영역의 항구에서 출발하기 최소 2시간 전
항공		EU의 관세영역의 공항에서 출발하기 최소 30분 전
도로 및 내륙 수로		EU의 관세영역에서 출발하기 최소 1시간 전
철도	EU 영역 내의 마지막 역에서 출국 세관까지 2시간 미만이 소요되는 경우	출국세관이 관할하는 장소에 물품이 도착하기 최소 1시간 전
	기타의 경우	EU의 관세영역에서 출발하기 최소 2시간 전
복합운송		물품이 EU 관세영역에서 떠나는 때 운행 중인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기한

자료: UCC DA 제244조

□ 출발 전 신고서에는 적어도 보안 및 안전 목적상 위험성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함[623]

○ 출발 전 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은 보안 및 안전 목적상 신고내용을 기초로 위험분석을 실행하고 그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출발 전 신고서는 다음 어느 하나의 양식으로 함[624]

○ EU 관세영역을 벗어나는 물품이 세관신고를 요하는 세관절차하에 놓이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적합한 세관신고서

○ 재수출신고서

○ 세관신고서 및 재수출신고서가 불필요한 경우 반출약식신고서

623) UCC 제263조 제4항, 제264조
624) UCC 제263조 제3항

1) 세관신고

□ EU 물품을 EU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세관절차 중 수출절차가 필요하며, 수출을 위한 세관신고로 출발 전 신고를 이행해야 함[625]

○ 세관절차는 UCC에 따라 물품에 적용하는 ①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 ② 특별절차, ③ 수출의 절차를 말하며, 세관신고는 정해진 형식과 방법에 따라 물품을 특정한 세관절차에 두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 따라서 세관신고의 제출인, 제시 전 신고, 수리, 수정, 검증, 물품의 반출과 같이 세관절차에 적용되는 규정[626]은 수출에 대한 세관신고에도 적용됨

□ 세관신고는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될 수 있음[627]

○ 다음 물품의 경우 수출을 위한 세관신고서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음[628]

- 비상업적 성격의 물품
- 순중량이 1,000㎏을 초과하지 않는 상업적 성격의 물품
- EU 관세영역에 등록되어 있고 재수입될 예정인 운송수단과 해당 운송수단의 예비부품, 부속품 및 장비
- 관세경감을 받는 EU에서 제3국으로 농업활동 이전 시 수출되는 가축
- 관세경감을 받는 EU 관세영역에 위치한 자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획득한 물품
- 관세면제를 받는 제3국에 위치한 자산에서 사용하기 위해 농업 생산자가 수출하는 종자
- 관세면제를 받는 동물에 동반되는 사료

○ 다음 물품의 경우 녹색 또는 신고할 사항 없음 채널을 통과하거나 자발적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세관을 경유하는 행위 등을 수출신고로 갈음함[629]

---

625) UCC 제5조 제12호 제16호
626) UCC 제158조 내지 제195조
627) UCC 제6조, 제158조 제2항
628) UCC DA 제137조
629) UCC DA 제140조, 제141조

- 구두로 수출을 위한 세관신고를 할 수 있는 물품
- 여행자의 휴대용 악기
- 가치가 1,000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우편 또는 특송 물품
- 비상 시 영구이식 또는 수혈에 적합한 장기 및 기타 인간 또는 동물조직, 인혈
- 「NATO」 Form 302 또는 EU Form 302의 적용을 받는 물품
- 헬골란트로 발송되는 물품

○ 서신물품은 EU의 관세영역에서 벗어남으로써 재수출을 위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됨[630]

2) 재수출신고

□ 비EU 물품을 EU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출발 전 신고로 재수출신고를 해야 함[631]

○ 세관신고의 제출인, 제시 전 신고, 수리, 수정, 검증, 물품의 반출과 같이 세관절차에 적용되는 규정[632]은 재수출신고에도 적용됨

□ 세관신고는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될 수 있음[633]

○ 다음 물품에 대해 일시반입절차를 이행하는 때에 재수출신고를 구두로 할 수 있음[634]

- 팔레트, 컨테이너, 운송수단 및 이들의 예비부품, 부속품 및 장비
- 개인용품 및 체육용품
- 국제해상운송선박에서 사용되는 선원복지물자
- 의료, 수술 및 실험실 장비
- 이동방목 또는 목축, 작업 또는 운송을 위한 동물
- EU의 국경지역에 인접한 제3국의 국경지대에 설립된 자가 소유하고 EU 국경지역

630) UCC DA 제141조 제2항
631) UCC 제270조
632) UCC 제158조 내지 제195조
633) UCC 제6조, 제158조 제2항
634) UCC DA 제136조

에서 사용하는 장비
- 의사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 및 기구
- EU 관세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재난구호물품
- 여행자가 전문장비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휴대용 악기
- EU 관세영역 내 또는 밖에서 설립된 자를 식별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지울 수 없는 표시가 있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포장
-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장비, 이들을 위해 특별히 개조된 차량 및 그 장비로서 해당 장비 및 차량의 일시 수입을 위해 세관당국이 승인한 민간 또는 공공조직이 수입하는 것
- 기타 세관당국이 승인한 기타 물품

○ 다음 물품의 경우 녹색 또는 신고할 사항 없음 채널을 통과하거나 자발적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세관을 경유하는 행위 등을 수출신고로 갈음함[635]
- 팔레트, 컨테이너, 운송수단 및 이들의 예비부품, 부속품 및 장비
- 개인용품 및 체육용품
- 국제해상운송선박에서 사용되는 선원복지물자
- 의료, 수술 및 실험실 장비
- EU 관세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재난구호물품
- 여행자가 전문장비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휴대용 악기
- EU 관세영역 내 또는 밖에서 설립된 자를 식별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지울 수 없는 표시가 있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포장
- 「NATO」 Form 302 또는 EU Form 302의 적용을 받는 물품

○ 서신물품은 EU의 관세영역에서 벗어남으로써 재수출을 위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됨[636]

635) UCC DA 제139조, 제141조
636) UCC DA 제141조 제2항

3) 반출약식신고

□ 물품이 EU 관세영역을 벗어나야 하는 경우로 출발 전 신고로 세관신고서 또는 재수출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반출약식신고(Exit Summary declaration)를 물품을 반출하는 세관에 제출해야 함[637]

○ 다만 세관당국은 다른 세관이 최초의 세관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전달할 수 있거나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그 다른 세관에 제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음

□ 반출약식신고는 운송업자가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음[638]

○ 운송업자가 수입자, 수하인, 기타의 자의 명의로 또는 대리하여 행위하는 경우 수입자, 수하인, 기타의 자

○ 물품이 반출되는 세관에서 물품을 제시할 수 있거나 제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

나. 물품의 반출

□ EU 관세영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에 의해 세관에 제시돼야 함[639]

○ EU 관세영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자

○ 자신의 명의로 EU 관세영역에서 물품을 반출한 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EU 관세영역에서 물품을 반출한 자

□ 다음의 각 경우와 동일한 상태로 물품이 EU 관세영역을 벗어나는 조건으로 물품의 반출이 승인됨[640]

○ 세관신고서 또는 재수출신고서가 수리됐을 때

○ 반출약식신고서가 제출됐을 때

---

637) UCC 제271조 제1항
638) UCC 제271조 제2항
639) UCC 제267조 제1항
640) UCC 제267조 제4항

참고문헌

강동익·이재선,『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강성훈·이재선·김미정,『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강유덕,『EU 로비제도의 현황과 사례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관세청,『한 눈에 보는 2018년 FTA 활용 지도』, 2019.

_____,『한 눈에 보는 2019년 4분기 FTA 활용 지도』, 2020.

_____,『한 눈에 보는 2020년 4분기 FTA 활용 지도』, 2021.

_____,『한 눈에 보는 2021년 4분기 FTA 활용 지도』, 2022.

_____,『한 눈에 보는 2022년 4분기 FTA 활용 지도』

권성오·김미정·노영예,『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_독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김기인,『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12. 13(일), 한-EU FTA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 보도자료, 2015. 12. 12.

송병준,「유럽연합의 위원회 거버넌스: 유럽위원회 전문가그룹의 기능과 의미」,『글로벌 정치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6, pp. 5~26

_____,「리스본조약 체결 이후 신커미톨로지(실행입법)의 의미」,『유럽연구』, 제33권 제3호, 유럽연구협회, 2015. 9, pp. 325~349

신상화·박지우·이재선,『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_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외교부,『EU 개황』, 2020.

외교통상부,『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2. 6.

이주형·권소영·김원용·권미진·최웅재·van der Meulen,『주요국(EU)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심층조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상황 연구』, 식품안전정보원, 2018.
정재호·이재선,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규정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EU 정책 브리핑』, 외교통상부, 2010.
_____, 「EU 집행위, 2023~24년 경제전망['23. 2월 전망]」, 보도자료 2023. 2. 15.

EU, "ICS2 Pre-Loading Requirements," 2021.
eurostat, *User guide on European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2020.
EU 집행위원회, "Note to the expert group registry; Term of reference of the customs expert group," 2016.
_____, "List of GSP beneficiary countries," 2023. 1. 1.
EU DG TAXUD, *Guidance on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2022.
_____, *Integrated EU prohibitions & restrictions list*, 2022.
_____, "EU guidance on air cargo security referral protocols ICS2," 2020.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06*, 2007.
_____, *World Tariff Profiles 2022*, 2022.
_____, *World Tariff Profiles 2021*, 2021.

『의료기기뉴스라인』, 「지역경제통합, 관세철폐서 정치적 동맹 단계까지 무역자유화」, 2015. 9. 10. 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7, 검색일자: 2023. 7. 5.

관세청 관세용어 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97, 검색일자: 2023. 8. 1.
관세청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UseRate/ftaUseRateCnvnImpList.do?mi=3353, 검색일자: 2023. 9. 1.

산업부 FTA 포털, https://www.fta.go.kr/eu/info/2/, 검색일자: 2023. 7. 10.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EU 가입 신청한 몰도바와 조지아 내 친러-친서방 갈등 격화」, 『월간정세』, 2023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mid=a10200000000&systemcode=04&brdctsNo=344968, 검색일자: 2023. 7. 21.
트레이드 내비,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174#none, 검색일자: 2023. 7. 10.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Ctr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3. 4. 3.
_____,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WholeList.screen, 검색일자: 2023. 4. 3.
_____,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3. 4. 3.
_____, https://stat.kita.net/stat/istat/euts/EuItemImpExpDetailPopup.screen, 검색일자: 2023. 4. 3.
해양수산부 용어사전, https://www.mof.go.kr/dictionary/selectDictionary.do?dictionaryKey=429&recordCountPerPage=&menuSeq=928&searchEtc1=&searchInitial=&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bbsSeq=&searchValue=IUU&currentPageNo=1, 검색일자: 2024. 1. 11.
KOTRA,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57310, 검색일자: 2023. 7. 27.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european-union/, 검색일자: 2023. 7. 3.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BOP_FDI6_FLOW__custom_6799184/default/table?lang=en, 검색일자: 2023. 7. 6.
EU, https://european-union.europa.eu/priorities-and-actions/actions-topic/food-safety_en, 검색일자: 2023. 12. 29.

EU 집행위원회, https://commission.europa.eu/topics/customs_en,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commission.europa.eu/about-european-commission/departments-and-executive-agencies_en,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ec.europa.eu/info/law/law-making-process/adopting-eu-law/implementing-and-delegated-acts/comitology_en, 검색일자: 2023. 7. 27.
_____,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committees?lang=en, 검색일자: 2023. 7. 27.
_____, https://ec.europa.eu/transparency/expert-groups-register/screen/expert-groups-explained?lang=en, 검색일자: 2023. 7. 27.
_____,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product-safety-and-requirements/product-safety/consumer-product-safety_en, 검색일자: 2023. 12. 28.
_____,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_en, 검색일자: 2023. 12. 29.
_____,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product-safety-and-requirements/product-safety/standards-and-risks-specific-products_en, 검색일자: 2023. 12. 28.
_____, https://food.ec.europa.eu/safety/biological-safety/food-hygiene_en, 검색일자: 2023. 12. 29.
_____, https://food.ec.europa.eu/safety/biological-safety/food-hygiene/legislation_en, 검색일자: 2023. 12. 29.
EU DG ENV,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nature-and-biodiversity/wildlife-trade_en, 검색일자: 2024. 1. 10.
_____,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nature-and-biodiversity/wildlife-trade_en, 검색일자: 2024. 1. 10.
_____,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waste-shipments_en, 검색일자: 2024. 1. 11.
_____,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wast

e-shipments/plastic-waste-shipments_en, 검색일자: 2024. 1. 11.
EU DG MARE,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fisheries/rules/illegal-fishing_en, 검색일자: 2024. 1. 11.
_____,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system/files/2023-11/illegal-fishing-overview-of-existing-procedures-third-countries_en.pdf, 검색일자: 2024. 1. 11.
EU DG NEAR,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enlargement-policy/steps-towards-joining_en, 검색일자: 2023. 7. 20.
_____,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enlargement-policy/glossary/association-agreement_en, 검색일자: 2023. 7. 21.
_____,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georgia-deep-and-comprehensive-free-trade-area, 검색일자: 2023. 7. 21.
_____,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moldova-deep-and-comprehensive-free-trade-area, 검색일자: 2023. 7. 21.8
_____,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ukraine-deep-and-comprehensive-free-trade-area, 검색일자: 2023. 7. 21.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andorra-customs-unions-and-preferential-arrangements_en, 검색일자: 2023. 7. 18.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an-marino-customs-unions-and-preferential-arrangements_en, 검색일자: 2023. 7. 20.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mission-statement_en,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eu-customs-reform_en, 검색일자: 2023. 7. 27.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3-07/organi_EN_0.pdf,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union-customs-code_en, 검색일자: 2023. 7. 27.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union-customs-code-ucc-in

troduction_en, 검색일자: 2023. 7. 27.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union-customs-code/ucc-legislation_en, 검색일자: 2023. 7. 27.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procedures-import-and-export-0/customs-procedures/customs-debt_en, 검색일자: 2023. 8. 1.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_en, 검색일자: 2023. 8. 1.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valuation_en, 검색일자: 2023. 8. 3.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harmonized-system-general-information_en, 검색일자: 2023. 8. 3.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classification-goods_en, 검색일자: 2023. 8. 3.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combined-nomenclature_en, 검색일자: 2023. 8. 3.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business/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ebti-european-binding-tariff-information_en, 검색일자: 2023. 8. 3.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apply-bti-decision_en, 검색일자: 2023. 8. 3.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eu-customs-tariff-taric_en, 검색일자: 2023. 8. 4.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international-affairs/origin-goods/non-preferential-origin_en, 검색일자: 2023. 11. 13.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euta-and-melilla_en, 검색일자: 2023. 11. 16.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international-affairs/origin-goods/general-aspects-preferential-origin/common-provisions_en, 검색일자: 2023. 11. 16.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introduction-1_en, 검색일자: 2023. 11. 20.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international-affairs/pan-euro-mediterranean-cumulation-and-pem-convention_en, 검색일자: 2023. 11. 20.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generalised-system-preferences_en, 검색일자: 2023. 11. 21.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online-services/online-services-and-databases-customs/rex-registered-exporter-system_en, 검색일자: 2023. 11. 21.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free-zones_en, 검색일자: 2023. 11. 7.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aeo-authorised-economic-operator/what-aeo_en, 검색일자: 2023. 11. 22.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prohibitions-and-restrictions_en, 검색일자: 2023. 12. 20.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prohibitions-and-restrictions/examples-prohibitions-and-restrictions_en, 검색일자: 2023. 12. 28.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procedures-import-and-export-0/what-importation_en, 검색일자: 2023. 12. 13.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procedures-import-and-export-0/what-importation/free-circulation_en, 검색일자: 2023. 12. 13.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security/import-control-system-2-ics2-0_en, 검색일자: 2023. 12. 11.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procedures-import-and-export-0/customs-procedures/temporary-storage_en, 검색일자: 2023. 12. 13.
EU DG TRADE,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market-0, 검색일자: 2023. 7. 18.
_____,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ropean-economic-area-eea-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0.
_____,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western-balkans, 검색일자: 2023. 7. 20.
_____,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canada-comprehensive-and-economic-trade-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central-america-association-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chile-association-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colombia-peru-ecuador-trade-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japan-economic-partnership-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mexico_en,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singapore-free-trade-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uk-trade-and-cooperation-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vietnam-free-trade-agreement,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switzerland,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faroe-islands_en,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conomic-partnership-agreements-epas,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armenia_en,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azerbaijan_en,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kazakhstan_en,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iraq_en,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negotiations-and-agreements_en, 검색일자: 2023. 7. 26.
_____,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_en, 검색일자: 2024. 1. 12.
_____,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dumping-measures_en, 검색일자: 2024. 1. 12.
_____,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dumping-measures/trade-defence-measures_en, 검색일자: 2024. 1. 12.
_____,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dumping-measures/anti-dumping-reviews_en, 검색일자: 2024. 1. 12.
_____,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subsidy-measures_en, 검색일자: 2024. 1. 12.
_____,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

e-defence/anti-subsidy-measures/anti-subsidy-investigations_en, 검색일자: 2024. 1. 12.

_____, https://policy.trade.ec.europa.eu/enforcement-and-protection/trade-defence/anti-subsidy-measures/anti-subsidy-reviews_en, 검색일자: 2024. 1. 12.

EU-Lex, https://eur-lex.europa.eu/EN/legal-content/summary/euro-mediterranean-association-agreements.html, 검색일자: 2023. 7. 21.

_____, https://eur-lex.europa.eu/summary/chapter/food_safety.html?root_default=SUM_1_CODED%3D30&locale=en, 검색일자: 2023. 12. 29.

IM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EU, 검색일자: 2023. 7. 5.

_____,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EU, 검색일자: 2023. 7. 5.

_____,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EU, 검색일자: 2023. 7. 5.

_____,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LUR@WEO/EURO, 검색일자: 2023. 7. 5.

_____,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PCPIPCH@WEO/EU, 검색일자: 2023. 7. 5.

WTO, https://trade-remedies.wto.org/en/antidumping/measures, 검색일자: 2024. 1. 15.

_____, https://trade-remedies.wto.org/en/countervailing/measures, 검색일자: 2024. 1. 15.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EU 편 -

발 행	2023년 12월 31일
저 자	홍용기 · 이재선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다원기획 044-865-8115
ISBN	979-11-6655-237-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93320
9 791166 552373
ISBN 979-11-6655-237-3